

발 간 등 록 번 호 11-1101000-000007-01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PRIME MINISTER'S OFFICE 2008. 12



중앙행정기관

규 제 개

우 수 사 례 집

PRIME MINISTER'S OFFICE





PRIME MINISTER'S OFFICE 2008. 12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확보 하겠습니다.

□ 발간사

국무총리실은 지난 9월에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보급한바 있습니다. 지난번 규제개혁사례집은 시·군 등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법을 집행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개혁사례를 엮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후속 편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편익증진과 서민보호, 사업자의 부담경감 등을 위 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 시례집』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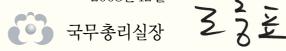
금번 사례집에서는 금년 11월까지 규제개혁이 완료된 것을 중심으로 18개 사례를 수록 하였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각 부처에서 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규제개혁과제는 제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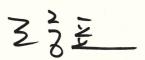
주요내용으로는.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의 보호대상 범위 및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서민의 임대차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안보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행사범위를 확 대하고, 소규모건축행위는 협의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병역자원인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배정 비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하였습니다.
- 사전 환경성평가 검토대상을 축소하고 산업단지의 환경성 평가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였 습니다.
- 문화재조사 조사기관을 52개에서 72개로 확충하고 시군구경유절차 생략 등 문화재조사처리기간을 14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사업자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시례를 실었습니다.

시례집에 실은 내용은 현재의 상황 아래에서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규제개혁일지 라도 모든 시대를 초월한 지고지선의 규제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은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현실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집에 실린 규제개혁우수사례의 내용과 경험을 각 기관이 공유 · 전파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목 차 중앙행정기관 규제 면 우수세집

CONTENTS

| 제 | 자 |
|-----|----------|
| | \sim r |
| -/\ | \sim |

서민 · 취약계층 생활 개선



| 제1절 주택·상가 서민임차인 보호 강화 | 009 |
|------------------------|-----|
| 제2절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면제 | 019 |
| 제3절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 축소 | 026 |
| 제4절 지체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 | 043 |

제 2 장

국토이용 효율화



| 제5절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 051 |
|---------------------|-----|
| 제6절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 061 |
| 제7절 선진적 환경성 평가제도 구축 | 070 |
| 제8절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 086 |
| 제9절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 103 |
| 제10절 산지분야 규제개혁 추진 | 114 |

제 3 장

기업 경쟁력 강화



| 제11절 관광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 | 133 |
|----------------------------|-----|
| 제12절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 145 |
| 제13절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 155 |
| 제14절 국내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 166 |
| 제15전 저무여구/사언기는 9 위 이려지워 개서 | 184 |

제 4 장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



| 제16절 온라인 금융민원시스템 개통 및 금융민원센터 개소 | 201 |
|----------------------------------|-----|
| 제17절 맞춤형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3-Track 심사) | 223 |
| 제18절 의약품 허가 심사 체계 개선 | 240 |

에 1 장 서민·취약계층 생활 개선

제1절 주택·상가 서민임차인 보호 강화 제2절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면제 제3절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 축소 제4절 지체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



PRIME MINISTER'S OFFICE



제1절 주택·상가 서민임차인 보호 강화

요 약

1. 추진배경

● 주택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금액 및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임대료 인상한도가 상당 기간 동안 조정 · 변경되지 않아 전세가격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 실에 맞게 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기하고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발생하였음

2. 추진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범위 및 우선변제 금액 확대

| | 우선변제 범위 확대 | | 우선변제 금액 확대 | |
|--------------|------------|---------|------------|---------|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 4,000만원 | 6,000만원 | 1,600만원 | 2,000만원 |
| 광역시 | 3,500만원 | 5,000만원 | 1,400만원 | 1,7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 4,000만원 | 1,200만원 | 1,400만원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 적용범위 확대 | | 차임 또는 보증금의 | |
|--------------|---------|---------|------------|--|
| | 현행 | 개정 | 증액 한도 축소 | |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 2억 6천만원 | | |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 1억 9천만원 | 2억 1천만원 | 12% → 9% | |
| 광역시 | 1억 5천만원 | 1억 6천만원 | | |
| 그 밖의 지역 | 1억 4천만원 | 1억 5천만원 | | |

3. 종합적 성과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민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에 기여하고, 영세상인들이 임대료 인상 걱정을 덜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택·상가 서민임차인 보호 강화

1 추진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추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이 시행령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될 경우. 임대주택의 경매시 일정한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0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택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금액 이 상당기간 동안 조정 • 변경되지 않아 전세가격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기하고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발생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차인이 시행령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의 경매시 일정한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액임차상가의 매년 임대료 인상한도를 정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이후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임대료 인상 한도가 상당기간 조정·변경되지 않아 보증금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임대료 인상한도가 높아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있어 합리적 조정 · 변경이 필요하였음

2 기보밧햣

목표

● 서민이 생활과 생업의 터전인 소액보증금 임차주택과 임차상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영업활 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계획 또는 추진 전략

- "서민임대차제도 개선 사업"을 목표로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금액 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증액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
- "서민보호" 법제를 개선하는 사업이므로 서민 주거권 · 영업권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포함 하여 금융 \cdot 부동산 등 실물경제 전문가. 관계기관으로 전문 연구반을 편성 \cdot 운영함으로써 영세 서민을 보호하면서도 임대차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제도개선을 추진

3. 추진 과정 및 내용

추진 경과

- 2008. 3. 19. 대통령 업무보고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상가건물임대차 제도개선"을 추진과제 로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지시사항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착수함
- 먼저 2008. 3. ~ 4.에 걸쳐 2001. 이후 물가상승률을 비롯한 주요경제지표와 주택・상가건물 임 대차시장의 보증금, 월차임, 임대료 증액 등 수요 · 공급상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하여 검토 · 분석함
- 주택 · 상가건물 임대차시장에 대한 기초자료의 1차적 수집. 검토 · 분석을 마친 다음. 부동산시장 의 불안정성, 수급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2008. 5. 부동산 · 금융 등 실물경제 전문가와 서민주거 관련 시민단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서민임대차제도 개선 연구반(T/F)을 구성함
-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도시연구소, 부동산114 측에 서민임대차제도 개선 연구반(T/F) 구성원 추천을 요청하여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거쳐 아래 표와 같이 연구반을 조직함

[서민임대차제도 개선 연구반(T/F)]

| 번호 | 성 명 | | 직책 |
|----|-------|------------------|-------|
| 1 | 김 학 환 |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 | 소장 |
| 2 | 김 희 선 | 부동산 114 | 전무 |
| 3 | 남 영 우 | KB국민은행 연구소 | 박사 |
| 4 | 서 종 균 | 한국도시연구소 | 책임연구원 |
| 5 | 최 지 영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 서기관 |
| 6 | 김 기 용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사무관 |
| 7 | 김 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검사 |
| 8 | 허 명 국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연구관 |

- 2008. 5. 2. ~ 2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주관으로 서민임대차제도 개선 연구반(T/F) 1~3차 회 의를 진행하여 주택·상가건물 보증금의 보호범위. 우선변제금. 증액한도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 2008, 6, 13, ~ 6, 23,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거쳐. 2008. 6. 27. ~ 7. 16.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음
- 이후 2008. 7. 16. ~ 7. 3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8. 8. 1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 21.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내용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범위 확대]

| | 현행 | 개정 |
|--------------|----------|----------|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 4,000만 원 | 6,000만 원 |
| 광역시 | 3,500만 원 | 5,0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3,000만 원 | 4,000만 원 |

-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은 보호범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 보증금을 50% 상향하고, 광역시는 42%, 그 밖의 지역은 33%를 상향하였음
-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등 일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제외)}
- 2001 9 ~ 2008 4 기간 동안의 전세가격 평균상승률 19 2%를 감안하여 책정하되 적용대상이 되는 가구 비율을 유지하고 서민보호를 위해 전세가격 평균상승률보다 상향 조정
 - 서울지역 전세금 6.000만 원 이하 가구 비율은 약 50%로, 2001년 개정 당시 적용범위(52.3%) 와 같은 수준임
-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전세시장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상폭을 확대
 - 서울 지역에서만 약 26만 가구가 우선변제 대상으로 추가되어 보호범위에 새로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함

[우선변제금액 확대]

| | 현행 | 개정 |
|--------------|----------|----------|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 1,600만 원 | 2,000만 원 |
| 광역시 | 1,400만 원 | 1,7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1,200만 원 | 1,400만 원 |

- 2001, 9.~ 2008, 4.까지의 주택 전세가격 평균인상률에 맞춰 지역별로 25~ 16% 우선변제금액 을 증액
- 우선변제금액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주택이 유일한 재산인 서민들의 대출을 막고, 주택담보로 매 입자금을 마련하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 현재 대출기관은 주택담보대출시 임대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방실의 수량에 해당하는 만 큼의 우선변제금을 공제하고 대출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금액 확대는 주택담보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우선변제금액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주택이 유일한 재산인 서민들 특히, 은행권에서 담보대출 을 꺼리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는 부작용이 우려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내용

[적용범위 확대]

| | 현행 | 개정 |
|--------------|----------|----------|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 원 | 2억 6천만 원 |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 1억 9천만 원 | 2억 1천만 원 |
| 광역시 | 1억 5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 그 밖의 지역 | 1억 4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 2002. ~ 2006. 기간 동안의 상가건물보증금 평균인상률 9.2%와 월세 평균인상률 12.6%를 반영 하여 적용범위 확대폭을 10% 미만으로 정함
 - 서울과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000만 원씩,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은 1.000만 원씩 적용 범위 기준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인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을 올릴 경우. 5년간 임대 가 제한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들이 기준범위를 넘어서서 보증금 액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 보증금(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 이하인 상가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을 상대로 5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임대인은 매년 12% 이내에서만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그 경우 영세상인들이 늘어난 보증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개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영세상 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2005년 중소기업청 설문조사에서도 환산보증금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54%인 반면, 적정 또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44.3%에 달하는 등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아 점진적으로 인상함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축소]

| | 현행 | 개정 |
|-------|-----|----|
| 증액 한도 | 12% | 9% |

- 현행 증액 청구 한도 12%는 2001년 고금리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그동안 인하된 금리 등 사정을 감안하고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기존 12%에서 3%를 낮춰 9%로 최종 결정함
 - 제2금융권 대출금리는 1999 ~ 2001. 기간 동안 평균 11.44%였으나 2008. 3.에는 평균 8.63% 로 2.81% 인하
- 중소기업청 설문조사(2006년)시 중개업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9%가 연간 임대료 증액한도로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임차인의 91.5%도 9% 이하를 요구하였음

의견수렴 등 협의 및 문제해결 과정

• 부동산·금융 등 실물경제 전문가와 서민주거관련 시민단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민 임대차제도 개선 연구반(T/F)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서울특 별시. 중소기업청과의 이견에 대하여 협의절차를 거쳐 해결하였음

[서울특별시와의 협의 진행결과]

먼저, 서울특별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의 관계부처 협의 진행과정에서 현재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서울특별시의 우선변제 보호범위와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의 우선변제 보호범위를 별도의 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유사한 목적의 법률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일관성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 | |
|--------------|----------------|--|--|--|
| 스트가 중 기미어제기여 | 서울시 | | |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 | |
| 광역시 | 광역시 | | | |
| 그 밖의 지역 | 그 밖의 지역 | | | |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은 1984. 6. 14. 제정 당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기타의 지역' 2단계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01. 9. 15.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3단계로 분류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은 2002년 제정 당시부터 현재의 '서울특별시' '수도권 중 과밀 억제지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4단계로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서울특 별시 지역과 수도권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에 많은 격차가 있었기 때문임
- 서울특별시 일부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중 일부지역(분당, 과천, 용인 등)보다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낮아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을 분리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음
- ※ 2008. 7. 기준 서울특별시 아파트 기준 평균전셋값: 강서구 1억4,580만원, 노원구 1억2,149만원, 강북구 1억2,684만원, 중랑구 1억2,705만원, 영등포구 1억8,768만원, 성동구 1억9,335만원, 성북구 1억5,899만 원, 강남구 3억1,920만원, 서초구 3억1,010만원, 강동구 1억5,163만원, 송파구 2억2,835만원
- 상가의 경우를 검토하여도 서울특별시 내 임대료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의 경우 경기(394만 원 /m²). 인천(392만 원/m²)보다 평균 임대료가 낮음
- 중소기업청의 상가현황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상가와 주택의 분류체계를 일치시킬 것인지를 검 토한 결과.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을 적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음
-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의견 이외에 우선변제금액 부분에 대하여서도 개정안보다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러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서민들의 금융 권 대출을 오히려 경색시킬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여 개정안대로 의견 협의를 마침



[중소기업청과의 협의 진행결과]

- 다음으로, 중소기업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보다 적용 보호범위를 더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한도를 축소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중소기업청은 소규모 상가건물 임차인인 중소 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20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이후 상당기간 동안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일시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해석되었으나. 부동산 임대차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줄 우려를 수반함
- 상가건물의 보호범위(환산보증금)를 확대하는 것은 그대로 임대료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개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영세상인들의 생업의 터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높음
- ※ 서민임대차제도 개선 연구반(T/F)의 검토결과, 상가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를 초과하는 액수로 임대료를 결정하는 시장 관행이 있으므로 적용범위 확대 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급격한 보호범위 확대로 인하여 오히려 소규모 상가 임차인의 임차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서민임대차제도 개선 연구반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현실 적으로 최선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향후 개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민 임대차제도 개선 연구반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

추진상 애로 및 문제점

- 서민의 주거・상가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는 임차인, 임대인, 담보권자, 채권자 등 다수자 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보호하고 또한 시장에 급격 한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 운영되어야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개정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서울、 광역시, 기타지역) 무주택가구 전세금의 분포, 지역별 평균전세가격, 7~10년간 지역별 평균전세 가격 상승률. 7~10년간 지역별 주택가격 인상률. 지역별 상가건물 임대료 시세 등을 검토하기 위 하여 관계기관 ·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 하였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개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과 내 용은 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의 기준, 우선변제금, 적용범위, 임대료 증액한도 라고 할 수 있음 즉. 정책수요자에 대한 최적의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주택. 상 가 건물의 지역별·기간별 시세. 보증금. 차임에 관한 정밀한 통계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이와 관련된 추산, 개략적 통계자료 이외에 상세한 구체적 통계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한 문 제점이 있었으며 향후 정확한 통계자료의 작성과 보존 · 분석을 토대로 정책수요 대상자 인원을 선정하여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종합적 성과

규제개혁 전 · 후의 변화

-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민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영세상인들이 임대료 인상 걱정 을 덜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는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전문가의 참여와 시장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택·상가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소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함

사회 · 경제적 효과

●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각국의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여. 우리 경제도 금융 시장의 위기징후와 함께 실물시장의 경기침체, 내수부진, 신용경색, 부동산 거품붕괴 등의 문제 에 직면한 어려운 상황임

- 신용경색으로 인하여 실물경제가 어렵게 되면 우선적으로 담보와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 자영업 자의 영업난과 함께 실업자가 증가하여 가계소득과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생산과 성장률이 위축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서민들 의 고통이 따르게 됨
-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특별한 예산과 재정적 지원 없이도 중소 자영업자. 영세서민들이 생활과 생업의 터전을 보존하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최소한의 법률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서민 임대차 법제가 개선되었음

5 향후 발전계획

- 앞으로 법무부는 이번에 만들어진 서민임대차제도 개선 연구반(T/F)의 구성을 각계의 의견을 수 렴・반영할 수 있을 만큼 개방하고 더욱 내실 있게 확충하여 상시 가동할 계획임
- 또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의 관 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상가 건물의 지역별·기간별 시세, 보증금, 차임에 관한 정밀한 통계자 료 수집을 위하여 통계청,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KB국민은행 등 금융권, 민간 연구기관 · 단체 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위와 같은 준비를 바탕으로 물가·보증금 인상률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뒤쳐지지 않도록 최소 2~3년에 1회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영세서민 · 상공인 보호 에 최선을 다하겠음



제2절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요 약

1. 추진배경

• 작년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2. 추진내용

- 식품영업허가(또는 신고) 업종 중 유흥주점영업과 단란주점영업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를 제외한 12개 업종 모두 채권매입의무를 폐지
 -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중서민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식품영업허가(또는 신고)업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다음과 같음
 - 유흥주점 영업 700,000원
 - 단란주점 영업 100,000원 ~ 500,000원
 - 33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 영업 70,000원 ~ 150,000원
 - 33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100.000원 ~ 300.000원
 - 유제품제조업 · 마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 ·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청량음료제조업 및 당류제조업 100,000원 $\sim 200,000$ 원

3. 종합적 성과

• 일반 음식점 · 제과점 영업등 12개 업종의 창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는 비록 7만원에서 30만원 규모의 창업비용 경감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실행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면제

1. 추진배경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 계기

작년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작은 곳에서 부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들이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상 항목중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고 채권매입 면제가 직접적으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상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되었다.

2 기본방향

목 표

- 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검토 가능한 대안을 모색
- 가능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추진

추진 계획 또는 추진 전략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채권매입대상 항목을 선정한 후 당해 항목의 폐지여부에 대한 문 제점 등을 검토하여 폐지 대상 항목을 확정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3. 추진 과정 및 내용

기존 규제의 내용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거나 등기 · 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매입대상 항목별 채권매입액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1항 및 별표12의 부표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중 식품영업허가(또는 신고)업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

- 유흥주점 영업 700,000원
- 단란주점 영업 100.000원~500.000원
- 33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 영업 70.000원~150.000원
- 33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100 000원~300 000원
- 유제품제조업 · 마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청량음료제조업 및 당류 제조업 100.000원~200.000원

추진 경과 및 추진 내용

국토해양부에서는 부표의 채권매입대상 항목중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했다.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으로 구성되고.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주요조성 재원인 국민주택채권 발행은 부동산등기시 매입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부동산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작년부터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채권발행 규모가 점차 감축되어 가고 있으나. 현 정부에서 가장 핵심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자금 수요는 갈수록 증대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채권 발행액의 축소를 초래하는 일부항목의 채권매입의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앞세워 작은

부담이라도 줄여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항목중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을 재점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식품영업허가중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추진상 애로 및 문제점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각종 인허가 · 면허 등기 · 등록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종전에 매입대상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채권매입의무를 폐지키로 하는 것은 건설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등록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매입대상자들로부 터의 형평성을 이유로 한 동일 혜택 적용을 요구하는 역민원 발생이 우려되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주택공급방안, 저소득가구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임대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쪽방 주거지원 사업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부동산거래가 위축됨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기금 축소를 초래하는 매입의무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문제 해결 과정 및 현 추진 상황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서민들의 가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창업시 경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항목을 점 검하고 이에 대한 면제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상 업종 선정에 착수하였다.

대상항목은 서민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 영업과 관련있는 식품영업을 선택하였고 이중 면제가능 업종 선정을 위해 검토를 하였다.

업종 선정과정에서는 14개 식품영업허가 유흥주점영업과 단란주점영업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분이어서 이들을 제외한 12개 업종 모두 채권매입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다.

일반음식점 영업 등에 대한 채권매입의무를 폐지하기 위하여는 주택법시행령(별표 12)을 개정해야 하므로 지난 3월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여부 심사. 법제처의 심사 등 약 5개월간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5일에 최종 공포되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4. 종합적 성과

규제개혁 전 · 후의 변화와 성공요인

국민주택채권 발행규모는 대폭 감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저소득층 지원과 보금자리 주택보급을 위한 소요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수요는 대폭 증가되는 추세 하에서 식품영업 업종 일부에 대한 국민 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는 국토해양부 소관부서 내부에서도 찬 · 반 의견이 대립되는 등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능한 대안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가 가는 행정,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어루만지는 행정을 실천한 결과 서민들의 가계와 가장 밀접한 항목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사례의 사회 · 경제적 효과

일반 음식점·제과점 영업등 12개 업종의 창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는 비록 7만원에서 3십만원 규모의 창업비용 경감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실행에 옮겼다는 의미에서 더욱 뜻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5 향후 발전계획 또는 추진계획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 곁에 다가서는 행정.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먼저 다듬어 줄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 입장에서 먼저 고민 하고 아픈 곳이 어느 부분인지를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참고: 주택법시행령 별표12의 부표]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단위 : 원)

| 매입대상 | 매입금액 |
|--------------------------------------|--------------------|
| 1. 귀금속점포영업허가 | 100,000 |
| 2. 엽총소지자허가 | 30,000 |
| 3. 사행행위허가 | 300,000~3,000,000 |
| 4.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 100,000 |
| 5. 주류제조업면허 | 300,000 |
| 6. 수렵면허 | 50,000~100,000 |
| 7. 건축허가 | |
| 8. 건설업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 자본금의 2/1,000 |
| 9. 공유수면매립면허 | 면허수수료의 20/100 |
| 10. 건설기계신규등록 | 과세표준액의 5/1,000 |
| 11. 정보통신공사업허가 | 자본금의 1/1,000 |
| 12. 전기공사업신규면허 | 자본금의 1/1,000 |
| 13. 소방시설공사업면허 | 자본금의 1/1,000 |
| 14. 측량업등록 | 50,000 |
| 15. 건축사사무소등록 | 30,000~100,000 |
| 16.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가. 유흥주점영업 | 700,000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300,000 |
| (3) 그 밖의 지역 | 100,000 |
| 다.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50,000 |
| (2) 각 도청소재지 (3) 그 밖의 지역 | 100,000 70,000 |
| 라.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10,000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3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200,000 |
| (3) 그 밖의 지역 | 100,000 |
| 마. 유제품제조업 · 마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 · 식육제품제조업 | |
|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청량음료제조업 및 당류제조업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 200,000 |
| (2) 각 도성소세시 (3) 그 밖의 지역 | 150,000 100,000 |
| | · |
| 17.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유원시설업의 허가 | 20,000~50,000 |
| 18. 골프장업의 신규등록 | 5,000,000 |

| 매입대상 | 매입금액 |
|-----------------------------------|--|
| 19. 부동산등기 | |
| 가. 소유권의 보존 | UZITE ZWOL 12/1 000 a 21/1 000 |
| (1) 주택 (2) 토지 | 시가표준액의 13/1,000~31/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50/1,000 |
| (3)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 시가표준액의 8/1,000~20/1,000 |
|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시가표준액의 14/1,000~42/1,000 |
|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
| 20. 자동차대여사업등록 | 500,000 |
|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 | 500,000 |
| 22.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 50,000~100,000 |
| 23. 법인설립등기 | 자본금의 1/1,000 |
| 24. 주택건설사업등록 | 자본금의 2/1,000 |
| 25. 주택관리업등록 | 자본금의 2/1,000 |
| 26.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 계약금액의 1/1,000 |
| 27. 「하천법」에 의한 토석·사력의 채취허가 | 점용료의 5/100 |



제3절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 축소

요 약

1. 추진배경

•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통관단계에서 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가신고 입증을 위한 수 차례에 걸친 자료 요구 등으로 심사의 장기화가 초래되고 통관 지연, 사후심사시 중복심사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여 개선 필요성 대두

2. 추진내용

- 자체 선정회의, 관련업계 동향, 국내외 수입동향 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축소·공고
 - ⇒ 현행 55개 품목 → 36개 품목(19개 품목 통관전 심사대상에서 제외)
 -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 등을 반영한 개별소비세(중고자동차 포함) 대상품목의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 조정 등 :

현행 28개 품목 중 14개 품목 제외

-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관련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조정 : 현행 27개 품목 중 5개 품목을 제외

| ក្ | 현행 심사대상 | | 1 · 2차 검토 | . / 의견조회시 | 제외 대상 | 최종 제외 | | | |
|------|---------|-----|-----------|-----------|-------|-------|-------|-----|--|
| | 55개 | | | 35개 | | 19개 | | | |
| 농수산물 | 개별소비세 | 중고차 | 농수산물 | 개별소비세 | 중고차 | 농수산물 | 개별소비세 | 중고차 | |
| 27 | 18 | 10 | 11 | 14 | 10 | 5 | 9 | 5 | |

3. 종합적 성과

- 통관전 세액심사 생략으로 통관시간 획기적 단축: '07년 9.9일 → '08년 3.9일(6일 단축)
- 통관전 심사 생략 수혜대상 확대: 1,616→2,400개 업체
- 통관시간 단축으로 기업 물류비 등 연간 12.5억원 절감(화물보관료: 11.3억원, 금융비용: 1.2억)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 축소

1. 추진배경

농수산물에 대한 세액심사를 통관전에 꼭 해야만 하는가?

밤 수입업자 김알밤氏와 세관공무원간의 대화

세관공무원 " 밤은 수출국의 산지 가격이 톤당 \$1,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까지의 보험료와 운송비를 합하면 톤당 \$1,200 정도인데, 수입신고는 이 보다 낮은 톤당 \$800에 하셨네요?"

수입상 "무슨 소리예요? 나는 크기도 불규칙하고 일부는 보관상태가 좋지 않은 저급품 밤을 샀기 때문에 톤당 \$800에 구입할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모든 증빙서류가 있잖아요. 세금을 거두려면 확실히 알고 해야지, 내가 틀렸다면 틀렸다는 증거 대 보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저가신고라고 의심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만 하실 겁니까? 저도 매 건별로 계속 담보를 설정해야 해서 금전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세관공무원 " 밤은 통관전에 세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매건별로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로 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신고가격이 적정한지를 심도있게 심사한 후에 수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공산품 관세율은 8% 전·후임에 비하여, 농수산물 관세율은 민물장어 27%, 밤 30%, 민어 53%, 고추 270%, 참깨 630% 등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신고가격을 조금만 낮추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창출 가능
 - 이를 기회로 농수산물 수입업자들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는 것이 관련업계의 관행화되고 있는 등 불법적인 기현상 발생

- 그러나, 농수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産地·品質·生産時期·作況·契約條件 등에 따라 천차 만별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세관에서 매 건별로 수출국에 현지출장 확인 전에는 수입신고가격 진위여부 판단 사실상 곤란
- 세관에서는 통관단계에서 저가신고를 의심하면서도 수입신고서 처리기일인 1 ~ 3일내에 수입 업 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저가신고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에 따라
 - -'05.4월 부터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담보기준가격*에 기초한 담보(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등)를 추가 제공받고 수리전반출 우선 허용 및 가격자료 제 출요구 등을 통한 과세가격 심사 실시
 - * 前月 전국세관 수입가격을 기초로 산정 · 시달하는 농수산물 품목별 기준가격
- 과세가격 심사담닷 세관공무워은 해당 농수산물의 과세에 대한 합리성에 의심이 있음에도 심사 를 종결하자니 저가신고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저가신고 입증을 위한 수 차례에 걸친 자료 요구 등으로 심사의 장기화가 초래되고
 - 수입업자는 장기간 과세가격 미확정에 따른 기 설정한 담보해제 불가, 창고 보관료 추가밤생 등 으로 금전적 부담가중 및 창구에서의 민원마찰 빈번 발생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장기방치의 심각성

- 현황조사 결과 전국세관 미결현황('08.3)은 총 90개 업체 356건, 이중 6개월 이상 장기 미결비율 이 평균 40% 이상에 달하고. 평균 처리기간은 197일로 세액심사 기간 지나친 장기화 추세
- 미결건은 업체기준으로 ①냉동고추. ②조제땅콩. ③냉동마늘. ④참깨. ⑤대두 順
- 수입신고 건수기준으로는 ①참깨. ②조제땅콩. ③곶감. ④냉동마늘. ⑤대두 順

[업체별. 품목별 심사미결 현황]

('08.3 現在)

| 품 목 | A세관 | | | B세관 | | | C세관 | | | 전체 | | |
|--------|-----|----|-----|-----|----|-----|-----|----|-----|----|----|-----|
| 古古 | 업체 | 건수 | 기간 | 업체 | 건수 | 기간 | 업체 | 건수 | 기간 | 업체 | 건수 | 기간 |
| 건조팥 | | | | 1 | 1 | 135 | 1 | 4 | 114 | 2 | 5 | 118 |
| 곶감 | 4 | 41 | 95 | 1 | 3 | 93 | 1 | 1 | 84 | 6 | 45 | 95 |
| 냉동고추 | 9 | 24 | 149 | 3 | 3 | 145 | 1 | 1 | 148 | 13 | 28 | 149 |
| 냉동다진마늘 | | | | 1 | 17 | 314 | | | | 1 | 17 | 314 |
| 냉동마늘 | 6 | 11 | 93 | 2 | 18 | 145 | 3 | 3 | 79 | 11 | 32 | 121 |
| 당근 | 4 | 5 | 244 | | | | 1 | 1 | 105 | 5 | 6 | 221 |

| | | A세관 | | B세관 | | C세관 | | | 전체 | | | |
|-------|----|-----|-----|-----|-----|-----|----|----|-----|----|-----|-----|
| 품 목 | 업체 | 건수 | 기간 | 업체 | 건수 | 기간 | 업체 | 건수 | 기간 | 업체 | 건수 | 기간 |
| 대두 | 1 | 10 | 909 | 3 | 7 | 348 | 2 | 14 | 88 | 6 | 31 | 412 |
| 들깨 | 1 | 3 | 114 | 2 | 4 | 75 | 3 | 9 | 124 | 6 | 16 | 110 |
| 메밀 | | | | 1 | 1 | 352 | | | | 1 | 1 | 352 |
| 민물장어 | | | | | | | 1 | 1 | 111 | 1 | 1 | 111 |
| 밤 | | | | 1 | 1 | 149 | | | | 1 | 1 | 149 |
| 생강 | 3 | 24 | 286 | | | | 1 | 1 | 142 | 4 | 25 | 280 |
| 신선마늘 | 1 | 5 | 223 | | | | | | | 1 | 5 | 223 |
| 알땅콩 | | | | 1 | 1 | 217 | 1 | 4 | 121 | 2 | 5 | 140 |
| 양파 | 3 | 9 | 381 | | | | | | | 3 | 9 | 381 |
| 조미오징어 | | | | 1 | 3 | 196 | | | | 1 | 3 | 196 |
| 조제땅콩 | 6 | 9 | 161 | 4 | 36 | 184 | 2 | 7 | 136 | 12 | 52 | 173 |
| 찐쌀 | 1 | 1 | 78 | 1 | 3 | 101 | 1 | 1 | 69 | 3 | 5 | 90 |
| 참깨 | | | | 2 | 18 | 196 | 6 | 48 | 189 | 8 | 66 | 191 |
| 초산마늘 | 2 | 2 | 206 | | | | | | | 2 | 2 | 206 |
| 초산통마늘 | | | | 1 | 1 | 197 | | | | 1 | 1 | 197 |
| 합계 | 41 | 144 | 226 | 25 | 117 | 201 | 24 | 95 | 150 | 90 | 356 | 197 |

2. 기본방향

●목표

- 신속 통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생필품 적기조달로 국민생활 안정
- 공정 · 정확한 세액심사로 국가재정 수입 확보

● 추진전략 (4 Down & 2 Up 실천전략)

- 통관 전 세액심사 품목 합리적 조정
- 세관과 업체 Win-Win 방안 추진
- 과세가격 심사 업무프로세스 개선

목표 설정

- 농수산물 등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세관간섭 최소화를 통한 신속통관 구현으로 중단없는 물류 흐름 및 기업하기 좋은 무역화경 조성
- 농수산물 등 생필품 적기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특히,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일조
- 농수산물 등에 대한 통관 후 세액심사 강화를 통한 국가재정 수입 확대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추진전략 및 계획 수립

-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품목 합리적 조정을 통해 통관단계 민원마찰 최소화
- 불요불급한 절차생략을 통한 수입자의 담보·창고보관료 부담완화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사후 공정 · 정확한 세액심사를 통한 정확한 세수확보 및 세액심사 실효성 제고

[4 Down & 2 Up 전략]

| 4 Down | 2 Up |
|--|---|
| 통관전 세액심사대상 품목 ▼ 민원마찰 발생 ▼ 수입자 담보 부담, 창고보관료 ▼ 통관처리시간 ▼ | 통관단계 고객만족도 ▲ 사후심사 실효성 제고 ▲ |

- 추진계획 수립
 - 통관전 세액심사대상 합리적 조정 추진 T/F 구성('08.2)
 - 통과전 세액심사 제도 운영 현황 전반적 분석('08.2)
 -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의견조회('08.3)
 -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 품목 축소('08.4)
 - 시행결과 피드백 및 축소효과 분석('08.6)
 -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품목 재조정('08.7)

3. 추진과정 및 내용

기존 규제의 내용

-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통관단계에서 세액심사 실시
-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 관세 등 체납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
 -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사후심사가 부적당한 물품 (관세청장 지정 → 총 53개 품목)
- ⇒통관 지연. 사후심사시 중복심사 등 민원불편 초래

규제개혁 방안

-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 축소
- 통관전 세액심사 축소대상
 - 개별소비세 품목 중 다이아몬드와 가공 진주외 14개 품목
 - 심사실익이 낮은 중고 승용자동차 10개 품목
 - 가격신고 성실도가 높은 농수산물 일부 품목(밤, 고구마전분 등)
- ⇒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조 필요

추진경과 및 추진내용

통관전 세액 심사대상 축소의 신중한 접근

- '06년말 대비 1.5~2배 이상 가격급등 품목(예: 대두, 참깨, 들깨, 땅콩)에 대한 통관전 세액심사를 생략시. 기존 수입업체의 불만 증폭 및 국내 농어민 피해 등 심각한 부작용 예상
 - ⇒ 반입물량 추이를 분석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최근 1∼2년간 가격변동이 낮고 가격신고 성실도가 높은 고구마 전분, 밤, 건조생강, 찐쌀, 활홍민 어를 우선 축소 대상으로 판단

통관전 세액 심사대상 일부 축소 추진

-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세액심사 장기화로 수입업체의 담보부담 완화 및 민원마찰 해결을 위해 세 관 전문가 대상 심사관계관 회의 개최('08.3.12)
 - 소규모 영세기업의 담보부담력 악화에 따른 수입물량 감소로 메이저 업체가 수입물량을 담합 독점하는 시장 양극화 문제 발생 개연성 도출
 - ⇒ 심사대상 품목의 대폭 축소보다는 시장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 우선적 축소. 시행추이 분석결과를 반영 향후 추진계획 수정
- 통관전 세액심사대상 품목 조정 등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조회(3.25)
- 수입량 분석, 내부 회의 결과 5개 품목을 1차 축소품목으로 선정

[1차 축소품목 선정 및 사유]

| 품 목 | 사 유 | 관련부처 |
|--------|-------------------------------------|--------|
| 고구마 전분 | 농식품부 추천물량 범위내 수입(99%) | 농수산식품부 |
| 밤 | 산림청 추천물량 범위내 수입(94%), 국내공급 안정, 민원없음 | 산림청 |
| 건조생강 | 제약원료, 수입량 미미('07년, 43톤) | |
| 찐쌀 | 평균 신고단가 담보기준가격 상회, 수입량 감소 | 농수산식품부 |
| 활홍민어 | 비교적 담보기준가격에 근접(94%), 민원없음 | |

통관전 세액 심사대상 대폭 축소 추진

- 국제적 애그플레이션(Agflation)* 과 주요 수출국의 곡물 수출통제 등에 따른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도 · 소매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 Agflation: Agriculture + inflation, 밀 등 곡물류 가격 상승으로 초래된 물가상승
- 세관의 세액심사 장기화에 따른 수입업체의 자금부담, 물류지체, 민원발생 등 통관전 세액심사 운영과정에서의 부작용 발생빈도 증가
- 물가안정을 위한 사전세액 심사대상의 대폭 축소 관련 전국세관 통관·심사 관계관 2차 회의 개최(4.15)
 - ⇒ 국내수급 안정 목적 통관전 세액심사 제외 대상 품목 20개로 대폭 확대

심사대상 제외 품목(55개 → 20개)

- 개별소비세대상 품목 축소 (18개 → 4개)
- 소득수준 향상. 소비행태 변화 등에 따른 사치품에 대한 인식변화 반영 (녹용, 밍크의류, 루비, 사파이어 등 14개 품목)
- 다이아몬드, 가공진주는 사회관심도 등을 고려 현행 유지
- 중고승용자동차 제외 (10개)
- 사전세액심사 실익이 적고. 형식적인 사전심사로 저가신고에 면죄부 부여 격
- 농수산물 축소 (27개 → 16개)
- 국내 생산농가가 적고.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관심도 낮은 품목
- 수입가격 안정추세,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을 상회·근접한 품목
- 국내 수입량 · 납부세액이 많지 않은 품목
- 향후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 (최종제외품목) 고구마전분, 밤, 건조생강, 찐쌀, 활홍민어, 당근, 곶감, 건고추, 메밀, 알땅콩, 초산마늘, 참깨, 들깨, 조제땅콩, 초산마늘, 조미오징어(추가 품목)
- 당근 등 11개 품목 추가 축소방안 관련부처에 추가의견 조회(4.25)

의견수렴 등 관계부처 협의

- 밤, 활홍민어, 고구마전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 축소 불가 의견 제시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 ⇒ 관련 분석자료 제시 및 적극적 설득 등 조정과정을 통해 시장에 영향이 작은 품목을 최대한 사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

| 관계기관 의견 | 의견수렴 결과 조정(관세청) |
|---------------------|--|
| o 제외 : 활홍민어 등 3개 품목 | ㅇ 제외 : 〈좌동〉 |
| o 존치 : 당근 등 8개 품목 | O 존치 : 당근 등 6개 품목 O 제의 : 거조색강 등 2개 푸모 |

[쟁점 품목별 의견수렴 상세내용]

① 활홍민어

〈 농림수산식품부 〉 - 제외

■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특별한 의견 부존재

〈 관세청 〉 - 제외

- ' 05년 민원 야기에 따른 추가 품목
- 담보기준 가격에 근접 신고(94%) 등 성실신고 정착으로 판단

② 당근

〈 농림수산식품부 〉 - 존치

- 제주산 당근의 태풍 피해로 인해 국내 생산량이 급감
- '08.4월 현재 국내 당근가격이 평년보다 70.7% 증가
- 중국산 당근의 저가 또는 불법 · 편법 수입 예상

〈 관세청 〉 - 존치

- 국내가격 및 수입단가 동시 상승추세
- 가격 변동 폭을 고려 당분간 존치

③ 밤

〈 산림청 〉 - 제외

-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수입추천품목으로 사전세액심사 불필요
- 미탈각 밤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심사 불필요

〈 관세청 〉 - 제외

-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이 거의 근접
- 사전세액심사 제외에 관련부처 동의 물품으로 제외

④ 곶감

〈 산림청 〉 - 존치

- 매년 국정감사시 중국산 등 저가 수입 곶감의 안전성, 수입물량 · 금액의 상승추세
- 국내 곶감 생산농가 보호 필요성 제기 물품으로 현행유지 필요

〈 관세청 〉 - 존치

- 동절기 집중 수입물품으로 제외를 검토
- 관련부처의 국내 생산농가 보호 필요성 강력 제기 품목이므로 현행 유지

⑤ 건고추

〈 농림수산식품부 〉 - 존치

■ 건고추의 수입단가의 진폭이 크고 국민정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품목

〈 관세청 〉 - 존치

■ 건고추 수입단가의 진폭이 발생. 활발한 진행중으로 당분간 존치 필요

⑥ 건조생강

〈 농림수산식품부 〉 - 존치

- 건조생강을 신선생강으로 환산할 경우 14배 수준
- 소량만의 수입으로도 국내 시장 교란 가능성 파급효과 지대
- 국내 주산지(서산, 완주)에서 건조 분말제품 이미 개발 · 판매중
- 편의성 감안시 수요증가 전망, 종합적 분석·검토기간 필요(2~3년)

〈 관세청 〉 - 제외

- 주요 수입업체 모니터링 결과 주용도는 식품. 의약품 원료로 사용
- 건조생강의 소량 수입 및 프로세스 비교적 투명(○○제약 등)
- 식품원료는 가공(Slice 등) · 검사비용 등의 사유로 높은 가격형성 및 가격 변동폭은 미미(◎◎식품)

⑦ 메밀

〈 농림수산식품부 〉 - 존치

- 국내산과 수입산의 현저한 단가차이
- 수입량 증가시 국내 생산농가 피해 예상
- 국내 생산농가의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 농후

〈 관세청 〉 - 존치

- 일반메밀 수입량은 비교적 안정추세
- 대체물품인 깐메밀 수입량 폭발적 증가 추세
- ⇒ 수입량 증가와 저가신고가 우려

[메밀·깐메밀 수입현황]

(단위:톤)

| 품 목 | 2004년 | 2005년 | 전년대비 | 2006년 | 전년대비 | 2007년 | 전년대비 |
|-----|-------|-------|------|-------|--------|-------|------|
| 메밀 | 3,348 | 3,860 | 115% | 3,736 | 97% | 3,575 | 96% |
| 깐메밀 | 0.5 | 4.9 | 925% | 49 | 1,008% | 208 | 424% |
| 합계 | 3,349 | 3,865 | _ | 3,785 | _ | 3,783 | _ |

⑧ 고구마 전분

〈 농림수산식품부 〉 - 제외

■ 관련단체에서도 특별한 의견 없음

〈 관세청 〉 - 제외

■ '05년부터 시장접근물량 추천내의 범위내 수입 및 국내공급 원활

⑨ 알땅콩

〈 농림수산식품부 〉 - 존치

■ 수입 알땅콩 주요반입 행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CMA물량(4.907톤) 및 보따리상 (연 2~3,000톤)을 통한 밀수 등

- '07.4월 피땅콩을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 제외결과 저가신고 추세
- 저가신고 및 편법 수입우려 농후

〈 관세청 〉 - 존치

■ 농림수산식품부의 존치요청을 수락 현행 유지

① 찐쌀

〈 농림수산식품부 〉 - 존치

- 수입 찐살로 인한 막대한 피해발생으로 농민단체 등 수입금지 요구
- 국제가격 하락시 수입물량 대폭 증대 예상

〈 관세청 〉 - 존치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2개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 국제 쌀가격 42%('08년 1/4분기) 상승
- 중국·인도·베트남·이집트 등 주요국 쌀수출 통제로 수급여건 악화
- 최근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보도 등 민감품목



⑪ 초산마늘

〈 농림수산식품부 〉 - 존치

■ 중국정부 개입(FOB기준 \$460/톤 이하 수출금지)으로 대체마늘 수입 증가

〈 관세청 〉 - 제외

- 중국정부의 개입 등으로 통마늘, 신선마늘(깐마늘) 사전세액심사대상 유지 중
- 대체품 중 냉동마늘(수입비중 80%이상)은 수입량 증가추세 유지
- 대체품인 초산마늘은 수입물량 일정으로 제외

[대체마늘(냉동. 초산마늘) 수입현황]

(단위:톤)

| 품 목 | 2004년 | 비중 | 2005년 | 비중 | 2006년 | 비중 | 2007년 | 비중 |
|------|--------|------|--------|------|--------|------|--------|------|
| 냉동마늘 | 27,090 | 82% | 25,748 | 82% | 26,185 | 81% | 35,451 | 85% |
| 초산마늘 | 6,044 | 18% | 5,539 | 18% | 6,127 | 19% | 6,171 | 15% |
| 합계 | 33,134 | 100% | 31,287 | 100% | 32,313 | 100% | 41,622 | 100% |

추진상황 및 결과

- 자체 선정회의, 관련업계 동향, 국내외 수입동향 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축소 · 공고('08.5.20)
 - ⇒ 현행 55개 품목 → 36개 품목(19개 품목 제외)
-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 등을 반영한 개별소비세 대상품목의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 조정 등 (붙임 1 참조)
 - ⇒ 현행 28개 품목 중 14개 품목 제외
-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관련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조정('08.5.17) (붙임 2 참조)
 - ⇒ 현행 27개 품목 중 5개 품목을 제외

[통관전 세액심사 제외 품목 현황]

(단위:건)

| ÖĹ | 현행 심사대상 | | | 1·2차 검토 최종 제외 의견조회시 제외 대상 | | | 최종 제외 | |
|------|---------|-----|------|------------------------------|-----|----------------|-------|-----|
| | 55개 | | 357# | | | | | |
| 농수산물 | 개별소비세 | 중고차 | 농수산물 | 개별소비세 | 중고차 | 농수산물 개별소비세 중고차 | | 중고차 |
| 27 | 18 | 10 | 11 | 14 | 10 | 5 | 9 | 5 |

4. 종합적인 성과

추진

- 본청 규제개혁대상 중 심사분야 과제수행('08,1월)
- 「농수산물 등 사전세액심사」 문제점과 개혁방안

- 실행 · 통관전 「농수산물 등 사전세액심사」로 통관지연
- 통관지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 저하 등 우려

- 농수산물 심사 관계관 회의 개최 (2회,3.12/4.15) 및 의견수렴(3회)
- 통관전 세액 심사대상 축소 관련기관(농식품부 등) 1차협의(3.25/4.25) → 농가보호 명분 반대
- 품목별 수출입현황, 국내외 가격 등 정밀분석자료에 근거하여 관련기관 방문 설득(11회, 4~5월) 후, 통관전 심사대상 축소품목 선정
- 통관전 심사 축소품목 공고(5,20)
- 55개→36개, 19개품목 축소
- 통관전 세액심사 생략 규모('07년 수입액 기준)
- 물량: 14만톤, 수입액: 1,500억원

• 통관전 세액심사 생략으로 통관시간 획기적 단축



⇒ 통관소요시간 6.0일 단축

• 사전심사 생략 수혜대상 확대

| | 개정전 | 개정후 |
|----------|--------|--------|
| 생략 대상업체수 | 1,616 | 2,400 |
| 생략 건수 | 29,332 | 23,232 |

• 통관시간 단축으로 기업 물류비 등 연간 12.5억원 절감

- 화물보관료 : 11.3억원 - 금융비용 : 1,2억원

5. 향후 추진계획

- 내부 품목별 통관전 세액심사 담당자 지정, 심사기법 교육 강화 및 세액심사 일몰제 도입 등 통 관전 세액심사 제도의 내실화 추진
- **외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의 주기적 협의 및 가격동향 분석 등을 통한 사전세 액 심사대상 재조정
- ⇒ 통관전 세액심사대상 품목 지속적 축소 추진

[〈붙임 1〉 중고자동차 및 개별소비세 대상물품 조정]

| ш= | _ H | 11111/11014) | 세 | 율 | 심사 | 0.71/7101110 |
|----|------------|--------------|-------|------------------|-----|--------------|
| 번호 | 품 명 | 세번(HSK) | 실행관세 | 개별소비세 | 대상 | 유지/제외사유 |
| 1 | 중고자동차① | 8703218000 | 협정 8% | 5% | | |
| 2 | 중고자동차(2) | 8703228000 | 협정 8% | 5% | 제외 | 적발실적 미미 |
| 3 | 중고자동차③ | 8703231020 | 협정 8% | 5% | | |
| 4 | 중고자동차 | 8703239020 | 협정 8% | 10% | | |
| 5 | 중고자동차 | 8703241020 | 협정 8% | 10% | 유지 | 저가신고 상존 |
| 6 | 중고자동차 | 8703249020 | 협정 8% | 10% | | |
| 7 | 중고자동차④ | 8703318000 | 협정 8% | 5% | 제외 | 적발실적 미미 |
| 8 | 중고자동차⑤ | 8703321020 | 협정 8% | 5% | 시기 | 그르르크 이미 |
| 9 | 중고자동차 | 8703329020 | 협정 8% | 10% | 유지 | 저가신고 상존 |
| 10 | 중고자동차 | 8703338000 | 협정 8% | 10% | π^Ι | |
| 11 | 천연진주(미가공)⑥ | 7101101000 | 기본 8% | | 제외 | 적발실적 없음 |
| 12 | 천연진주(가공) | 7101102000 | 기본 8% | | 유지 | 밀수우려 |
| 13 | 양식진주(미가공)⑦ | 7101210000 | 기본 8% | | 제외 | 적발실적 없음 |
| 14 | 양식진주(가공) | 7101220000 | 기본 8% | | | |
| 15 | 다이아몬드(원석) | 7102310000 | 기본 1% | 개당 | 유지 | 밀수우려 |
| 16 | 다이아몬드(기타) | 7102390000 | 기본 5% | 200만원 초 과 20% | | |
| 17 | 기타 원석® | 7103100000 | 기본 1% | | 제외 | 적발실적 미미 |
| 18 | 루비 | 7103919010 | 기본 5% | | | |
| 19 | 사파이어 | 7103919020 | 기본 5% | | 유지 | 저가신고 우려 |
| 20 | 에머럴드 | 7103919030 | 기본 5% | | | |

| ш= | N | 11111/11014) | 세 | 율 | 심사 | O T / T O 1 O | |
|----|------------|--------------|--------|--------------------------|------|-----------------------|--|
| 번호 | 품 명 | 세번(HSK) | 실행관세 | 개별소비세 | 대상 | 유지/제외사유 | |
| 21 | 오팔⑨ | 7103999010 | 기본 5% | | | | |
| 22 | 비취⑩ | 7103999020 | 기본 5% | 개당 200만원 제외 초과 20% | | | |
| 23 | 옥수⑪ | 7103999030 | 기본 5% | | וחות | 저바시저 미미 | |
| 24 | 수정® | 7103999040 | 기본 5% | | 게외 | 적발실적 미미 | |
| 25 | 기타 귀석·반귀석® | 7103999090 | 기본 5% | | | | |
| 26 | 밍크의류⑭ | 4303101100 | 기본 16% | | | | |
| 27 | 녹용전지 | 0507901110 | 기본 20% | 7% | 유지 | 미스 뭐기이거 | |
| 28 | 녹용(기타) | 0507901190 | 기본 20% | 170 - | π^Ι | 밀수,저가우려 | |

[〈붙임 2〉수입 농수산물 대상물품 조정]

| 번호 | 세번(HSK) | 품명 | 개편(안) | 관련부처 | 유지 또는 제외사유 |
|----|--------------|--------|--------|------|----------------|
| 1 | 0301.92-9000 | 민물장어 | | | |
| 2 | 0301.99-9095 | 활홍민어① | 제외(1차) | 제외 | 제외(관련부처 동의) |
| 3 | 0703.10-1000 | 양파 | | | |
| 4 | 0703.20-1000 | 신선깐마늘 | | | |
| 5 | 0706.10-1000 | 당근 | 제외(2차) | 유지 | 유지(관련부처 의견 수용) |
| 6 | 0710.80-2000 | 냉동마늘 | | | |
| 7 | 0710.80-7000 | 냉동고추 | | | |
| 8 | 0713.31-9000 | 건조녹두 | | | |
| 9 | 0713.32-9000 | 건조팥 | | | |
| 10 | 0802.40-1000 | 받② | 제외(1차) | 제외 | 제외(관련부처 동의) |
| 11 | 0813.40-1000 | 곶감 | 제외(2차) | 유지 | 유지(관련부처 의견 수용) |
| 12 | 0904.20-1000 | 건고추 | 제외(2차) | 유지 | 유지(관련부처 의견 수용) |
| 13 | 0910.10-1000 | 신선생강 | | | |
| 14 | 0910.10-2000 | 건조생강③ | 제외(1차) | 유지 | 제외(가격안정, 용도한정) |
| 15 | 0910.10-9000 | 기타생강 | | | |
| 16 | 1008.10-0000 | 메밀 | 제외(2차) | 유지 | 유지(관련부처 의견 수용) |
| 17 | 1104.29-9000 | 깐메밀 | | | |
| 18 | 1108.19-1000 | 고구마전분④ | 제외(1차) | 제외 | 제외(관련부처 동의) |

| 번호 | 세번(HSK) | 품명 | 개편(안) | 관련부처 | 유지 또는 제외사유 |
|----|--------------|-------|--------|------|----------------|
| 19 | 1201.00-9010 | 콩나물콩 | | | |
| 20 | 1201.00-9090 | 기타대두 | | | |
| 21 | 1202.20-0000 | 알 땅콩 | 제외(2차) | 유지 | 유지(관련부처 의견 수용) |
| 22 | 1207.40-0000 | 참깨 | | | |
| 23 | 1207.99-1000 | 들깨 | | | |
| 24 | 1605.90-9010 | 조미오징어 | | | |
| 25 | 1904.90-1000 | 찐쌀 | 제외(1차) | 유지 | 유지(관련부처 의견 수용) |
| 26 | 2001.90-9060 | 초산마늘⑤ | 제외(2차) | 유지 | 제외(소량, 가격안정) |
| 27 | 2008.11-9000 | 조제땅콩 | | | |



제4절 지체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

요약

1. 추진배경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장애유형을 12개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최근 지체장애인용 운전보조장치의 개발 · 보급수준을 제대로 반영 하고 있지 못해 운전능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취업기회를 제한

2. 추진내용

- 다음 1. 8, 11의 경우 모든 운전면허에 대한 취득제한 폐지
 - 1. 엄지손가락 이외의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8.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11.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다음 2 3 7 12의 경우 제2종소형면허(125cc 초과 이류자동차) 이외의 유전면허 취득제한 폐지
 - 2.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3.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고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 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7. 견관절부터 아랫부분 이 없거나 이와 동등 한 기능장애



12. 고관절부터 아랫부 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자동차 구조에 관한 운전면허 조건 부과
 - 지체장애인의 시험과정에서 일반적인 차량 구조와 다르게 왼쪽 엑셀러레이터, 오른쪽 방향지시기 등이 장착된 시험용 차량을 이용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실제 운전상황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운전하도록 해당 운전면허에 조건 부과

3. 종합적 성과

- 지체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로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기여
- 특히, 운전업종 취업에 필요한 제1종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로 지체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지체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

1. 추진배경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장애유형을 12개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취득할 수 있는 운 전면허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시행규칙 별표20)
-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최근 지체장애인용 운전 보조장치의 개발 · 보급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운전능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취업기회를 지나 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2006년 현재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중 지체장애인의 면허 취득비율이 0.49%, 전체 지체장애인 1,070,450명 중 11.0%인 11만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운전업종 취업에 필요한 제1종면허 취득비율은 전체의 0.28%(4만1천여명)에 불과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율]

| | 계 | 제1종면허 | 제2종면허 |
|--------|------------|-----------------|----------------|
| 전 체(명) | 24,088,229 | 14,862,784(62%) | 9,225,445(38%) |
| 장애인(명) | 117,870 | 41,312(35%) | 76,558(65%) |
| 비 율(%) | 0.49 | 0.28 | 0.83 |

2. 기본방향

• 최근 개발 · 보급되고 있는 지체장애인용 운전 보조장치를 반영하여 이러한 운전 보조장치를 이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경우 면허취득 제한 완화

•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운전 보조장치의 경우 기능시험을 치를 때와 동일하게 실제 운전상황에서 도 이용하도록 운전면허에 조건 부과

3. 추진 과정 및 내용

기존 규제내용

• 지체장애 유형을 12개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취득 가능한 운전면허 범위를 제한하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구조·장치, 의수·의족 등 조건 부과

| | 신 체 상 태 | 신체상태에 따라 | 조건 부과 기준 | | |
|-------------|--|--|--|------|--|
| 부위 | 정 도 |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 자동차 등의 구조 | 보조수단 | |
| | 1. 엄지손가락 이외의 두 손가락 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 장애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 자동변속기 (제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 허에 한한다.) | | |
| 양 쪽 손 | 2.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 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 제1종 보통면허 · 제1종 보통면허 | · 자동변속기 | | |
| | 3.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고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 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 제1종 보통면허 · 제1종 보통면허 | · 자동변속기 | | |

| | 신 체 상 태 | 신체상태에 따라 | 조건 부과 | 과 기준 |
|-------|---|--|--------------------------------------|---|
| 부위 | 정 도 |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 자동차 등의 구조 | 보조수단 |
| 양 쪽 손 | 4.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 제2종 보통면허 | · 자동변속기 | |
| 양 | 5.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ㆍ제2종 보통면허 | 다리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변속기 | 의수(운전조작상 유효한 작업용 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양 쪽 팔 | 6.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 제2종 보통면허 |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된 자동차 | |
| 한쪽 | 7. 견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 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 자동변속기 | · 의수 |
| 팔 | 8.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 자동변속기 | · 의수 |

| | 신 체 상 태 | 신체상태에 따라 | 조건 부과 기준 | | |
|------------------|--------------------------------------|--|------------------------------------|---|--|
| 부위 | 정 도 |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 자동차 등의 구조 | 보조수단 | |
| 양 쪽 다 리 | 9.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 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 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 자동변속기 | · 의족 (운전조작상 유효 한 작업용 의족을 말한다. 이하 같 다) | |
| | 10.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 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 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 자동변속기 | · 의족 | |
| 한 쪽 다 리 | 11.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 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 자동변속기 | · 의족 | |
| | 12.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 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 자동변속기 | · 의족 | |

규제개혁 방안

- 모든 운전면허에 대한 취득제한 폐지: 1, 8, 11의 경우
 - 1. 엄지손가락 이외의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8.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11.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제2종소형면허(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이외의 운전면허 취득제한 폐지 : 2, 3, 7, 12의 경우
 - 2.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거 나 이와 동등한 기능 장애



3.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고 한손은 엄지손가 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7. 견관절부터 아랫부분 이 없거나 이와 동등 한 기능장애



12. 고관절부터 아랫부 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자동차 구조에 관한 운전면허 조건 부과
 - 지체장애인의 시험과정에서 일반적인 차량 구조와 다르게 왼쪽 엑셀러레이터, 오른쪽 방향지시기 등이 장착된 시험용차량을 이용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실제 운전상황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운전하도록 해당 운전면허에 조건 부과
 - ※ 운전면허증상 조건표기
 - · "우측 방향지시기" → 영문 "H"
 - · "왼쪽 엑셀러레이터" → 영문 "I"

추진 경과

- 2008, 3월 의료계·장애인 단체·교통안전 연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안
 - ※ 국립재활원,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도로교통공단(연구원),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송파구청 등 참여
- 3. 19 ~ 4. 28 개정안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5. 2 ~ 6. 10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 확정
- 6. 20 개정안 공포
 - ※ 지체장애인 시험용차량으로 차량 개조 후 2009. 1. 1부터 시행

4 기대효과

- 지체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로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기여
- 특히, 운전업종 취업에 필요한 제1종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로 지체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향후계획

- '09년부터 서울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 지체장애인 시험용차량 구비·시행하고,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지체장애인 시험용차량 지속 확충
- 장애인의 운전학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전전문학원에 교육차량 개조비용 지원
 - ※ '05년부터 12개 학원에 8,100만원 지원, '08년 2,500만원 지원 예정
- 장애인 전문교육시설 확충방안 보건복지가족부(국립재활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필요시 교 육강사(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관리단) 지원
 - ※ 현재 서울 2개소(국립재활원·송파구청) 외 전문교육시설 전무

제 2 장

국토이용 효율화

제5절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제6절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제7절 선진적 환경성 평가제도 구축 제8절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제9절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제10절 산지분야 규제개혁 추진



PRIME MINISTER'S OFFICE



제5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요 약

1. 추진배경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을 해소함과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조화 필요

2. 추진내용

●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내용

총면적: 68개 지역 465,269,307m²

- 해 제 : 38개 지역 212,904,249m² 여의도 면적의 72배

- 변 경: 20개 지역 241.207.374m² 여의도 면적의 82배

- 지 정:10개지역 11,157,684m²

●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범위 조정

- 민간인통제선(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
-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25km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였음

● 건축법상 신고대상(소규모 건축행위, 용도변경) 등은 군 협의 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상 신고대상에 불과한 소규모 건축행위 등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에서 협의대상 제외 범위를 구체화함
 - ·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축법」 제1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3. 종합적 성과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범위 축소 조정 및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확대되고 기존 민원의 30~40% 감소 예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1. 추진배경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조화 필요

2. 기본방향

-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행사 범위 확대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협의업무에 대한 위탁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건축행위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및 국민불편 해소 추진

3. 추진 과정 및 내용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현황

- 국방부는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군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 및 완화해 왔음
 - ' 05년 3월에 비행안전구역 2.016만㎡를 해제하였고
 - '05년 6월에 비행안전구역 4.142만m²를 해제하였으며
 - '06년 1월에 작전에 직접 지장이 없는 지역 등 2.155만㎡를 해제하였음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추진 경과

-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으로 산재되어 있던 법률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 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통합하여 제정하였음('07, 12, 21.)
 - 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음
 - 관할부대 조정내용 종합/검토 및 현장실사: '08. 4~7월
 -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심의 : '08. 7.2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 '08. 9. 22.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내용

조정 현황 종합

총면적: 68개 지역 465.269.307m²

- 해 제: 38개 지역 212,904,249m² 여의도 면적의 7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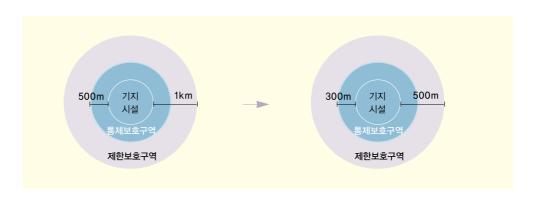
- 변 경: 20개 지역 241,207,374m² 여의도 면적의 82배

- 지 정: 10개 지역 11.157.684m²

- ※ 각종 규제 및 국민의 불편을 과감히 줄이기 위해 21,290만m²를 해제하고, 25,236만m²를 변경하였음
-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범위 조정
 - 민간인통제선(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고.



-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25km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 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세부 내역
 -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군사적으로 조정 가능한 58개 지역 4억5천4 백만㎡를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해제 및 완화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10개 지역 1천1백만㎡ 는 추가 지정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개 지역 2억1천2백만㎡
 - 보호구역 축소.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
 -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
 -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 19개 지역 2억4천만㎡
 - 제한보호구역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조정: 강원 고성군 1개 지역 73만㎡
 - ※ 특별보호구역: 군용전기통신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군용의 무선전신·무선전화·군사신호정보 의 수신 또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고정설비를 설치한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km 이내 설정하는 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 지정
- 경기 가평. 대전 유성. 전남 영암 등 10개 지역 1천1백만㎡
-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주둔지 울타리 내부. 탄약고 주변 군용지 및 직도사격장 섬 주변과 해군 3함대사령부 기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내용 관보에 고시(9, 22자)
 - 국토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에 개별 지번별 토지이용계획 수정 절차를 조치 중에 있으며, 토지 관련 대장 발급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내 용이 반영되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임

건축법상 신고대상(소규모 건축행위, 용도변경) 등은 군 협의 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상 신고대상에 불과하 소규모 건축행위 등에 대해 구부대 혐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논란 이 되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혐의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에서 협의대상 제외 범위를 구체화함
 -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축법」 제1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4. 종합적 성과

-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군의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 9월 22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음
- 이번 조치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확대되고 기존 민원의 30~4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5. 향후 발전계획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기준 합리화 추진
 - 협의업무의 신뢰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기준의 합리화. 표준화를 추진 중임(용역의뢰 - 한국국방연구원)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지자체 위탁범위 확대 추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군부대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고 있음
 - 국방부는 협의업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위탁하는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음
 - 위탁범위 확대 추진 경과
 - '08년 협의위탁 확대 시행(5월말 기준) : 6.959만m² 신규위탁(9개 부대)
 - 군사시설별 보호거리 적용대상/거리 관할부대 검토및 합참 종합: 7월~8월
 - 위탁범위 확대 최적화 방안 마련: 9월
 - 시행: '09. 3월
- 앞으로도 군은 작전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키. 며 각종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임

〈참고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내용 요약]

| 구 분 | 세부항목 | 구 | 구 법 | | 법 |
|----------------|---------------|--|------------------|---|------------------|
| 법률 | 법률통합 | 군 사 해 군 시 설 기지법 보호법 | | 군사기지 및 시 | 설 보호법 |
| 및 | | 군사시설보호구역 | 해군기지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 (보호구 | |
| 구역 통합 | 구역통합 | 기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 특별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 대공방어협조구역 | 비행안전구역 |
| 0.2 | | 비행금지구역 | * 7개 구역 | 비행금지구역 (항공법에 포함) | * 3개 구역 |
| 규제 | 통제보호 구 역 |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 급 15km이내(민통선) • 그 외 지역 : 군사시설 5 • 주택 기타구조물의 신축 | 500m이내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터 10km이내(민간인통 그 외 지역: 군사시설 * 방공기지: 500m유 주택의 신축만 금지 | 통제선) 300m이내 |
| 완화 | 제한보호 구 역 |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 - 이남 25km중 민통선 0 • 그 외 지역 : 군사시설 1 | H 기업 |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 25km중 민간인통제선 • 그 외 지역 : 군사시설 * 탄약고, 방공기지, 사건 | ! 이남지역 500m이내 |
| | 피해보상 | • 장애물 제거 손실 등에 규정(군용항공기지법, 군 | | • 토지매수청구권, 협의대 | 배수제도 신설 |
| 보호 대상 추가 | 헬기예비 작전기지 | • 규정 없음 | | • 법령에 예비기지 종류. - 헬기전용작전기지0 | |
| 및 규제 보완 | 불법건축물 | • 보호구역내 불법건축물 | 처리규정 모호 | •「행정대집행법」적용 7 | l능토록 반영 |
| 행정 | 보호구역 관리계획 |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관리계획 |
| 절차 | 이의신청 | • 규정 없음 | | • 법과 관련한 처분에 다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 | H하여 |
| 개선 | 보호구역 심의위원회 | •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부대 / 관리부대 보호구역 | | •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 | |

〈참고 2〉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완화 / 지정 현황] ('08. 9. 22현재)

■ 총괄 (단위 : 천 m²)

| 지 역 | 계 | 해 제 | 변 경 | 지 정 |
|-----|---------|---------|---------|--------|
| 계 | 465,269 | 212,904 | 241,207 | 11,158 |
| 서 울 | 5,480 | 4,338 | 1,142 | |
| 인 천 | 78,334 | 67,783 | 10,551 | |
| 부 산 | 9,048 | 9,048 | | |
| 대 구 | 198 | 198 | | |
| 대 전 | 9,749 | 6,296 | | 3,453 |
| 경 기 | 77,247 | 69,400 | 5,947 | 1,900 |
| 강 원 | 221,905 | 527 | 221,096 | 282 |
| 충 북 | 602 | 17 | | 585 |
| 충 남 | 3,388 | 505 | 2,471 | 412 |
| 전 북 | 2,163 | | | 2,163 |
| 전 남 | 1,451 | | | 1,451 |
| 경 남 | 55,704 | 54,792 | | 912 |

■ 세부현황

■ 보호구역 해제 : 212,904천m²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천m²) |
|-----|---|---------|
| 서 울 | · 강서구 개화동 일대 · 강동구 암사동 일대 · 서초구 우면동 일대 ·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 일대 · 서초구 염곡동, 내곡동 일대 · 용산구 용산동 일대 | 4,338 |
| 인 천 | · 서구 마전동, 오류동 일대 ·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내가면 황청리, 고천리 일대 ·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화도면 장화리 일대 ·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불은면 덕성리 일대 ·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강화읍 용정리 일대 ·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서도면 불음도리 일대 | 67,783 |
| 부 산 | ·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 강서구 동선동/성북동/천성동/대항동 일대 | 9,048 |
| 대 구 | · 수성구 만촌동, 고모동 일대 | 198 |
| 대 전 | · 유성구 추목동 일대 | 6,296 |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천m²) |
|-----|--|---------|
| 경 기 | · 김포시 운양동, 양촌면 양곡리 일대 · 김포시 감정동, 고촌면 신곡리 일대 · 광주시 오전리, 회덕리 일대 · 용인시 유방리, 역북동 일대 · 파주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일대 · 파주시 교하읍 교하지구/운정지구 일대 · 고양시 덕이동 덕이지구 일대 · 파주시 금촌읍 금촌지구 일대, 미군기지(Camp Howze) · 고양시 중산동 일산2지구, 식사동 식사지구, 일산구 풍동지구 일대 ·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일대 | 69,400 |
| 경기도 | · 가평군 이화/상색리 일대 ·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일대 · 포천시 내촌면 일대 ·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일대 ·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일대 ·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일대 · 가평군 상면 · 하면 일대 ·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무봉리, 고모리 일대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일대 ·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삼상리 일대 ·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일대 · 의정부시 호원동,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 · 과천시 과천동 일대 | |
| 강 원 | · 양양군 월리 일대 | 527 |
| 충 북 | · 청주시 개신동 일대 | 17 |
| 충 남 | · 공주시 반포동 일대 | 505 |
| 경 남 | · 창원시 서상동, 팔용동, 명곡동 일대 ·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군 일대 | 54,792 |

■ 보호구역 변경

• 통제 →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 : 240,473천m²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천m²) |
|-----|---|---------|
| 서 울 | · 종로구 평창동, 부암동, 사직동, 홍지동, 서대문구, 홍제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일대 | 1,142 |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천m²) |
|-----|--|---------|
| 인 천 | ·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철산리, 덕하리, 인화리, 송해면 당산리, 승뢰리, 하점면 창후리 일대 · 강화군 교동면 일대 ·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일대 | |
| 경기 | · 가평군 북면 이곡리 일대 · 광주시 오전리, 회덕리 일대 · 용인시 역북동 일대 · 연천군 왕징면 일대 ·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민북마을) ·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성동리, 용강리, 조강리 일대 ·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리, 마조리, 일시암리, 후평리 일대 | 5,947 |
| 강 원 | · 철원군 육단리, 화천군 다목리, 봉오리, 마현리 일대 · 화천군 마현리, 산양리, 신읍리, 풍산리 일대 강 원 · 고성군 간성읍 탑현리, 광신리, 장신리 일대 · 양구군 양구읍 일대 ·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일대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일대 | |
| 충 남 | · 태안군 근흥면 일대 | 2,471 |

• 제한 → 특별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기지)으로 조정: 734천m²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천m²) | |
|-----|---------------------|---------|--|
| 강 원 | · 고성군 토성면 용암리 일대734 | 734 | |

■ 보호구역 지정 : 11,158천m²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천m²) |
|-----|---|---------|
| 대 전 | · 유성구 일대 | 3,453 |
| 경 기 | · 가평군 승안리 일대 ·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여주군 대신면 옥촌리 일대 · 광주시 퇴촌면 무수리 일대 | 1,900 |
| 강 원 | ·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대 | 282 |
| 충 북 |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구계리 일대 | 585 |
| 충 남 | · 연기군 일대 | 412 |
| 전 북 |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일대 | 2,163 |
| 전 남 | ·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 1,451 |
| 경 남 | · 사천시 축동면 일대 | 912 |

*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 \cdot 군 \cdot 구청과 관할부대에 비치 및 열람 가능



제6절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요 약

1. 추진배경

● 농업 이외의 용도를 위한 농지의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등으로부터 농지소유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는 바, 사업시행자 등이 농지를 쉽게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농지규제의 개선을 추진

2. 추진내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성된 택지·산업단지 등 지역·지구·단지 등의 안에서는 시·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레저형 산업 등에 농지를 출자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참여시 농지보 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함
- 자연녹지 · 계획관리지역 및 혁신도시개발 예정 지구 안에서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모두 지자체에게 위임함으로써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의 면적을 확대(3천→1만㎡)하고, 농기계보관 시설을 농업진흥구역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발전설비를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내 일부 폐수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체지정 면제사유에 해당되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대체 지정이 어려워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동 제도를 폐지함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장의 추천제도를 폐지함

3. 종합적 성과

 농지규제 합리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지에 대한 개발수요를 국토계획법상 개발예정지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유도하여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1. 추진배경

- 최근 국제적인 식량위기의 고조로 해외농지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적정 농지보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국제곡물가 파동이 바이오 연료용 곡물의 수요증가 등 주로 중장기적 수요요인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 장기적 대비가 필요함
- 동시에 농업 이외의 용도를 위한 농지의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등으로부터 농지소유 등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사업시행자 등이 농지를 쉽게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농지규제의 개선을 요구함
- 따라서 「농지보전」과 「개발용지 공급 원활화」 라는 두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필요가 있음
 - 농업(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가면서 2·3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 규제완화가 관건임
- →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개발용지의 공급은 농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발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개발수요에도 적절히 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기본방향

모표

- 농지규제 완화는 「농지보전」과 「개발용지 공급 원활화」라는 두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선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지규제 합리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추진계획

- 기본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정 농지소요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상 용도구분에 따라 소요농지를 확보하고.
 - 농업진흥지역 농지(우량농지)는 농업생산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전하며.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도록 함
- 국가 전체적인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도록 함
 - 경자유전원칙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농지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 개발용지는 가급적 도시지역 농지 → 계획관리지역 농지 → 생산관리지역 농지 순서로 공급하 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타 행위제한 완화 등 행정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3. 추진 과정 및 내용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간소화

- 관계부처 혐의를 거친 택지 · 산업단지 내에서 시 ·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농지법 제31조제2항)
 -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과 혐의를 거친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도 록 함으로써 절차가 복잡함
 - ⇒ 놋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성된 택지 · 산업단지 등 지역 · 지구 · 단지 등의 안에서는 시 · 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택지·산업단지 등 지역·지구·단지 등의 안에서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택지·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 택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기간 단축.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
-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요기간 단축효과: (현행)약60일 → (개선)약30일
 - * (현행) 택지·산업단지지정(농식품부와 협의) → 농식품부장관 승인 → 진흥지역 해제(시·도지사) ⇒ (개선) 택지·산업단지지정(농식품부와 협의) → 진흥지역 해제(시·도지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확대

- 농촌지역에서 레저형 산업 등 개발시 농업인은 농지 매각 대금만 수취하고 개발이익은 모두 개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있음
 -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제도가 없어 농업인의 소득창출 등에 한계가 있음
 - ⇒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레저형 산업 등에 농지를 출자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참여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함
 - 다만,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허가)가 결정된 날 현재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 한함
-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등 레저형 산업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지전용 허가권한 위임 확대

-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농업진흥지역은 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만㎡ 미만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 농지전용시 시설 및 면적제한이 없어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 농지의 개발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절차가 복잡함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데
- 동 예정지구 지정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절차가 중복되고 있음
- ⇒ 자연녹지 ·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모두 시 · 도지사 에게 위임함으로써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함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지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하도록 함
- 자연녹지 ·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모두 지자체에 위임함 으로써 전용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개발 절차가 간소화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농지의 전용절차 간소화로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 농지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 농지전체 면적 178만ha 중 약 50만ha 위임 효과
 - → 전용허가기간 및 절차간소화: 30일 단축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은 그 부지 면적이 3천㎡ 미만인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함
 -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설치에 면적 제한이 있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의 규모화가 고라함
 - 또한,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 는 경우 설치가 불가하므로 법령상으로는 허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한되는 모순이 있음
 - ⇒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의 면적을 확대(3천→1만㎡)하고, 농기 계보관시설을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발전설비를 농업보호구역에 설 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농업진흥지역내에 일부 폐수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가 가능하도록 함

- ※ 폐수배출시설 등을 설치 가능하게 하더라도.
- 현행법상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므로(법 37조①)
- 농업진흥지역내외를 불문하고 1종 ∼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으로는 농지전용이 불가
- 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능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의 면적 확대 등을 통해 농업경영 효율화가 제고되고, 농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로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농기계보관시설을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태양광발전설비를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됨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획일적 적용 완화

-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지를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음(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지정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대체지정 농지확보가 어려움
 - ⇒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해당 시·군의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50%) 이상이거나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 등은 대체지정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체지정 면제사유에 해당되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대체지정이 어려워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동 제도를 폐지함
-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발이 용이하여 지역경제가 활성 화 될 것으로 기대됨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폐지

- 농지 전용자가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의 추천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인지 여부 확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지법 시행령 별표2 규정사항

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

- 연수·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직업훈련소, 생활권·자연권 수련시설
-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영리법인이 읍·면지역에 설립하는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
- 농촌에 설치하는 민간보육시설
-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복지후생시설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 복지공장

②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

- 특별재해지역 안에서 재해 입은 단독주택, 산림,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영농 주택
- 농지전용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국민은 농지전용을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 감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감면추천서를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지 알기 어렵고, 직접 추천을 받기 도 어려움
-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장의 추천제도를 폐지함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에 해당하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의 추천 없이 바로 감면이 가능하여 민원인의 감면추천서 제출관련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추진경과

- '08.3.26 농지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완료
- '08.4~5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8.6.5 농지법 시행령 개정 공포

4. 종합적 성과

성공요인

 지자체 등 대상 농지제도 개선 워크숍,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제안검토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홍보를 통해 '농지보전' 과 '개발' 이 조화될 수 있도록 농지제도 개선을 추진함

기대효과

• 농지에 대한 개발수요를 국토계획법상 개발예정지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유도하여 우량농지 보전에 보다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종합

- 정부가 추진중인 농지규제 완화방안은, 첫째, 한계농지 등의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둘째, 특정지역의 농지전용절차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간소화하며, 셋째,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가 공처리시설의 면적을 확대 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 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용 토지를 농지와 산지에서 공급해왔음
 - 즉, 70년대 이후 고속도로, 산업단지, 택지 등의 용도로 매년 2만5천ha 정도의 농지·산지를 공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면 어떤 농지를 보전하고 어떤 농지를 개발용으로 공급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경작여건이 나쁜 농지를 개발용으로 쓰도록 공급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량농지가 보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영농여건이 열악한 한계농지의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농지에 대한 개발수요를 동 지역으로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 흥지역 중심의 우량농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최근 농지법 시행령 개정('08.6.5)을 통해 농지전용하가 및 농업진흥지역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이는 이미 국토계획법상 개발예정지로 분류된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농지전용하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것이고, 미리 농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지정된 택지 · 산업단지 등에 한해 시 · 도지사가 별도 장관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우량농지 보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 이 외에도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설치규모를 3천m² 에서 1만㎡로 확대하고. 농업인의 편의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농기계 보관시설과 태양광발전 설비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5.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정부는 식량안보. 농지의 비가역성. 세대간 자원배분 등을 고려하여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농. 지는 적극 보전하고 개발용 토지는 경작여건이 열악한 농지를 공급하는 "보전"과 "개발"을 조화 시키는 방향으로 농지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해외농업자원 개발에도 힘쓸 계획임
- 농지법 개정
 -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자격 완화 및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
 - 저가 · 적기의 공공용지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에 일부지역 농지의 사전비축 허용
 -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 * 농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08, 11월 28일)



제7절 선진적 환경성 평가 제도 구축

요 약

1. 추진배경

● 환경성 평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성 평가제도의 객관성 ·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 제기

2. 추진내용

- 계획관리지역내 5천m²미만 공장설립 시 및 사업면적 1만m²미만인 행정계획의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제외 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조정
- 관계행정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협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협의의견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제도 보완
- 평가서 작성 전에 사업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평가항목 · 범위를 결정하는 스코핑제도를 의무화하고, 평가항목(23개→20개)을 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원
- 평가서 보완내용이 경미할 경우 사후보완 조건으로 협의 완료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개선
-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를 하는 등 평가 · 협의내용 사후관리 내실화
- 산업단지 환경성 평가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에 따라 산업단지 규모별(15만㎡ 기준)로 환경 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중 하나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성 평가 지원방안 수립

3. 종합적 성과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경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12개월 ⇒ 9개월), 평가서 작성비용 약 30% 절감(건당 1.9억원 ⇒ 1.4억원)
- 화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활용으로 평가서 작성 · 협의기간 단축, 정보활용, 평가서 보관비용 절감 등 연 169억원의 직접편익 발생
- 산업단지 인 · 허가 간소회를 위한 환경분야 지원방안 수립을 통해 환경성 평가기간 단축(12~15 개월 **⇒** 6개월 이내)

선진적 환경성 평가제도 구축

1. 추진배경

- 환경성 평가제도는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사전예방적 선진 환경정책이나 제도의 운영 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란 제기
 - 사업자는 평가서 작성의 간소화와 신속한 협의를 요구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은 철저한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를 요구
- 환경성 평가제도의 객관성 ·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 대두

2. 기본방향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적 환경성 평가제도 구축 "평가는 내실화"·"기간은 단축"·"비용은 절감"



제도 간 차별성 · 연계성 강화 를 통한 평가시스템 선진화

- · 평가제도 근거법률 통합
- · 평가대상의 합리적 구분을 통한 제도의 차별화
- · 제도 간 절차적 연계성 확보

기존 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 및 제도 운영 내실화

- ·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및 절차개선
- · 환경영향평가 작성방법 · 협의절차 및 사후관리 개선

산업단지 환경성평가 지원체 계 구축

- · 산업단지 환경성 평가 지원 방안 수립
- · 산업단지 환경성 평가지원 단 운영
- · 산업단지 환경성평가 업무 매뉴얼 제작 · 보급

3. 추진 과정 및 내용

기존 제도의 합리성 및 실효성 제고

사전화경성 검토 대상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

기존 규제내용

-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계획 및 보전용도지역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도시관리계획 등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의 과다, 협의절차의 지연, 협의시기의 부적정 등 제도운 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 대두

규제개혁 방안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의 합리적 조정

소규모 공장설립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조정

- 계획관리지역내 5천m²미만 공장설립 시. 사전환경성 검토 제외
-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사전환경성 검토 후. 개별공장은 검토 제외

소규모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조정

- 사업면적 1만m²미만인 행정계획의 경우 사전화경성 검토 면제
- 도시관리계획은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별로 검토대상 차등화
 - 주거·상업·공업지역내 3만㎡미만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6만㎡미만의 도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녹지지역 등 그 외의 용도지역은 1만㎡미만 제외)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청취 대상 규모 조정

■ 사업면적이 6만m²미만인 행정계획은 화경성검토협의회 절차 생략

도시관리계획 재협의 대상 조정

- 도시관리계획의 재혐의는 당초 혐의한 사업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면서 최소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면적 이상 확대되는 경우 실시
 - 확대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협의(의견수렴절차만 생략)
 - ※ 도시관리계획의 최소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면적
 - 주거 · 상업 · 공업지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 3만㎡
 - 주거 · 상업 · 공업지역내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 6만m²
 - 녹지지역 등 그 외의 용도지역은 1만m²미만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의 개선

협의의견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제도 보완

- 관계행정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협의 내용(조치계획 포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협 의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이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인 경우,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함

민간투자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기 조정

■ 민간투자사업의 검토 협의시기를 기존 "주무관청이 제안서 내용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 토 의뢰할 때"에서 "주무관청이 사업제안자에게 사업추진여부 통지 전"으로 조정

환경영향평가 작성ㆍ협의절차 및 사후관리 내실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원

기존 규제내용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저감대 책 등에 대한 화경영향평가서 작성

- 평가서 작성 · 협의기간(초안 작성~협의완료) : 약 12개월
- 평가서 작성비용(건당): 1.9억원

규제개혁 방안

평가항목 · 범위 사전 결정(평가법 개정. '08.3.28)

- 평가서 작성 전에 사업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평가항목 · 범위를 결정하는 스코핑제도 의무화
 -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던 문제점을 개선, 꼭 필요한 항목만 평가함으로써 평가서의 질 적 향상 및 평가기가 · 비용절감

평가항목(23개 → 20개) 조정(환경부령 개정, '07.1.5)

- 사회·경제환경분야 평가항목 중 환경과 연계가 적은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등 4개 항목을 폐지(인구, 주거, 산업 등 3항목 존치)하고, 자연환경자산 항목 신설
 - 교통. 문화재 등의 평가항목 폐지로 평가서 작성비용 10% 절감

조류 등의 조사 시기 및 횟수의 합리적 적용(고시 개정, '07.1.5)

- 4계절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류(鳥類), 대기 등의 조사 시기 및 횟수를 축소하고 평가서 작성시 국가환경DB (국가환경측정망 자료, 생태환경조사자료 등) 활용 가능
 - 현지조사 횟수 축소. 국가환경 DB자료 활용으로 평가서작성 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도모
 - ※ 현지조사의 시기·횟수 조정내용
 - · 조류 : 도시지역내 연3회(3-5, 6-9, 11-2) → 년2회(5-9, 11-3월) 조사
 - · 대기: 4계절조사에서 2계절이상 조사로 조정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 평가서 부실로 인한 협의기간 지연 등을 방지하고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환경평가사가 평가서 작성 또는 검증하는 방안 추진
 - ※ 환경영향평가사의 역할: 환경영향평가서 총괄 작성, 평가 절차·진행 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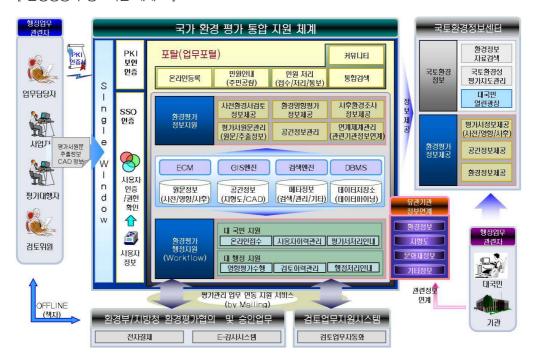
"사업분야별 평가서 작성 표준모델" 작성 · 제공 ('07.12.30)

- 평가서 작성을 표준화(객관화)하기 위하여 17개 사업유형별로 평가서 작성 표준모델을 제공하여 신속한 평가서작성 도모
 - 도시개발 등 17개 사업 분야별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공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운영 ('0 6.5.1 운영)

■ 평가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DB(평가서 4.017건, 환경조사 자료, 환경측정망 자료, 등 종합환경정보 제공)를 구축하여 평가서 작성 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환경성평가 정보지원 체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의 개선

기존 규제내용

■ (환경영향평가 절차) 평가서초안 작성 → 주민의견수렴 → 평가서 작성 → 평가협의 → 협의내용 관리

- 평가서 협의기간 ('05 ~ '07년 평균)
 - 본안 평가서 협의기간: 49일, 협의기간(60일) 준수율: 85%
 - 평가서 보완횟수 : 0.7회

규제개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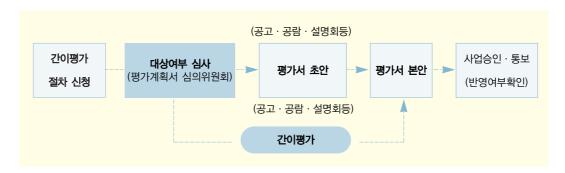
조건부 협의제도 도입(평가법 개정. '08.3.28)

- 평가서 보완내용이 경미할 경우 사후보완 조건으로 협의완료
 - 평가서 보완의 50%를 조건부로 협의할 경우 협의기간 15일 단축

간이평가절차 도입(평가법 개정. '08.3.28)

- 화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절차 간소화
 - (일 반) 스코핑 \rightarrow 초안 작성 \rightarrow 의견수렴 \rightarrow 평가서 작성 \cdot 협의 \rightarrow 사후관리
 - (간 이) 스코핑 → 간이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 → 사후관리
 - 본안평가서의 작성 · 협의 기간이 없어 평가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평균 12개월 → 9개 월)되고. 작성비용(20% 이상) 절감
 - ※ 간이평가대상사업 선정기준(시행령 개정 중)
 - 사업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규모의 2배 이하인 사업(평가협의 36% 해당)
 - 지역특성: 생태자연도 1등급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제외

[간이평가 절차도]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개선(평가법 개정. '08.3.28)

■ 당초 협의기관에 하던 이의신청을 환경부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심사 의 객관성 · 공정성 강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시 협의절차 간소화(평가법 개정. '08.3.28)

-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영향저감방안 작성 없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 환경오염저감시설 이용 후 폐기 또는 정비,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의 확대,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등
 - 환경영향저감방안 작성 및 협의절차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2-3개월) 및 비용절감 도모

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의무* 대상 합리화(평가법 개정. '08.3.28)

■ 혐의기관의 의견이 요구되지 않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는 분리 계약 의무를 제외하여 입찰절차 등에 따른 기간단축 및 사업자 편의 도모

☞ 분리계약의무 ☜

- 사업자는 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토록 규정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도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토록 함에 따라 변경계획서 작성에 장기간 소요

초안검토단계에서 합동 현장조사 강화(예규 개정. '08.3.17)

■ 평가서 초안접수 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KEI.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평가서 검토 시 지역 전문가 활용강화(예규 개정. '08.4.15)

■ 평가서 검토 후 보완. 변경협의 등은 화경기술개발센터 및 각 지방청의 "사전화경성검토 및 화경 영향평가위원회" 등 활용

평가서초안 공고 · 공람방법 다양화 ('08.12)

- 공고방법을 시·군 홈페이지, 소식지, 정보지원시스템 등으로 다양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민공 람 실시
 -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환경문제 및 이슈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내실 있는 평가서 작성 유도

평가 · 협의내용 사후관리 내실화

규제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협의기준초과부 담금" 부과
- * 협의기준: 사업시행으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회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기준을 부여
- ※ ' 07년도 협의기준초과부담금: 118백만원 부과

규제개혁 방안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평가법 개정, '08.3.28)

- 개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협의기준 초과부담 금제도를 폐지하여 자의적 평가 배제
 - ※ 하수처리장(BOD, mg/L): 배출허용기준 30, 협의기준 7 25
 - ※ 개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대폭 강화(황산화물: 300ppm → 30ppm) 및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등 제도시행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가 오히려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
- 협의기준을 협의내용으로 관리하며, 협의기준초과에 따른 이행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공사 허용 ('08.12)

■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공사는 협의절차 완료 전에 사전공사를 허용하여 사업기간 단축

사전공사금지 적용 제외대상(예시)

- ·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설치
- ㆍ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지장물 철거 등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 부실 판단기준 마련 ('0 8.12)

- 평가서 허위·부실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보완요구. 반 려 등 협의가 지연되는 문제개선
 - 평가서 부실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하여 협의지연(보완·반려) 방지. 평가서에 대한 신뢰성 제고

허위 · 부실작성 판단기준(예시)

- ㆍ (허위) 평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 복제.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등
- · (부실) 평가서에 제시한 문헌 등에 법적 보호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평가서에 누락하는 사례 등

협의내용관리책임자 및 협의내용관리 개선 ('0 8.12)

- 지정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물론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기관 등이 협의내용 관리를 대 행할 수 있도록 개선
 - ※ 위탁기관: 평가대행자, 환경컨설팅회사 등
-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기준을 현재 건설기술자에서 화경분야 기술자격으로 변경하여 협의 내용관리 전문성 강화

산업단지 환경성평가 지원체계 구축

규제내용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성 평가에 총 12~15개월 가량 소요

규제개선 추진방향

• 산업단지 환경성평가 시 필요한 조사 점검은 모두 이행 하면서도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6개월 내 인·허가 완료 지원

규제개혁 방안

산업단지 환경성 평가 지원방안 수립 ('08.3.13)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에 따라 산업단지 규모별(15만㎡ 기준)로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 성검토 중 하나만 실시
- 평가지원단 구성·운영, 자연환경조사주기 단축(10년→5년), 현장조사 의무화, 4계절 조사 폐지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 규제개선」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산업단지 환경성평가 지원단 구성 ('08.5.30)

- 환경부 본부 및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 평가 담당 공무원, KEI, 관계전문가 등으로 30인 내외의 평가지원단 구성
 - 산업단지 개발구상단계에서 입지적정성, 중요 평가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 수행 시 신속한 평가가 가능토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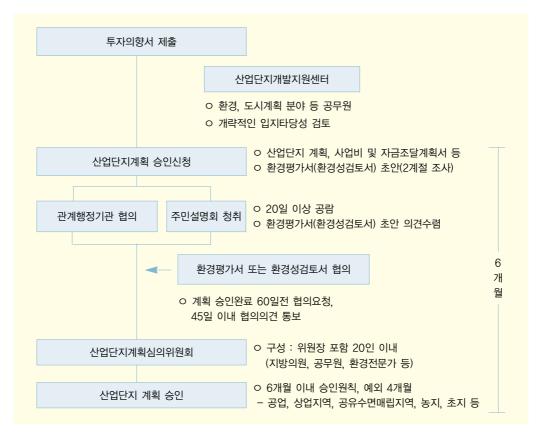
산업단지 환경성평가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08.5.30)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 주요내용, 환경성평가 지원단 구성·운영지침, 산업 단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등 포함

산업단지 환경성평가 성과관리제 도입 (108.3.20)

■ 지방환경청장,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환경평가 법정 혐의기가 준수율"을 성과관리제에 포함하여 관리

[산업단지 환경성 평가절차 개선도]



4. 종합적 성과

기존 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 및 제도 운영의 내실화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원 및 협의절차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 성 ·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요되는 시간 · 비용 절감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경감

- 도시관리계획 중 약 46%, 행정계획 중 약 20%, 공장설립 건수 중 약 10%, 전체 협의 중 약 8% 사전환경성검토 면제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 12개월 ⇒ 9개월
 - 본안 평가서 협의기간 : 49일(최근 3년 평균) ⇒ 42일 이하
 - 협의기간(60일) 준수율 : 85%(최근 3년 평균) ⇒ 95% 이상
 - 평가서 보완횟수: 0.7회(최근 3년 평균) ⇒ 0.5회 이하
- 평가서 작성비용 약 30% 절감 : 건당 1.9억원 ⇒ 1.4억원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을 통한 평가서 작성지원체계 구축
 - 평가서 작성 및 개발입지 선정지원 등을 위한 종합 환경정보 제공으로 평가기간 단축,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 평가서 (초안, 평가서, 사후조사결과 등) 공개, 협의진행 상황의 실시간 공개 등 정보제공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강화
 - 행정기관: 행정절차 · 평가기간 단축 및 정책신뢰도 개선
 - 사업자 : 입지분석 확대로 직·간접 비용절감. 개발계획 승인절차 개선
 - 일반국민: 객관적 자료. 정보제공을 통한 불신해소·신뢰구축
 - 유관기관 : 범정부적 정책의 정보공유 및 일관성 유지
 - 시스템 활용으로 평가서 작성·협의기간 단축, 정보활용, 평가서 보관비용 절감 등 연 169억원의 직접편익 발생
 - ※ 자료: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2002)' 및 '국가환경정보시스템 예비타당성결과 보고서(2004, KDI)' 준용
 - 평가서 작성 · 협의기간 단축으로 산업단지 등 조성기간 단축,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 등 연 1.2조원의 간접편익 발생
 - ※ 자료: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재검증보고서(2006, KDI) 준용
 - * 하루 평균 약 900여명 접속('08년 상반기 총 접속자 수 124,442명)
 - * 정보의 품질, 정확성 및 만족도: 84.1% ('08년 상반기조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내실화
 - 평가서 허위·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평가혐의지연(보완·반려) 사전예반 및 평가서의 신뢰성 향상
 - 혐의내용관리를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협의내용 관리
 - 혐의기주초과부담금 폐지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고도처리 등 신기술 도입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감소 및 자발적인 노력 증대, 지침운영 등 행정업무 감소
 - 연간 약 1억원 이상의 사업자 부담 완화
 -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관리 등의 행정업무 감소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환경분야 지원방안 수립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win-win 모델 구축

- 환경평가 관련 법령에 의한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산업단지 인 · 허가 기간을 대폭 감 축하여 산업용지 공급활성화에 기여
- 평가지원단 운영, 환경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평가 내실화 유도
 - 환경성 평가기간 단축: 12~15개월 ⇒ 6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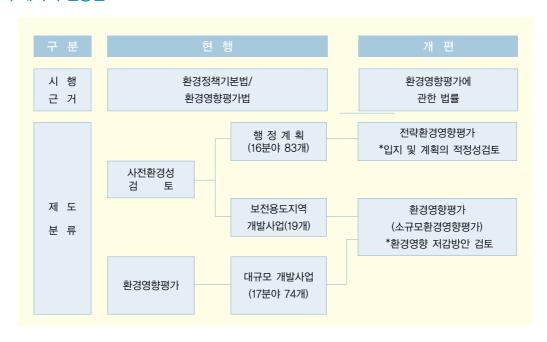
5 향후 발전계획

추진방향: 제도간 차별성 · 연계성 강화를 통한 평가시스템 선진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제정 ('09년 하반기)을 통해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된 평가제도의 체계성 · 제도간 연계성을 강화

- 통합법률 제정시 평가전문성 강화 및 절차간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환경평가 선진화를 위한 제도 적 기반 구축

구체적 추진방안



근거법률 통합 및 환경평가 대상의 합리적 구분 · 설정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제 도는 현행 제도 유지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화경영향평가 적용)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차별화 및 연계 운영체계 구축

- (차별화) 전략화경영향평가는 입지 및 계획 적정성을, 사업화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에 따른 화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환경평가 협의 체계를 명확히 정립
- (연계화) 사업의 개요. 현황조사자료.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연계체계 정립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합리적 개선

• 행정계획은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차별화

- 제1유형(정책영향평가): 전문가, 위원회 등을 활용한 의견 수렴
- 제2유형(계획영향평가):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관련단체 의견 수렴(현행 주민의견수렴절차와 동일)

- 행정계획 단계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구체화(공청회 개최 의무 화. 주민의견 재수렴 등)
 -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 의견수렴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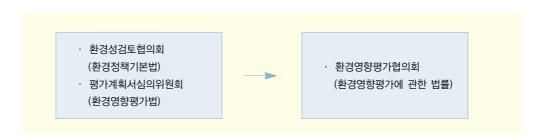
|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 수반여부 | 검 토 방 향 | |
|-----------------|----------------|--|--|
| 정책성격 | 해당없음 |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수렴 생략 | |
| 계획성격 | 수 반 |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수렴 구체화 ·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 절차 생략 | |
| | 미수반 |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현행 의견수렴 절차 유지 | |

개발계획(전략영향평가)과 실시계획(사업영향평가)의 평가체계 개선

● 개별법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만 실시

평가항목 결정 등을 위한 위원회 통합(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평가협의를 요청하는 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 절차의 중복 방지, 역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를 통합운영





제8절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요 약

1. 추진배경

● 사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사업단지 지정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2 ~ 4년 소요되어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 대두

2. 추진내용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서비스 등 일괄제공 :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신속하게 지원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관계기관 합동조직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 지원센터 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수립 : 특례법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1개의 계획(산업단지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간 단축
 - · 현행 2단계 승인절차: 개발계획 → 실시계획, 평균 2~4년 소요
 - · 개선 : 종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산단계획 승인 : 6월 소요
- 관계기관 협의 등 통합절차의 시행: 종전에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의견청취를 시행하던 것을 1번에 동시에 시행
- 위원회 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종전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심의 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개별적으로 거치던 것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심의
-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특례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절차 간소화

3. 종합적 성과

 현재 2 ~ 4년 정도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기업에게 생산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1. 추진배경

산업단지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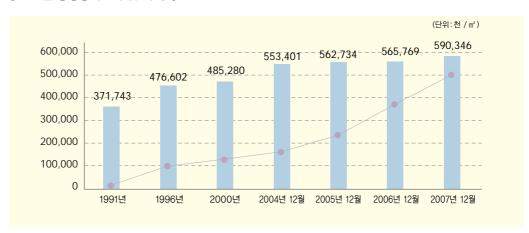
산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 공장부지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음. 산업단지는 대규모의 계획입지를 조성하여 여러 공장들이 함께 입주함에 따라 개별 공장입지에 비하여 난개발 방지 및 산업 집적화 효과가 높음. 현재 국내 제조업 생산의 56%가 산업단지에서 산출되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기업의 90%가 개별입지보다 산업단지 입주를 선호하고 있고, 해외 U-턴 기업들이 꼽는 최우선 요구사항도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임.

최근 조선·자동차산업 등의 수출호조, 중국진출 기업의 회귀수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산업용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단지는 수도권·경남·전남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고가 바닥나는 등 공급부족에 의한 수급불균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며, 공장등록수 역시'06년 이후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장 공장가동이 가능한 부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고볼 수 있음

[지역별 미분양률]

| | 2000년 | 2002년 | 2004년 | 2007년 |
|-----|-------|-------|-------|-------|
| 전 국 | 5.5 | 4.7 | 3.9 | 1.3 |
| 경 기 | 6.0 | 3.7 | 1.7 | 1.1 |
| 충 남 | 6.7 | 1.5 | 1.6 | 0.8 |
| 전 남 | 8.3 | 6.8 | 3.5 | 0.5 |
| 부 산 | 24.5 | 2.2 | 0.7 | 0.1 |

[연도별 공장등록면적 (누적치)]



산업단지 개발 절차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러나, 현재는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 지정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2\sim4$ 년 소요되어 입주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기에 공장이전을 하지 못하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공장유치에 성공하기 어려운 실정임. 일례로, 대구 성서 4차 산 업단지는 인·허가에 4년 11개월, 5차 산업단지는 8년 9개월이 소요된 바 있음. 또한, 투자자가 산업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43개 법령을 숙지하고 $2\sim4$ 년간 40여개 부서를 수차 례 반복 방문하는 일이 잦았으며, 협의기관의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반려와 보완 요청이 빈번하여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자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1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08.03.13.) 하였으며, 규제개선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특례법은 4.22일 윤두환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5.16일 국회를 통과, 6.5일 공포되어 9.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 기본방향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기 업의 생산여건을 향상하여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중에서 주민의견수렴. 심의절차 등 유사한 과정을 중복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계기관 협의 소요기간 등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장 치를 규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산업단지 인 ·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함으로 써 기업지원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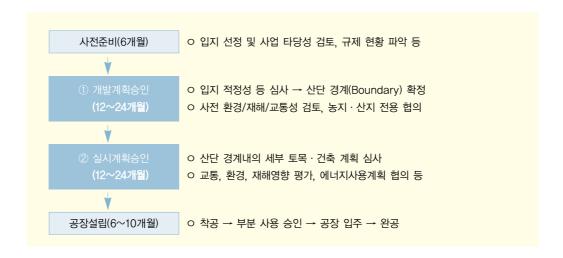
3 추진과정 및 내용

기존 규제의 내용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 2단계 인·허가 중복 진행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2단계로 거쳐야 했음. 따라서. 그 과정에서 유사과정이 중복되었고, 인ㆍ허가 기간도 장기간 (2~4년)이 소요되었음

[기존의 2단계 산업단지 계획승인 절차]



통합운영이 가능한 절차를 담당분야별로 별도 운영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농지·산지 전용협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종전에는 이같은 여러 절차를 모두 개별적으로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우선,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예정지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예정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먼저 거쳐야 했는데. 이 같은 과정에 최소 6개월 보통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어려워 개발 자체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규 모에 따라 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협의. 심의절차 등을 모두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으며. 이에 따라 협의기간이 장기화되었고 사업시행 자의 부담도 많았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신청하기 전에 먼저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치 면서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의견협의를 거치고.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이후 다시 산업단지 계획수 립 절차를 거쳐야 했음. 산업단지 계획수립절차는 개발계획 단계. 실시계획 단계로 구분되는데. 개발 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다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 치게 됨. 또한, 개발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 가가 실시되는데,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주민의 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가 별도로 이루어졌음. 주민의견수렴 절차나 관계기관 협의절 차를 거치면서 산업단지 계획. 환경평가 부문. 교통평가 부문. 도시계획 부문 등을 동시에 처리하면 소요기간이나 처리비용 등을 단축할 수 있으나. 기존에는 이를 모두 별도로 거침으로써 하나의 산업 다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3 ~ 4번의 주민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쳐야 했음.

[기존 산업단지 개발관련 상세절차]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

환경평가에 있어서도 개발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유사한 절차가 두 번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음.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도입취지 가 다르기는 하나, 실제로는 양자의 평가내용이 유사하게 이루어져 현실적으로는 사전환경성 검토 와 환경영향평가가 상호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인·허가 신청 후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현장조사(4계절 환경영향평가 등)가 이루어 지도록 절차가 진행되어 인ㆍ허가 신청 전에 보고서 용역을 일괄 발주하는 현장관행과 맞지 않는 측 면이 있었으며, 현장조사 또한 당해 지역의 환경적 민감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4계절 환경영향평 가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화경영향평가에 과도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음.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비교]

| | 사전 환경성 검토 | 환경영향평가 |
|------|---|--|
| 평가항목 | · 토지이용계획, 지형 · 지질, ·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 · 진동, · 악취, 수질, 폐기물, · 녹지확보, 환경처리시설 등 | · 토지이용계획, 지형 · 지질, ·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 · 진동, · 악취, 수질, 폐기물, · 기타항목(자연환경, 생활환경 범위) |
| 절차 | · 초안 작성 → 주민공람 · 공청회 → 본안 작성 → 환경청/KEI 협의 → 보완 및 조치계획 | · 초안평가서 작성 → 주민의견 수렴 → 본안평가서 작성 → 환경청/KEI협의 → 보완 및 조치계획 |

민원인이 관계기관을 오가며 40여건 이상의 협의를 수행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혐의시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사업시행자에 게 워스탑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30여개 부서들이 각각 의견을 내고 민원인이 이를 개별적으로 협의해가는 시스템으로서, 민원인의 직간접 처리비용도 컸음, 또한, 시ㆍ군 협의 후에 시ㆍ도 협의 를 거치는 등 순차적 진행방식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협의에 불필요한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 고. 1개 기관 협의에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음.

◇ 농지 · 산지 협의



* 시·도별 농지·산지과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까지 협의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 공유수면매립계획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연 2회만 개최 → 한 번 놓치면 6개월간 지연

◇ 군사보호구역 변경



* 법정 처리기한 30일을 넘기는 경우 다수, 군사시설 정보가 없어 협의 자체가 용이치 않습니다. ('06년 협의 12.967건 중 기간 미준수는 44.6%, 5.780건)

규제개혁 방안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서비스 등 일괄제공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ㆍ도에 관계기관 합동조직인 산업 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당해 기관에서 산업입지 · 도시 계획·건설·교통·환경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국토관리청,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한 인력으로 구성됨. 이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 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지원센터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것임, 지원센터에서는 투자의향서 의 접수. 입지타당성의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업무.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설정 등의 업무를 담당

하게 됨. 시 · 군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개수, 파견인력의 부족,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할 때 지 원센터 설치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에 설치된 지 원센터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수행함.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예시)]

- 환경적으로 예민한 지역,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 입지 제외 등 제안
- 상하수도. 도로 계획 등과 산단 신청계획을 비교 → 적절 후보입지 협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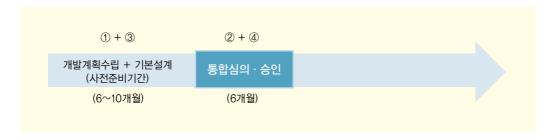
현행 산업입지법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만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계획수립이 시급 한 경우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었음. 이에 특례법에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1개의 계획(산업단지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 2단계 승인절차 : 개발계획 → 실시계획. 평균 2 ~ 4년 소요]



- \cdot ① 사업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제출 \rightarrow ② 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 · ③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등 제출 → ④ 실시계획 승인

[개선 : 종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산단계획 승인 : 6월 소요]



- · ①+③ 사전 준비기간
- · ②+④ 통합 심사 → 6개월 내 인 · 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 통합절차의 시행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신청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 · 교통 · 재해 · 인 구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같이 시행하도록 하였음. 아울리.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공고일 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제반 분야에 대한 주민의 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였음. 이는 종전에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하 여 각각 개별적으로 의견청취를 시행하던 것을 1번에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들도 당해 산업단지와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 ·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 도록 한 것임.

또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시에도 환경 · 교통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협의절차에 동시에 착수하도록 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하였음.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 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에 도시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환경영 향평가.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기업이 당해 서류를 지원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지원센터에서 제반 분야 에 대한 협의를 일괄하여 진행함.

이렇듯 기존에 여러 분야에서 각각 이루어지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토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 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에 기한제를 도입하여 협의절차에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 였으며, 협의기관의 보완요청 횟수도 1회에 한정함으로써 협의기관의 과도한 보완요구를 억제하고 보완요청으로 인한 지연사례를 예방하도록 하였음.

관계기관간 이견조정 절차

과거에는 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 사소한 이견이라도 관계기관간 의견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로 인해 장기간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음. 따라서, 관계기관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이름 조 정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두가지 이견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계속 지연 될 수 있는 현재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음.

관계기관 협의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조정토록 하였음.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또는 총리실에서 직접 이겨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겨조정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겨조정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실에서 최종적인 조정역할을 담당함. 이는 지정권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단 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사항에 대하여 총리실에 조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견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임.

위원회 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관계기관 협의 및 이견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 회는 중앙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며,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이외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등 산업단지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 의해 구성된 6개 개별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교통 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봄.

이는 종전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앞서 열거된 7개 분야의 위원회 심의를 각각 개별적으

로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인허가 기간도 장기간 소요된 점을 개선하기 위 한 것으로서, 각 개별 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들을 포함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써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내용에 관한 심의도 빼놓지 않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음.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는 기존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의 승인 고 시로 가주됨

또한, 지정권자 및 협의기관의 과도한 보완요구, 업무의 늦장처리 등으로 인하여 인·허가가 불필요 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계획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한준수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였음.

[현행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절차]



[개선 :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통합절차]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현재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사전에 변경해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통상 1~2년 정도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례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의제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당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의 총 면적의 30%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음.

아울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됨에 따라 각 절차단계별로 시행되던 환경평가절차를 15만㎡이상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음. 현재는 15만㎡ 미만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만 시행하나, 15만㎡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지역의 환경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저한 환경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환경적으로 덜 민감한 지역은 그에 적합한 수준의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절차를 합리화하였음.

그간의 추진경과

산업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부를 비롯한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기 관 합동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1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08.03.13.)하였으며, 이러한 규제개선방안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특례법을 제정·시행키로 하였음.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윤두환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발표 이후 약 2달만인 5.1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08.9.6.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처럼 최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선방안 마련초기부터 학계, 업계, 관계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차례 토의를 거치면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분야별로 가능한 대안을 토의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음. 개선방안 마련 후 특례법이 제정되기 까지 전국의 산업단지 담당 공무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시행하고, 수차 설명회를 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애로를 경청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설득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였음.

4. 종합적 성과

주요 성과

인허가 소요기간의 대폭 단축

앞서 설명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수립. 주민의견청취 · 관계기관 협의절차의 통합. 7개 개별 위원회의 통합심의 등을 통해 현재 2~4년 정도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로 특례법에서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그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인 · 허가 기간 단축으로 경제성 향상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면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임, 무엇보다 기업 에게 생산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제가 회복되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실제로, 성서 4차 단지의 경우 공장 가동을 3년 정도 앞당겼더라면 약 7.0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사전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또한, 개발 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부담을 대폭 완 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인ㆍ허가 기간을 2년 앞당겼더라면, 총사업비 4.890억원 중 약 10%(489억원) 감축이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됨.

다른 개발사업에 모범사례로 전파

관광단지, 물류단지, 택지개발, 신항만 개발, 항만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7개 개발사업에 모범사례로 전파되어 인허가 절차 개선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되었음. 산업단지와 유사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포함하여 절차를 개선하였고. 그 외 택지개발사 업 등의 개발사업은 개별법률을 개정하여 해당 절치를 개선하였음.

주요 성공요인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인ㆍ허가 절차를 짧은 시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소요시간을 '2~4년' 에서 '6개월' 로 대폭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간의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재구성하였기 때문임, 물류단지,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사업이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의 2단계 승인절차로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의 경우 승인절차를 단계적 으로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를 새로운 과점에서 접근하여 통합적인 인·허가 절차를 혁신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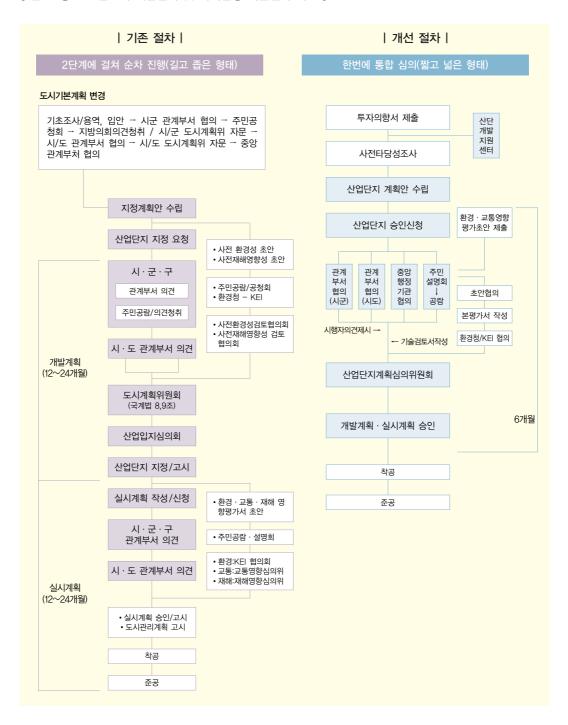
또한. 현장에서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직접 경청하여 개선안에 반영하였음. 전경련, 상공회의소. 단지계획 설계사 등 민간 개발사업자와 TF팀을 구성하여 약 5차례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아울러, 의사결정권자의 높은 관심으로 규제개선방안의 수준을 높이고, 성과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었음.

5 향후 추진계획

특례법 시행 이후, 이화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에 신규 발표한 국가산업단지도 특례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협의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지정할 예정임.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이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시행하겠음.

[참고: 종전 산업단지 개발절차 및 특례법상 개발절차 비교]



[참고 : 관련 언론보도]

울산시, 현대重 공장부지 초고속 승인

50여일만. . 産團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적용 첫 사례

(울산 = 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가 현대중공업의 공장부지로 활용할 북구 중산동 이화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초고속 승인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적용 첫 사례 로 꼽히고 있다.

울산시는 29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9만6천602㎡ 규모의 현대중공업 이화일 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공단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려면 지금까지는 통상 2년정도 걸렸지만 이화일반산업단지는 지난 9월6일부터 시행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적용해 50여일만에 승인했다.

시는 이를 위해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실과 등 모두 30여개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시켰고 행정부시장 등 고위간부들이 해당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례법에는 협의요청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회신을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45일, 그밖은 10일 이내에 하고 보완도 1회에 한해야 하며,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이곳에 내년부터 2011년까지 3천400억원을 투자해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동구 전하동 사내에 있는 건설장비사업부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 공장이 준공되면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사업부는 부지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고 고용인원은 2 천700여명으로 증가하며, 굴착기와 지게차 등을 연간 5만7천600여대를 생산해 4조2천억원의 매출 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9절 문화재 조사 제도 개선

요 약

1. 추진배경

• 산업단지, 택지 등 개발행위 증가로 인해 문화재 발굴 수요는 '03년 이후 연평균 20.3% 수준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기관·인력의 공급 애로에 따라 발굴조사 대기물량이 지속 증가하고, 발굴조사기관의 활동 제한 등 기존 조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

2. 추진내용

- 문화재 조사능력 확충
 - 5개 시도허가 법인이 전국법인으로 전환 완료하여 활동지역 제한이 폐지되었으며(10.27), 2개 시도 허가 법인이 전국법인화 추진 중
 - 지자체설립 조사기관(8개)의 당해 지자체 발주공사 조사 참여제한 완화
 - 발굴전문법인 설립요건(11명 → 9명) 및 지표·발굴 조사 인력에 대한 자격·경력 요건 완화

● 행정처리 절차 개선

- 문화재 조사관련 기간의 축소 또는 폐지
 - · 지표조사 처리기간 단축(64 → 30일)
 - · 발굴조사 허가기간 단축(29일 → 10일)
 - · 발굴결과 처리기간 폐지(47 → 0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전문가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입회조사 방식 확대 및 자격완화(대학교수, 연구소 등)
-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개선(월 1회 → 수시 개최 등)
- 발굴조사비용에 대한 표준계산식 적용 등 문화재조사관련 규정의 투명 · 객관화
-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결과로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토지 매입추진

3. 종합적 성과

● 민원수요에 비해 처리기관의 부족과 행정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요건을 완화·확충하였으며, 문화재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개발사업의 조기착수 기반 을 마련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르는 국민불편을 해소함

문화재 조사 제도 개선

1. 추진배경

- 그 동안 건설업계 등에서 문화재 조사 · 발굴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산업단지, 택지 등 개발행위 증가로 인해 문화재 발굴 수요는 '03년 이후 연평균 20.3% 수준 증가하고 있으나
 -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의 증가율은 연평균 5% 미만으로, 조사기관·인력의 공급 애로에 따라 발굴조사 대기물량이 지속 증가 (07년 말 대기물량 누적치 : 24km)
 - 발굴조사기관의 활동 제한 등 기존 조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 운용
 - 전체 72개 발굴기관중 시·도 허가법인 20개는 타 시·도 발굴 제한
 - 시·도 설립 조사기관은 당해 시·도 발주공사에 참여 제한
 - 조사 협의·허가시 시군구 경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처리기간 과다로 문화재 조사기간의 장기화 가중
 - 지표조사·발굴조사 허가 때마다 시군구 경유기간 14일 설정
 - 발굴기간 연장 때에도 동일 절차를 반복하도록 규정
 -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가 관례상 월 1회만 개최됨으로써 장기간 심의 대기현상 초래
 - 법령. 규정의 불투명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추가 부담 발생
 -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인력 · 기간 등에 대한 표준화된 산정기준이 없어 조사기관의 자의적인 조사비용 부풀리기 의혹
 - 발굴지역 범위. 보존판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부재
 - 발굴조사 필요성이 낮은 유적조사 등으로 인한 발굴 물량 증대 및 비용 부담 초래

- 구체적 내용을 한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위임 규정
 - 재량적 규정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상 불확실성 증대

2. 기본방향

모표

- 문화재 발굴대기수요 2009년까지 완전 해소
- 조사 및 발굴 민원처리기간의 대폭 단축(140일→40일)

추진 전략

- 문화재 조사수요의 감축 및 조사인력 공급 확충
 -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조기 구축으로 문화재 조사수요 감축
 - 문화재 조사업무에 대한 신규진입, 활동규제 완화를 통해 조사능력 확충
- 문화재조사 행정절차의 간소화
 - 불합리한 행정절차 및 처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 입회방식 확대를 통한 현장중심의 업무처리 강화
 -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의 개선
- 문화재조사 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조사인력 ·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계산식 적용
 - 발굴조사 운영과 관련된 합리적인 기준 마련
 - 포괄적 · 재량적 규정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 정비

3. 추진 과정 및 내용

기존 규제의 내용

- '03년 이후 개발행위 증가 및 조사인력 부족으로 문화재 조사 수요의 60% 정도만 조사가 이루어 지는 등 수급 불균형
- 문화재 지표(발굴)조사의 인·허가 신청 및 인·허가시 시군구 경유 등 과도한 행정처리기간이 소요됨
- 지표조사 실시시기가 "사업계획 수립시"로 규정되는 등 불명확한 문화재조사 관련 규정

개선방안

-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확충
- 시 · 도 허가 20개 법인을 문화재청장이 허가하는 전국 법인으로 일괄 전환하여 활동지역 제한 폐지 (전국기관: 52개 → 72개)
- 지자체 설립 조사기관(8개)의 당해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 참여제한을 완화
- 발굴전문법인의 설립 인력요건을 완화(현행 11명이상 → 9명이상)하여 발굴기관의 설립유도
- 조사인력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사인력 확충

● 행정처리 절차의 개선

- 시군구 경유절차 생략 등 문화재 조사·처리기간 단축(140일 → 40일)
- · 지표조사 실시 및 처리기간 단축(64일→30일), 발굴조사 허가기간 단축(29일→10일), 발굴결과 처리기간(유적이 없는 경우) 폐지(47일→ 즉시)

문화재 조사절차

- · 지표조사 : 사업시행자 의뢰에 따라 지표조사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면 문화재청과 협의에 따라 처리
- · 발굴조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시행자 신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허가
- · 발굴결과: 문화재청장이 사업시행자의 발굴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결과 처리 (원형보존 등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 조사절차 흐름도]



- 지표조사결과 문화재 매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전문가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을 점차 확대('07년, 12% → '08년, 24%)
 - · 입회관 자격도 기존의 발굴기관 전문인력에서 대학교수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고고학 전공자 등으로 확대(300명→800명)
- 인력풀 확대 등을 통해 문화재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문화재조사 · 심의 대기시간을 최대한 축소

● 문화재조사관련 규정의 투명 · 객관화

- 발굴조사비용에 대한 표준계산식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현재의 사후 비용정산 방식을 확정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발굴정지, 허가취소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 방지

추진경과 및 추진내용

● 문화재 조사능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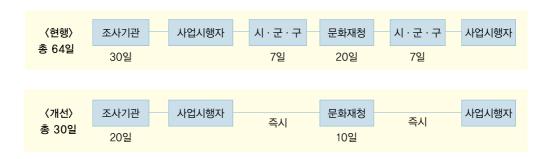
- 시도허가 법인(20개) 전국법인화를 위한 지자체 협조공문 조치(5.1)
- · 현재 5개 시도허가 법인이 전국법인으로 전환 완료(10,27), 현재 시도허가 2개 법인이 전국법인화 추진 중
- 지자체설립 조사기관(8개)의 당해 지자체 발주공사 조사 참여제한 완화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7.1)
- 발굴전문법인 설립요건(11명 → 9명) 및 지표·발굴 조사 인력에 대한 자격·경력 요건 완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개정·시행 9 29)

● 행정처리 절차 개선

- 문화재 조사관련 기간의 축소 또는 폐지
 -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6,10) 및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시행(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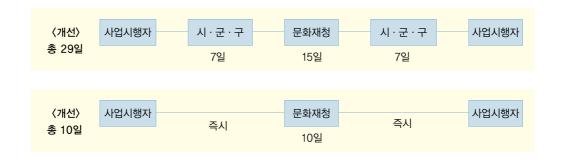
① 지표조사 처리기간 단축(64→30일)

■ 시군구 경유 폐지(14일→0일)와 조사 · 검토 기간 단축(50일→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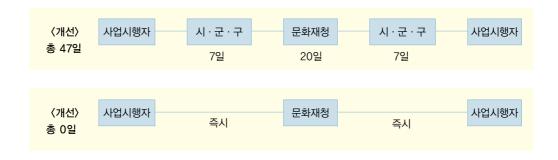
② 발굴조사 허가기간 단축(29일→10일)

시군구 경유 폐지(14일→0일) 및 허가검토기간 단축(15일→10일)



③ 발굴결과 처리기간 폐지(47→0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시군구 경유 폐지(14일→0일) 및 현장조사 완료조치로 공사시행(33일→0일)



- 전문가 입회방식 확대 및 자격완화(대학교수, 연구소 등)
 - · 입회관 자격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6.10.) 및 조사 대상(800여명) 선별작업을 통한 인력풀 구성·공고(5.28)
-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개선(월 1회 → 수시 개최 등)
 - · 문화재위원회규정(대통령령) 개정 · 시행(9.29)
- 문화재조사관련 규정의 투명 · 객관화
 - 발굴조사비용에 대한 표준계산식 적용
 -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개정관련 기재부 협의(5.14~22) 및 관보게재(5.29)· 시행(6.5)
- 보존조치된 토지매입 정부지원
 -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결과로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매입추진(매장문화재보호법 제정안에 매입근거 반영)

의견 수렴 등 협의과정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개정 완료
- 부처협의(4.29~5.23), 개정완료(5.30), 관보 고시 및 시행(6.5)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완료
- 계획수립(5.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5.15~5.23), 관보 고시 및 시행(6.10)

추진상 애로 및 문제점

- 개발과 보존간 이해 대립으로 규제개선의 사회적 합의 어려움
 - 개발측면의 경우 '문화재조사' 를 불합리한 규제의 사례로 제시
 - 보존측면에서 개발의 반대사유로 문화재조사를 항변
 - 문화재와 국민의 재산권간 조화로운 보호를 위해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

- 조사기관 수급불균형에 따른 문화재조사환경의 문제를 문화재조사 제도 자체의 문제로 환원 하는 경향
 - 조사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규제개선의 효과 미미
- 개발위주의 정책기조 하에서 문화재조사의 입지 축소
 - 대규모 국토개발의 증가에 따라 조사기관 수급불균형이 심화. 문화재조사를 규제로 인식 하는 경향 증대

문제 해결과정 및 현 추진상황

● 문화재관련 규제완화가 민원인의 불편·부담을 완화해 줄 수는 있지만 문화재 보존관리차원에 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제기 등 규제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갈등의 소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정비과정에서 관련단체학회 등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타당한 문화재 제도 개선이 되도록 함

4. 종합적 성과

제도개선 전 · 후의 변화와 성공요인

「제도개선 전·후]

| 추진내용 | 관련규정 | 개선 전 | 개선 후 | |
|--------------------|-------------------------------|--|--|--|
| 문화재 |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조공문 발송(5.1) | 전국법인 설립의 출연 제한(3억원) | ○ 전국법인 설립의 출연한도 폐지(5.1) ○ 5개 지역법인이 전국 법인으로 전환 완료(10.27현재) | |
| 조사기관 활동범위 확대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7.1개정) | 지자체설립 조사기관의 당해 지자체 발주공사 발굴조사 참여 제한 | O폐지(7.1) - 지자체설립 조사기관의 당해 지자체 발주공사 발굴조사 참여 허용여부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 검토 | |

| 추진내용 | 관련규정 | 개선 전 | 개선 후 |
|--------------------------------------|---|---|---|
| 문화재 조사기관 설립요건 (시설·인력) 완화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1 및 별표15 (9.29 시행) | O발굴조사기관 설립요건 - 법인 11명, 비법인 6명 이상 O지표조사기관 설립요건 4명 이상 O학력·경력요건 과도 | ○발굴조사기관 설립요건 완화(9.29) - 법인 설립요건 완화(11명 → 9명) - 비법인 설립요건 6명이상은 현행 유지 ○지표조사기관 설립요건 완화(9.29) - 조사원 2명이상 → 조사원 1명, 조사보조원 1명 이상 - 설립요건 4명이상은 현행 유지 ○문화재 조사원 등 학력・경력요건 완화(9.29) -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의 경력요건 완화 - 책임조사원 이하 조사요원 등의 매장문화재 전공 및 문화재관련학과 범위를 명시 |
| 발굴조사 인력의 조사 기준 마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신설(9,29 시행) | 발굴조사인력의 중복조사 불허 (중복조사 허용 근거 및 기준 미비) | 발굴조사 위탁자의 승낙과 기존 발굴조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중복조사 허용 |
| 지표 및 발굴조사비용 표준계산식 적용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6.5 개정) | 품셈 미비 | 지표 및 발굴품셈 적용한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반영 |
| 조사관련 |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6.10개정) | 지표조사 실시(30일) 및 처리기간(20일) | O지표조사 실시기간 10일 단축(30일 → 20일) O지표조사 처리기간 10일 단축(20일 → 10일) |
| 기간 축소 · 폐지 |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7.1개정) | 발굴허가 처리(15일) 및 발굴결과 처리기간(47일) | ○발굴허가 처리기간 5일 단축(15일 → 10일) ○발굴결과 처리기간(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7일 단축(47일 → 즉시) |
| 전문가 입회방식 확대 등 |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6.10 개정) | ○전문가 입회방식(12%) ○입회관 자격 - 기존의 발굴기관 전문인력 (300명) | ○전문가 입회방식 확대 계속 ○입회관 자격완화 - 대학교수 및 연구소 고고학 전공자 등으로 확대(800여명) |

[성공요인]

● 문화재조사로 사회적 · 경제적 규제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서 '개발과 보호' 가 대립각이 아닌 상 호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한 게 주요 성공요 인이 되었으며, 적기에 시행한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으로 제도개선의 효과를 한층 높이는 결과 를 가져옴

제도개선 효과

- 무화재조사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업무 추진 으로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호의 조화로운 수행을 도모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르는 국민불편을 해소함
- 민원수요에 비해 처리기관의 부족과 행정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 등 민원부담을 해소 하기 위해 인력 요건을 완화 · 확충하였으며, 문화재 인 · 허가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개발 사업의 조기착수 기반 마련 등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함
-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처리지침 정비로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해소로 문화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

5 향후 추진계획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처리시 시군구 경유절차 폐지(각각 14일)
- 매장문화재 관련 재량행위 규정을 구체화 하는 법규 체제 정비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근거 마련
-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 조기 구축
- 문화재분포지도 DB구축('08, 12월)
- 문화재 예측시스템 기본모델 개발('09, 12월)



제10절 산지 분야 규제개혁 추진

요 약

1. 추진배경

● 사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용지 및 택지 등 개발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산지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산지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산지관리제도의 체계적인 유영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 필요

2. 추진내용

- 개발 가능한 산지 공급능력 확대
 - 매 10년마다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를 실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보전산지 10만ha를 준보전 산지로 조정
 - 산지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 준보전 산지의 규모화 추진
 - 개발사업에 편입 가능한 요존 국유림 편입비율 · 면적 확대 등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 보전산지 편입비율 완화: (현행) 50 ~ 75% → (개선) 시·군·구별 보전산지 면적 비율
- 해발고 300미만의 산지의 경우 표고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요건 보완
-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시설하용면적을 1ha → 3ha로 개선하는 등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사업도 산지복구비예치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산지복구비 등 예치 면제대상 범위 확대
- 사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용 행위가 많은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사지전용허가권을 전부 지자체에 위임
-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용토록 제도 개선
- 사지개발시 적용되는 연접개발의 거리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등 현지여건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종합적 성과

 여접개발 제한 완화 등으로 산지에서 공장 증ㆍ개축이 가능해져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아울러 산지 분야 대표적인 민원 해소. 산지전용허가권한의 지자체 이양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신속한 의사 결정 등 으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

산지분야 규제개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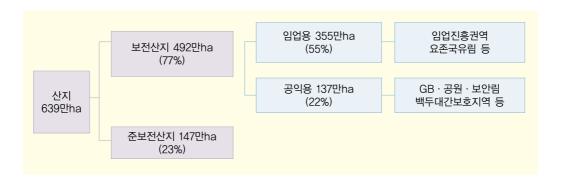
1. 추진배경

- 최근 도시용지 부족 등으로 산지개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산지이용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많이 제기됨
 - 산지의 77%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규제가 많고,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엄격하여 개발용지 확보 가 곤란
 - 산지관련 규제 내용과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신속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점 등 도 문제점으로 지적
- 산지관리는 지형 및 산림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산림지리정보 구축 완료로 새로운 산 지관리체계 확립 기반이 구축됨
 - 산지 구분 및 각종 산림정보의 도면 전산화. DB 구축 등
- 지자체 및 전경련 등 다양한 수요자의 산림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와 더불어 전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지분야 제도개선을 추진
-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산이 많은 낙후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산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용지 및 택지 등 개발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산지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산지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 산지관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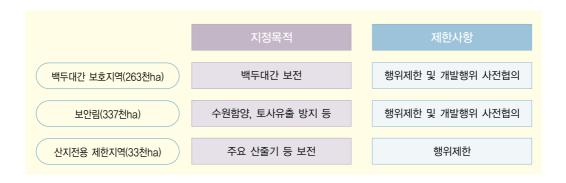
2. 산지관리 제도 현황

산지관리제도 개요

- 전국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산지관리법 제4조)
 - (**임업용산지**)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생산 및 재해방지·생태계보전·경관보전·보건휴양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허용행위를 제한하고, 산지를 개발할 때에는 경사도, 입목축적 등의 허가 기준을 적용
- 국토 보전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산지개발 절차]

- · 산지구분별 행위제한 적용여부
- ·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여부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 · 복구비예치 통보 및 납부
- · 복구계획서 제출

·목적사업을 위한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 허가기준 및 복구계획 준수

· 복구설계서를 인·허가 기관에 사전 승인(사방공법 적용)

- · 복구완료지 준공검사 → 복구비 반환 ※ 복구사업 미완료지 → 행정대집행에 의한 복구
- · 복구준공지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준공일로부터 5년간)

[산지전용 허가기관]

| 구 분 | 산림청장 | 시 ·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
|-------|----------|-------------------|--------------------------|
| 보전산지 | 50만㎡ 이상 | 3만∼50만m² | 3만m² 미만 |
| 전체 산지 | 200만㎡ 이상 | 50만m²~200만m² | 50만m² 미만 |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 산지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가 전체 산지의 77%를 차지하여 규제지역이 많은 편임
 - 임업용 산지가 55%이고, 공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보안림 등 법령상 보호지역인 공익용 산지는 22%에 달함
-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이외에도 요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등 개별 법령상 의 행위제한 등 규제도 동시에 적용
- 동일 산지에 대하여 여러 개의 행위제한이 중복하여 적용됨
- 산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민원인들이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 행위제한, 진입로 제한, 연접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산지는 지역별로 분포 정도가 다르고, 지형 특성도 다양하여 획일적인 산지전용허가기준 적용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보전산지 편입 비율. 입목축적. 표고 등 지역의 여건 및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는 기준 적용 필요
- 산지는 국토보전 기능과 함께 토지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 양 기능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밤생
 - 잘 가꾸어 놓은 산림은 규제가 많아 개발수요가 많은 도시주변 지역의 경우 숲 가꾸기 등 산림 관리를 기피

3 산지 규제완화 기본방향

추진 목표

- 국토의 64%(639만 ha)가 산림으로 산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 · 개발가능한 산지의 토지 공급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 · 산지이용 요건 및 허가절차 등을 대폭 완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기본 방향

- 산지의 개발가능지 공급 능력을 확대
 - · '08년 중에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통해 개발 여건이 좋은 보전산지 10만ha를 준보전산지로 구분 조정
 - · 준보전산지 주변의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를 폐지하여 준보전산지의 활용도 제고
-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기준을 보완하여 무분별한 산지 난개발을 방지
 - · 산지전용 허가기준은 지역 여건 및 산지 특성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허가권한 위임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
 - · 산지전용허가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 · 보전산지 해제 절차 단축 등

4. 추진과정 및 내용

규제완화 추진 과정

규제완화과제의 적극적 발굴 추진

국민·NGO 등 피규제자, 지방산림청별 "규제개혁단", "현장특임관", 국유림관리소 등 일선 민원접점기관, 지자체 등 폭넓은 발굴주체 활용

- 새정부 출범에 맞춰 산지분야 규제개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 ('08. 1. 21). "산지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08. 3)
 - 산지, 국유림관리, 보안림, 백두대간, 임업활동 등 우리청 규제분야를 총망라하여 완화방안 검토
 - 보전산지 10만ha 해제. 지역 산림율에 따라 탄력적인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 처리절차의 간소화 등 과제추진
- 각 지방산림청(5개) 별로 "규제개혁단" 구성('08. 4)하여 산림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추진 (월1회 개최)

■ 북부지방산림청(42명): 토지, 임산물 등 8개분야에 서울그린트러스트, 한국토지공사, 강원산지보전협회 등 참여

■ 동부지방산림청(12명): 강원 발전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강릉 생명의 숲, 관동대학교 등 참여

■ 남부지방산림청(24명): 산지관리, 산림경영, 산림토목 분야별로 영림단, 기술사, 지자체, 시민단체 등 참여

■ **중부지방산림청(12명)** : 공주대, 대전상공회의소, 임업후계자, 충북 생명의 숲 등 참여

■ 서부지방산림청(10명): 각종 사업 현장 토론회, 지도점검 등에 해당 시·군 관계자 참여

● 규제과제 발굴 및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정책 아이디어 공모』실시(3.20~4.10)

- 홈페이지(www.forest.go.kr), "숲에 On", 이메일 등을 통해 474건 접수, 규제건의 24건 검토(수용 12건, 중장기검토 12건)
 - 산림규제개혁협의회(6.25)를 거쳐 규제개선과제로 선정
 - 임야 진입도로 개선, 국유림 대부, 산지복구비 예치 간소화 등



- 지역주민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현장특임관"을 운영하여 현장 의 목소리 반영
 - 구성 및 운영

| 구성 | 운영기간 | 방문기관 |
|----|----------------|-------------------------|
| 17 | '08. 5.19~5.23 | 충남, 경기, 중부지방산림청 등 |
| 27 | '08. 6.23~6.26 | 산림조합(중앙회, 지역4), 임업후계자 등 |

■ 발굴건수 및 처리 : 총 111건(핵심건의 15. 현장제안 96)

핵심건의: 과제분류 → 부서 검토 → 현안점검회의 → 추진점검

현장제안: 과제분류 → 부서 송부 → 자율추진

- 산지규제완화 의견수렴 및 민원혁신을 위한 "지자체 1일 현장지원" 실시
 - 강원 원주 (3, 20 ~ 3, 21), 충남 천안 (5, 2), 강원 원주 (6,27)
 - 제도개선 의견 발굴
 - 임업용 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산지전용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 반출
 - 토석채취 허가 기준 완화 등
- 규제개혁관련 산지관리 법령개정 현장의견 수렴 ('08. 4. 30)
 - 산지전용 허가기준 중 국민의 불편 및 민원제기가 빈발하고 있는 연접적용 문제 토론(산지관리 법 시행규칙 제18조)
 - 산지관리법상의 연접규정 대폭 완화
 - 직선거리 제한 완화(500m → 250m)
 - 준보전산지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연접적용 배제
 - 연접적용 예외조항 추가 확대
 - ·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증축 또는 신축
 - ㆍ 자기소유 산지에 건축하는 주택 및 농가주택

발굴된 건의과제 검토

발굴된 규제는 모두 "산림청 규제개혁협의회"에서 규제의 적정성여부 및 실현가능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과제로 확정

- 수요자 입장에서 발굴된 규제과제의 검토 및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산림규제개혁 협의회" 구성 · 운영 ('08. 4. 17)
 - 전경련(규제개혁팀장). 대한상공회의소(규제개혁추진단). 임업단체, 지자체, NGO 등 위원구성 (매월 넷째주 수요일 개최)
 - 총 4회(4.17, 5.21, 6.25, 10.14) 협의회 운영을 통해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규제 과제 논의 · 확정

산림규제개혁협의회 출범 (YTN TV) 2008-04-17

민간 전문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산림규제개혁협의회'가 오늘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림규제개혁협의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강도 높은 산림규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산림규제개혁협의회는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회의를 열고 산림분야 각종 규제 개혁 과제를 심의하고 자체적으로도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해 불필요한 산림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게 됩니다.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처리 시스템]



규제개혁추진 내용

1. 개발 가능한 산지 공급능력 확대

- 산지관리법 제7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를 실시
 - '97년도에 조사한 산지구분에 그 동안의 현지 여건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08년도에 새롭게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산지 구분 조정
-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통해 산지의 계획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보전산지 면적을 축소 조정
 - 금년도에 추진하는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보전산지 10만ha를 준보전산지로 조정 예정 ('08 말까지)
- ※ 준보전산지 147만ha → 157만ha

- 중·장기적으로는 산지구분 기준을 재조정하여 보전용지와 개발용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전 산지를 합리적으로 조정
- 산지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 준보전 산지의 규모화 추진
 - 산지구분 경계부위에 1ha 이하의 산지는 모두 준보전 산지로 구분 조정
 - 준보전 산지가 70%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주변의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 산지에 준하여 완화
- 국내 산림의 24%를 차지하는 국유림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국유림 요존 및 불요존 구분 기준을 유연화하여 개발 적지로 판단된 국유림은 재산구분에 상관없이 활용
- ※ 국유림활용지 30% 확대 : ('06) 42천ha→ ('12) 55천ha
- 개발사업에 편입 가능한 요존 국유림 편입비율 · 면적 확대
 - 일반사업: (현행)20%미만. 10ha미만 → (개선)40%미만. 20ha미만
 - 개촉지구 : (현행)30%미만, 30ha미만 → (개선)40%미만, 50ha미만
- 각종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요존국유림의 비율과 면적을 상향조정하여 산림률(국유림율 30% 이상)이 높은 강원, 경북은 지역민원해소 및 지역개발에 기여

※ 산림청, 국유림 규제완화 ('08. 8. 27, mbn 매일경제)



산림청이 국유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전체 산림의 24%를 차지하는 국유림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각종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늘(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림 내 재배 허가대상 임산물은 21개 품목에서 57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국유림내 송이. 수액. 산채 등과 같은 임산물 채취 소득은 현재 연간

39여 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청은 또 산업용지와 신도시건설 등에 대한 국유림 편입 비율도 대폭 확대해 시 \cdot 군 지역에서는 20ha 미만으로, 특별시 \cdot 광역시에서는 4ha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2.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 산이 많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지역실정 및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개선

● 보전산지 편입비율 완화

- 사업지안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상한 비율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 로써 상대적으로 보전산지가 많은 지역이 불리한 결과 초래
- 산지를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이 많은 지자체의 지역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시·군·구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완화하는 등 지 역실정에 맞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개선
- 보전산지 편입 비율: (현행) 50~75% → (개선) 시·군·구별 보전산지 면적 비율
- 사이 많아 지역개발 사업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 으로 기대됨

• 산지 표고제한 완화

- 해발고 300미만의 산지의 경우 표고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 현행 : 지역 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이하여야 한다. 단.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
 - 개선 : 지역 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이하여야 한다.

단.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및 해발고 300미터 미만인 경우(해당 시·군· 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한다)는 제외

●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요건 보완

■ 주요 산줄기 능선부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

- 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현황('08.1월 현재): 3.908필지, 32.464ha
- 산지전용 제한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산지전용을 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는 해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거나. 국립묘지 설치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등 해제요건을 보완
-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역 개발사업지에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포함될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주 5일 근무제 정착 및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도시민의 농어촌 휴양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산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시설면적을 확대
 -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시설허용면적 : (종전) 1ha → (개선) 3ha
-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의 경우에 종전에는 임시로 설치하는 것만 인정하던 것을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임업용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임산물 재배품목 범위를 확대

개정 전 (27개 품목) 개정 후 (57개 품목) - 수실류(11) : 밤·감·잣·호도·대추·은행· - 산나물류(8):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 도토리 · 개암 · 머루 · 다래 · 복분자 참나물 · 두릅 · 원추리 · 죽순 - 버섯류(4) : 표고 · 송이 · 목이 · 석이 - 약초류(9) : 삼지구엽초·청출·백출·애엽· 시호 · 작약 · 천마 · 장뇌 · 결명초 - 산나물류(8):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 참나물 · 두릅 · 원추리 · 죽순 - 약용류(8): 오미자·오갈피·산수유·구기자· - 약초류(9): 삼지구엽초·청출·백출·애엽· 두충나무 · 헛개나무 · 음나무 · 참죽나무 시호 · 작약 · 천마 · 장뇌 · 결명초 - 관상산림식물류(2): 야생화·조경수 - 수엽류(7): 은행잎·솔잎·두충잎·떡갈잎· 멍개잎 · 음나무잎 · 참죽잎 - 약용류(8): 오미자·오갈피·산수유·구기자· 두충나무 · 헛개나무 · 음나무 · 참죽나무 - 수목부산물류(5): 수액·수피·수지· 나무뿌리 · 나무순 - 관상산림식물류(5): 야생화·자생란· 조경수 · 분재 · 잔디

■ 사지를 활용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방송촬영시설을 이용한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산지복구비 등 예치 면제대상 범위 확대

- 현행 산지관리법상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에만 산지복구비를 면제하였으나.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자자체가 전액을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한 기업으로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도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 · 공공용 시설의 사업도 산지복구비예치 면제대 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 ha 당 복구비 예치단가('08): 전용지(88.578천원), 토석채취지(174.484천원)
- 사지복구비 면제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설하는 공용・ 공공용 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자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

• 권한위임 범위 확대

- 사지전용 절차 가소화를 위하여 전용 행위가 많은 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의 사지전용허가권 을 전부 지자체에 위임
 - * 현재는 200ha(보전산지의 경우 50ha 이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청장 권한임
- 현지 실정에 맞는 신속한 토석채취허가 등을 위하여 일정면적까지 토석채취허가 면적 위임 범 위를 확대
 - 시·도지사: (종전) 7 ~ 10ha 미만 → (개선) 10 ~ 20ha 미만
 - 시장·군수 : (종전) 7ha 미만 → (개선) 10ha 미만
- 사지전용 허가 절차 간소화 및 토석채취허가 면적 허가 위임 범위 확대로 현지 실정에 맞는 인ㆍ허가 등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

● 계획상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제한 완화

■ 계획상 도로의 사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상 도로' 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용 요 구 증대

- 산지전용 신규허가시 이미 허가된 '계획상 도로' 의 공동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진입로 개설을 의무화 함으로써 공장설립 등에 애로가 있다는 민원 다수 발생
- * 이미 허가된 사업지가 중단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사업이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지전용 기간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계획상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제 한 ('04.4 행정자치부 산지전용지 관리실태조사 결과 반영)
- 따라서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용토록 제도 개선 * 계획상 도로: 사용개시 및 준공검사 전의 도로
- 계획상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을 허용함으로써 공장신축 등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기여

• 연접개발 제한 규정 완화

- 연접개발 제한 규정은 기존 전용지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서는 3ha이하만 개발 가능함. 따라서 사업을 할 목적이 아닌 자가 산지전용허가를 선점할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한편 공장을 증설할 경우 연접제한으로 증설을 할 수 없고 농가주택 등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발생으로 민원 제기
- 그러나 연접제한 규정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및 후개발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산지관리법령상 연접개발제한 규정과 비슷한 개발행위허가규모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개선 방안을 마련
- 산지개발시 적용되는 연접개발의 거리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등 현지여건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
 - 거리제한 완화 : (종전) 반경 500미터 → (개선) 반경 250미터
 - 공장 증·개축,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자기소유의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연접개발제한 예외 인정
 - 계획관리지역의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개 발행위허가기준으로 통일
 - 지역 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고유가시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정부합동 추진
 - 풍력발전의 경우 5부 능선 이상의 산악지형에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풍향이 좋은 고산지역에 풍력발전 설치 가능
 -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8, 8, 27)
 - ※ 신에너지(3):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재생에너지(8):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5 종합적 성과

- 규제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산림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원활한 토지공급원으로서의 역할과 산주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 주요 규제부문별 민원만족도 대폭상승
 - 전체적인 종합만족 지수 : ('07) 70.1 → ('08) 71.7
 - 산지전용, 토석채취, 산지복구 : ('07) 55.2 → ('08) 64.6
 - 국유림 이용, 대부 : ('07) 54.3 → ('08) 65.8
 - 산림경영지원, 소득증대 : ('07) 74.7 → ('08) 78.7
 - ⇒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인 "산지이용" 측면에서 규제완화 효과 및 주요 규제완화 수혜자인 "산주(山主)"로부터 규제개혁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음

규제개혁 성공요인

- 국토의 64%인 산지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 규제완화 대상, 행정처리 절차, 처리기간 및 관련 부담금 등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

-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지자체 및 전경련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적극수용
- 산지개발은 불가피하게 녹지의 감소와 이로 인한 경관 및 생태계 훼손을 수반하므로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대규모 산지 편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위원회심의 등 산지이용요건 강화를 통한 산지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규제개혁의 성과

- 산지전용허가권한의 지자체 이양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신속한 의사 결정 등으로 민원
 인의 불편 해소
 -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타 법령에 의한 제한사항의 경우로서 일정면적 이하의 경우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지자체에서 실행하므로 처리기간 단축
 - 또한 개발수요가 많은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전용허가권한을 면적에 관계 없이지자체에 위임함 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 등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
- 연접개발 제한 완화 등 산지분야 대표적인 민원 해소
 - 계획관리지역의 연접개발제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규모로 통일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예외적용을 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
- 계획상도로를 이용한 공장건설을 허용함으로써 계획상 도로의 이용을 둘러싼 민원해소

●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 공장 증·개축의 경우 연접개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산지에서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져 공장 증축으로 인한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 부지면적에 변함이 없는 건축면적의 증개축의 경우 산지전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산지전 용신고로 인한 불편 해소

제 3 장

기업 경쟁력 강화

제11절 관광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 제12절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제13절 석유 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제14절 국내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제15절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인력지원 개선



PRIME MINISTER'S OFFICE



제11절 관광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

요 약

1. 추진배경

• 관광산업(호텔업, 여행업, 관광단지 등)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유도

2. 추진내용

| 과제내용 | 추진현황 |
|--|--|
| ·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08.7.24) |
| · 여행업 관광알선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08.7.24) |
| · 관광단지 개발 · 투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 농지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행 ('08.6.5) |
| · 관광(단)지 개발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 개선 |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08.8.26) |
| · 관광개발시 경관평가 중복 개선 | · 산지전용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개정 ('08.7.31) |
| · 관광개발 관련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절차 간소화 |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완료 및 지자체 통보 ('08.4.21) |
| · 산지전용 승인 권한을 일원화 |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 ('08.7.24) |
| ·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의제 | · 관련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 ('08.4월) |
| · 관광단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처리 개선 | · 관련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 ('08.4월) |
| · 관광휴양지내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완료 및 지자체 통보 ('08.4.21) |
| · 관광휴양시설 개발시 보전임지 편입비율 완화 |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 ('08.7.24) |
| ·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준 개선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08.9.29) |
| · 식품접객업 영업장내 객실/객석 설치의무 개선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08.6.20) |
| · 관광사업지역내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을 허가의무에서 제외 | · 관리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 ('08.4.3) |
| · 유원지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08.9.5) |
| · 유원지내 가설건축물은 신고후 건축가능토록 개선 | · 지자체 공문시달 ('08.4.1) |
| · 중국관광객 비자제도 획기적 개선 - 복수사증 발급대상자 확대 - 청소년 수학여행 입국 절차 개선 | · 지침 개정 ('08.4.21) |
| · 의료목적 관광객 비자 편의 제고 | · 지침 개정 ('08.4.21) |
| · 외국관광객 탑승 차량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 | ·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08.6.22 시행) |
| · 유기시설 부적합 이용자에 대한 이용거부 명문화 |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시행 ('08.8.26) |
| · 콘도 만기도래 회원권의 갱신 계약 및 재분양 법규정 개선 |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시행 ('08.8.26) |

3. 종합적 성과

•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연장에 따른 900억원의 세수지원 및 관광숙박 요금 9.1% 인하, 관광알선 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에 따른 연간 62억원의 조세경감, 관광(단)지 조성기간 24~27개월 단축 등의 효과와 더불어 관광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되는 기반 마련에 기여

관광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국제관광 2.000만명 시대를 맞이했으나 인아웃바운드가 불균형 (약 1:2의 비율)으로 발전하는 상황으로, 방한 외래객 입국은 낮은 증가세(3~5%)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 해외여행은 15% 수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됨으로써 관광 수지 적자(-101억불) 확대

[관광객 및 관광수지]

| 구분 | 외래객 입국 | 내국인 출국 | 수입(백만\$) | 지출(백만\$) | 수지(백만\$) |
|------|-------------|---------------|--------------|---------------|-----------------|
| 2004 | 5,818천명 | 8,826천명 | 6,053 | 9,856 | △ 3,803 |
| 2005 | 6,023 | 10,080 | 5,793 | 12,025 | △ 6,232 |
| 2006 | 6,155 | 11,610 | 5,760 | 14,336 | △ 8,576 |
| 2007 | 6,448(4.8%) | 13,325(14.8%) | 5,750(-0.2%) | 15,880(10.8%) | △ 10,129(18.1%) |

- 관광산업은 지금까지 소비 향락사업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제조업 등에 비해 과도한 세제부담 및 규제에 따라 불리하게 취급되고, 관광 수용 태세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
 - 여행사 및 관광호텔은 외화획득산업임에도 수출제조업에 비해 정책지원 차별
 - 관광단지는 제조업 산업단지에 비해 불리한 세제 지원
 - 서울 관광호텔의 가격(366\$)은 뉴욕(347\$). 동경(280\$)보다 높은 수준

2. 기본방향

모표

● 관광산업(호텔업, 여행업, 관광단지 등)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유도

추진 계획 또는 추진 전략

- 1단계로 시급한 조세지원 및 규제완화 사항을 발굴 개선을 위해 「1단계 관광산업 감세 및 규제완 화 대책,마련(총 32건, 08.3.26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 완화(9건)
 - · 관광개발 관련 각종 규제 개선(16건)
 - · 외래객 등 소비자 서비스 개선(6건)
 - ·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유치 지원(1건)
- 정부는 조세지원의 혜택이 최종 관광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경영혁신 노력과 연계하고 이를 점검 및 관리
 - ◇ 정부 감세지원의 민간 가격경쟁력 연계 사례
 - ▶ 정부 : 관광호텔의 외래객 객실 요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07.7~'08.12월)
 - ▶ 서울시 : 가격인하 관광호텔에 대한 지방세 등 감면
 - 관광호텔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 ▶ 서울소재 관광호텔업계 : 호텔가격 인하(총 120개중 114개 참여, 95%)
 - 특급호텔 20% 이상, 1~3급 호텔 10% 이상
- 조세지원 및 규제완화 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최대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마무리
 - ※ 시행규칙('08.6.30), 시행령('08.8.31), 법률('08.12.31)
- 정부내 '관광규제개선센터(24/7/365시스템)' 설치 운영('08.4월)
 - ※ 관광업계로부터 관광규제 개선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연 365일, 주 7일, 24시간 상시 의견수렴체제)

3. 추진과정 및 내용

추진내용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 완화

-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연장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07 7~'08 12월)
 -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인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2009년까지 1년 연장
 - ※ 다만,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지원이 숙박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쟁력강화를 위 한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기간 연장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 개정(기획재정부)
 - ※ 연간 900억원의 세수지원효과 및 관광숙박요금 약 9.1% 인하 요인제공
- 여행업 관광알선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
 -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알선수수료를 외국화은행을 통하거나 신용카드 수표 등으로 받을 경 우에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 여행사가 현금으로 받는 외국인 관광객 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도 증빙서류 제출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 ※ 관광알선용역 수수료 명세표, 외화매입증명서 등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개정(기획재정부)
 - ※ 연간 62억원의 인바운드 여행업 조세부담 경감(외래객 4만명 증가효과 추정)

관광개발 관련 각종 규제 개선

- (1) 관광개발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 관광(단)지 개발 사전화경성 검토 등 절차 개선
 -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과 같이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에 대한 2단계 환경평가절차를 1단계로 축소 개선

[현 행]: 관광(단)지 지정(사전화경성검토) 조성계획(화경영향평가) [개 선]: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 ※ 30만m²이상의 환경평가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그 미만은 '환경성검토'실시
-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 개정(환경부)
- 관광개발시 경관 평가 중복 개선
 - 관광개발 관련 경관심의를 건축허가시. 환경영향평가시. 산지전용시 각각 별개로 받도록 되어 있음
 - 관광단지, 종합·전문 휴양업,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개발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시 경관평 가에 산지전용 경관평가를 통합 시행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개정(산림청)
- 관광개발 관련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절차 간소화
 - 관광개발에 있어 가구, 획지 면적 등 경미한 계획의 변경시에도 도시계획변경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사업지연 초래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등 용지별 획지를 부 여하여 일부 변경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시행 허용
 - ⇒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지자체에 시달 (국토해양부)
- 산지전용 허가 권한의 시 · 도지사 위임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은 산림청장 소관임
 - ※ 산림청장 허가: 보전산지 50만m²이상, 준보전산지 200만m²이상
 - ※ 시·도지사 허가: 산지전용면적이 50만m²이상 200만m² 미만.

보전산지의 경우 3만m²이상 50만m² 미만

- 산지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을 모두 지자체에 위임
-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제3호 개정(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포함)이 의제처리 되나 별도 절차 이행 밤생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경우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변경)의 변경 의제가 현 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 현행 '관광진흥법' 해석을 기초로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 및 현장 확인 강화(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단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처리 개선
 - 관광단지 경미한 조성계획변경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 변경 처리 후 승인권자(시·도지사) 에게 통보조치토록 규정(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에서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인 경우 경미한 조성계획변경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경미한 변경의 경우 별도의 조성계획 변경승인 없이 민간개발사업자의 통보만으로 변경이 가능 토록 관리 철저
 - ⇒ 현행 관광진흥법을 명확히 해석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 및 현장 확인 강화(문화체육관광부)

(2) 관광개발 진입장벽 해소 및 자율성 강화

- 관광휴양지내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지역내 건축물 높이를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필요시 허용된 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사전 경관분석을 통하여 랜드마크 등 관광휴양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를 현행 10층 이상도 가능토록 완화
 - ⇒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7장) 개정(국토해양부)
- 관광휴양시설 개발시 보전임지 편입비율 완화
 - 관광휴양시설을 개발하고자 산지를 전용할 경우 보전산지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
 - 개발계획지에 편입을 허용하는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현행 50%에서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 적비율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동 기준에 따를 경우 최대 95%까지 편입 가능)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준 개선
 - 유스호스텔의 경우 수용정원의 20% 이상을 침대식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 현행 기준을 10%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보건복지가족부)
- 식품접객업 영업장내 객실/객석 설치의무 개선
 - Take-out 형태의 휴게 음식점의 경우에도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여 객실 또는 객석 설치를 영업신고 조건으로 요구
 -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장내 객실 및 객석 설치여부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명확화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가족부)
- 관광사업지역 부지내 옥외광고물 허가의무 제외
 - 관광리조트 등 관광사업지역 내 설치된 내부도로의 경우,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 가 아니므로 옥외광고 허가·신고대상지역인 '도로'에서 제외됨에도 일부 지자체는 이를 옥외 광고물법상 허가 · 신고 대상으로 유권 해석
 - 관광사업지역 내 내부도로변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 ⇒ 해당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지침을 지자체 통보(행정안전부)

(3) 유원지를 국민관광휴양공간으로 조성

- 유원지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 법령상 유워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유워지 설치 가능 용도지역 및 관광단지에는 설치가 가능하나 유원지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이 있음
 - 유워지 중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휴양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에서 입지 가능한 시 설에 대해서 허용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개정(국토해양부)

- 유원지내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건축가능토록 개선
 - 유워지(도시계획시설)내 가설건축물 설치 시 신고로 가능하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지자체별로 행정처리가 상이
 - ※ '07년 건교부는 유원지내 가설건축물 설치시 '허가'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
 -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에서도 신고만으로 축조할 수 있도록 유권해 석 변경
 -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대한 유권해석 지침 통보(국토해양부)

외래관광객 등 소비자 서비스 개선

- 중국관광객 비자제도 획기적 개선
 - 복수사증 발급대상자 확대
 - ▶ 중국인으로서 OECD 국가 영주권자
 - ▶ 한중 정기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및 선사의 임직원
 - ▶ VISA 등 국제적 신용카드 (골드 또는 플래티넘) 소지자
 - ▶ 최근 2년동안 4회 이상 방문자
 - '08 북경 올림픽 기간동안 상호 무비자 시범 추진(3개월)
 - ▶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관용여권 소지자
 - ▶ 500대 상장기업 임직원 등 한국 카지노 협회 추천 카지노 고객
 - ▶ 한국전담여행사 사장, 임직원 및 여행사 가이드
 - ▶ 만 18세 이하 학생 (학교장의 확인절차)
 - ▶ OECD 방문 경험 있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역 거주자
 - ▶ 기타 복수사증 발급자 (OECD 국가 영주권자, 항공사 및 선사의 임직원, 국제적 신용카드 소지 자. 최근 2년간 4회 이상 방문자)

- 청소년 수학여행 입국 절차 개선
 - ▶ 영사인터뷰 및 여권제출 생략 등 절차 간소화
 - ▶ 수학여행단의 경우 양국 청소년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영사확인 절차 생략
- ⇒ 비자제도 개선 지침 개정(법무부)
- 의료목적 관광객 비자 편의 제고
 - 출입국관리법규상 환자 본인은 91일 이상 비자 발급이 가능하나(G1). 실제 의료목적 G1 비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상 G-1 비자 외교 내지 영주 및 관광취업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장기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에 대해 G-1 비자를 발급하여 장기체류 (91 일 이상)가 가능토록 개선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법무부)
- 외국관광객 탑승 차량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
 - 현재 36인승 이상의 전세버스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으로 25인승 이상의 중형 전세버스의 시간 정체 및 외래 관광객 불편을 초래
 - 25인승 이상 36인승 미만의 전세버스 및 호텔보유 버스의 경우에도 외국인 탑승시 버스전용차 로 통행 허가

[서울지역 운행가능 중형버스 현황]

| 구 분 | 서울지역 전세버스 | 특급호텔 보유버스 | 수도권지역 전세버스 | 합 계 |
|------------|--------------|--------------|---------------|-------|
| 전체 | 616 | 26 | 980 | 1,622 |
| 외국인 이용(추정) | 150 | 26 | 100 | 276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개정(행정안전부, 경찰청)

- 유기시설 부적합 이용자에 대한 이용거부 명문화
 -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부적합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이용 거부 권한이 부재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한계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유기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가 이를 숨기거나 강제로 이용하려 할 경우 유원시설업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법에 명문화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개정(문화체육관광부)
- 콘도 만기도래 회원권의 갱신계약 및 재분양 법규정 개선
 - '99년 이전에 회원모집한 콘도미니엄의 회원모집 기간 만기 도래시 '99년 이전 기준·시기 및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용의 혼란 초래
 - '99년 이전에 회원모집한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도 회원모집 기간 만기 도래시 현행 기준에 따라 갱신계약 및 재분양토록 개선
 - ⇒ 관광진흥법시행령 부칙 제3조 삭제(문화체육관광부)

추진 경과

-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 조정을 통해 개선방향 도출
 - 관광산업 감세 및 규제개선 과제 관련 관계부처 협의('08.2~3월)
 - * 관계 부처 국장급 회의 6회 개최
 - 관광산업 감세 및 규제개선 과제 경제정책조정회의 심의 의결('08.3.26)
 -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개최('08.3.28)
 - * 관광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등 범정부적 지원 대책 마련 (총 32건의 제도개선 과제 확정)
 -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 개최('08.4.28/기획재정부 주관)
 - * 관광산업 감세 및 규제완화 추가 과제 발굴, 보고

추진현황

| 과 제 내 용 | 추 진 현 황 | 담 당 부 서 |
|--|---|---------|
| 1.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제26조제(항제5의3 개정) | O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완 ('08,7,24) | 기획재정부 |
| 2. 여행업 관광알선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항제5호 개정) | O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완 ('08.7.24) | 기획재정부 |
| 3.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3)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개정) | O농지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행 ('08,6,5) | 농림수산식품부 |
| 4. 관광(단)지 개발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 개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 o개정안 공포 ('08,8,26) | 환경부 |
| 5. 관광개발시 경관평가 중복 개선 (산지전용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개정) | o산지전용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개정 ('08,7,31) | 산림청 |
| 6. 관광개발 관련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절차 간소화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침 개정) | O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완료 및 지 자체 통보 ('08.4.21) | 국토해양부 |
| 7. 산지전용 승인 권한을 일원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항제3호 개정) | O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 ('08.7.24) | 산림청 |
| 8.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의제 (관련 지침 마련 시도에 시달 및 현장 확인 강화) | O관련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 ('08.4월) | 문화체육관광부 |
| 9. 관광단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처리 개선 (관련 지침 마련 시도에 시달 및 현장 확인 강화) | O관련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 ('08.4월) | 문화체육관광부 |
| 10. 관광휴양지내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7장 개정) | O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완료 및 지자체 통보 ('08.4.21) | 국토해양부 |
| 11. 관광휴양시설 개발시 보전임지 편입비율 완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 개정) | O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 ('08.7.24) | 산림청 |
| 12,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준 개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 o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08.9.29) | 보건복지가족부 |
| 13. 식품접객업 영업장내 객실/객석 설치의무 개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08.6.20) | 보건복지가족부 |
| 14. 관광사업지역내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을 허가의무에서 제외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마련 시도에 시달) | O관리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 ([*] 08.4.3) | 행정안전부 |
| 15. 유원지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개정) | O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08.9.5) | 국토해양부 |
| 16. 유원지내 가설건축물은 신고후 건축가능토록 개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대한 유권해석 지침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 O지자체 공문시달 ('08.4.1) | 국토해양부 |
| 17. 중국관광객 비자제도 획기적 개선(비자제도 개선지침 개정) - 복수사증 발급대상자 확대 - 청소년 수학여행 입국 절차 개선 | O지침 개정 ([*] 08.4.21) | 법무부 |
| 18. 의료목적 관광객 비자 편의 제고 (비자제도 개선지침 개정) | O지침 개정 ('08.4.21) | 법무부 |
| 19. 외국관광객 탑승 차량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하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개정) | o개정안 법제처 심사 완료후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08.6.22 시행) | 경찰청 |
| 20. 유기시설 부적합 이용자에 대한 이용거부 명문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 | o개정안 공포 · 시행 ('08,8,26) | 문화체육관광부 |
| 21. 콘도 만기도래 회원권의 갱신 계약 및 재분양 법규정 개선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삭제) | o개정안 공포 · 시행 ('08,8,26) | 문화체육관광부 |

4. 종합적 성과

-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연장에 따른 900억워의 세수지워 및 관광숙박 요금 9.1% 인하, 여행업 관광알선 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에 따른 연간 62억원의 조세경감, 관광개 발 절차 간소화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기간 24~27개월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
- 아울리,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외래관광객 355만명 증가('07년 645만명 → '12년 1.000만명). 관광수입 72억달러 증가('07년 58억달러 → '12년 130억달러). 고용 인원 12만명 증가('07년 88 만명 → '12년 100만명) 등 관광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되는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
- 소관 법령 부처 등의 참여를 통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마련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 참여, 관광관련 각종 규제 발굴 개선
 - 민간의 참여를 통한 수요자 의견·건의 적극 반영
 - 2단계 관광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추진으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규제개선

5 향후 추진계획

- 관광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조세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
-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강화회의 개최를 통한 제2단계 감세 및 규제완화대책 마련('08, 12월 중)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의 정례적 개최('09년 이후. 년 1회)



제12절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요약

1. 추진배경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지난 2002년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집단으로 기준이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매년 규제대 상 기업집단 수가 급증하여 기업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규제를 위한 행정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2. 추진내용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종전 자산기준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 거래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이해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 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2008.7.1일부터 시행함

3. 종합적 성과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2008.4월 당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9개 기업집단중 38개 기업집단이 2008.7.1일부터 지정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의 수는 41개 집단으로 대폭 감소하게되었음
-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금지 및 채무보증제한 등 실체적 규제에서 벗어나고, 비상 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및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와 같은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도 없어지는 등 규제완화 효과가 발생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1. 추진배경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모든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매년 4월1일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는 지난 1987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마련하면서 법적용대상 기업집단을 획정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고.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이 공개됨으로써 시장감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기능해 왔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등을 금지하고 있음(법 제14조)
-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채무보 증제한의 적용대상이 되고,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및 대규모내부거래의 이 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등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규율대상이 됨

☞ 〈 용어풀이 〉

- ① 상호출자금지제도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포함)에 대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 ② 채무보증제한제도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는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0조의2)
- ③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의3)

☞ 〈 용어풀이 〉

- ④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내부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의2)
-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은 1987년 이후 자산규모기준(4.000억원이상) → 자산순위기준(30대 기업집단) → 자산규모기준(2조원이상) 등으로 경제여건 및 규제범위의 적정성, 규제에 따른 행정 비용 등을 감안하여 변화 · 조정되어 왔음

[표1_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의 변천과정]

| 구분 | 주 요 내 용 | |
|----------|--|--|
| '87.4.1 | 자산규모 4,0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 ※ '87년에 29개 기업집단이 지정 | |
| '93.2.20 | 기업집단 지정방식 변경- 자산기준(4,000억원 이상) → 자산순위기준(30대기업집단) | |
| '02.3.30 | ○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자산기준으로 변경하고, 자산규모에 따라 기업집단 차등 지정 -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2조원 이상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5조원 이상 | |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이후 '05년에 6조원, '07년에 10조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 바 있으며,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포함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음

● 이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지난 2002년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집단으로 기준이 변 경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매년 규제대상 기업집단 수가 급증하여 기업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규제를 위한 행정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2. 기본방향

- 공정위는 규제대상 기업집단 수를 줄여서 기업부담을 줄여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집단 관 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 아을 추진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이 2002년에 자산총액 2조워 이상으로 규정된 이후 그간의 국민경제 규 모 및 기업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2년 43개 기업집단이 던 것이 2008년에는 79개 기업집단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 지정대상 기업집단수 : 30('01년) \rightarrow 43('02년) \rightarrow 49('03년) \rightarrow 51('04년) \rightarrow 55('05년) \rightarrow 59('06년) \rightarrow 62('07년) → 79('08년 예상)
- 이에 따라, 그동안의 GDP 증가율 등 경제지표와 기업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향 조정 폭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범위)의 개 정을 추진함

3 추진 과정 및 내용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 2008.4.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2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다음 〈표2〉와 같이 총 79개 기업집단 1.680개사로 이는 작년(62개 집단, 1,196개사)보다 17개(신규지정 18개, 지정제외 1개) 기업집단이 증가

[표2 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현황]

| 구분 | 기업집단명 | 동일인 | 자산총액 | 계열회사수 | 비고 |
|----|--------|-----------------|---------|-------|----|
| 1 | 삼성 | 이건희 | 144,449 | 59 | |
| 2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 112,621 | 12 | |
| 3 | 현대자동차 | 정 몽구 | 73,987 | 36 | |
| 4 | 에스케이 | 최태원 | 71,998 | 64 | |
| 5 | 엘지 | 구본무 | 57,136 | 36 | |
| 6 | 대한주택공사 | 대한주택공사 | 51,137 | 2 | |
| 7 | 롯데 | 신격호 | 43,679 | 46 | |
| 8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 38,824 | 4 | |

| 구분 | 기업집단명 | 동일인 | 자산총액 | 계열회사수 | 비고 |
|----|--------------------|---------------------|--------|-------|------|
| 9 | 포스코 | (주)포스코 | 38,496 | 31 | |
| 10 | 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공사 | 33,600 | 3 | |
| 11 | 지에스 | 허창수 | 31,051 | 57 | |
| 12 | 현대중공업 | 정몽준 | 30,058 | 9 | |
| 13 | 케이티 | (주)케이티 | 27,073 | 29 | |
| 14 | 금호아시아나 | 박삼구 | 26,667 | 52 | |
| 15 | 한진 | 조양호 | 26,299 | 27 | |
| 16 | 한화 | 김승연 | 20,627 | 40 | |
| 17 | 두산 | 박용곤 | 17,033 | 21 | |
| 18 | 하이닉스 | (주)하이닉스반도체 | 14,995 | 8 | |
| 19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 | 14,503 | 15 | |
| 20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 12,680 | 3 | |
| 21 | 에스티엑스 | 강덕수 | 10,912 | 15 | |
| 22 | 신세계 | 이명희 | 10,707 | 15 | |
| 23 | 씨제이 | 이재현 | 10,257 | 66 | |
| 24 | 엘에스 | 구태회 | 9,562 | 24 | |
| 25 | 동부 | 김준기 | 9,503 | 29 | |
| 26 | 대림 | 이준용 | 9,014 | 14 | |
| 27 | 현대 | 현정은 | 9,007 | 9 | |
| 28 | 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해양(주) | 8,652 | 8 | |
| 29 | 케이씨씨 | 정상영 | 8,013 | 7 | |
| 30 | 지엠대우 | 지엠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주) | 7,978 | 3 | |
| 31 | 현대건설 | 현대건설 | 7,271 | 14 | |
| 32 | 동국제강 | 장세주 | 6,523 | 12 | |
| 33 | 효성 | 조석래 | 5,980 | 30 | |
| 34 | 동양 | 현재현 | 5,851 | 20 | |
| 35 | 한진 중공 업 | 조남호 | 5,719 | 5 | |
| 36 | 대한전선 | 설윤석 | 5,620 | 20 | |
| 37 | 현대백화점 | 정지선 | 5,582 | 25 | |
| 38 | 영풍 | 장형진 | 5,218 | 21 | |
| 39 | 이랜드 | 박성수 | 5,200 | 19 | |
| 40 | 코오롱 | 이웅열 | 5,159 | 34 | |
| 41 |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 | 5,091 | 2 | |
| 42 | 현대산업개발 | 정몽규 | 4,926 | 15 | |
| 43 | 웅진 | 윤석금 | 4,920 | 24 | 신규지정 |
| 44 | 하이트맥주 | 박문덕 | 4,805 | 15 | |
| 45 | 부영 | 이중근 | 4,755 | 6 | |

| 구분 | 기업집단명 | 동일인 | 자산총액 | 계열회사수 | 비고 |
|----|------------|------------|-----------|-------|------|
| 46 | 케이티앤지 | (주)케이티앤지 | 4,737 | 6 | |
| 47 | 세아 | 이운형 | 4,420 | 23 | |
| 48 | 동양화학 이회림 | | 4,163 | 15 | |
| 49 | 태광산업 | 이호진 | 3,802 | 46 | |
| 50 |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 3,546 | 3 | 신규지정 |
| 51 | 삼성테스코 | 삼성테스코(주) | 3,500 | 2 | 신규지정 |
| 52 | 미래에셋 | 박현주 | 3,391 | 21 | 신규지정 |
| 53 | 대성 | 김영대 | 3,262 | 47 | |
| 54 | 태영 | 윤세영 | 3,215 | 26 | |
| 55 | 한솔 | 이인희 | 3,193 | 16 | |
| 56 | 유진 | 유경선 | 3,080 | 42 | 신규지정 |
| 57 | 농심 | 신춘호 | 3,023 | 16 | |
| 58 | 태평양 | 서경배 | 2,993 | 9 | |
| 59 | 애경 | 장영신 | 2,968 | 29 | 신규지정 |
| 60 | 하나로텔레콤 | 하나로텔레콤(주) | 2,936 | 18 | |
| 61 | 한라 | 정몽원 | 2,925 | 12 | 신규지정 |
| 62 | 쌍용양회 | 쌍용양회공업(주) | 2,882 | 6 | |
| 63 | 대주건설 | 허재호 | 2,851 | 20 | 신규지정 |
| 64 | 문화방송 | (주)문화방송 | 2,747 | 36 | |
| 65 | 한국타이어 | 조양래 | 2,673 | 9 | |
| 66 | 프라임 | 백종헌 | 2,604 | 43 | 신규지정 |
| 67 | 보광 | 홍석규 | 2,525 | 62 | 신규지정 |
| 68 | 삼양 | 김 윤 | 2,511 | 13 | |
| 69 | 오리온 | 담철곤 | 2,497 | 20 | |
| 70 | 교보생명보험 | 신창재 | 2,426 | 11 | |
| 71 | 씨앤 | 임병석 | 2,281 | 29 | 신규지정 |
| 72 | 대우자동차판매 | 대우자동차판매(주) | 2,245 | 26 | |
| 73 | 대한해운 | 이진방 | 2,236 | 7 | 신규지정 |
| 74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2,207 | 4 | 신규지정 |
| 75 | 선명 | 심장식 | 2,185 | 12 | 신규지정 |
| 76 | 광해방지사업단 | 광해방지사업단 | 2,142 | 3 | 신규지정 |
| 77 |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 2,109 | 2 | 신규지정 |
| 78 | 농협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099 | 26 | 신규지정 |
| 79 | 대교 | 강영중 | 2,031 | 14 | 신규지정 |
| | | | | | |
| | | | | | |
| | 79개 기업진 | 단 | 1,161,549 | 1,680 | |
| | 70-11-16-6 | | .,,. | .,300 |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

-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종전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종전 자산기준 2조원을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시행 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08.4.22)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 이해단체들을 대상으로 의 격수렴 절차를 거침
- 특히, 자산기준을 5조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2002년 이후 6년간의 국내충생산 및 1인당 국민소 득 평균증가율 등 국민경제규모 증가율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대상을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과거 30대 민간기업집단 수준으로 축소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음
- 동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은 2008.6.17일 개최된 2008년도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 으로써, 2008.7.1일부터 본격 시행됨

4. 종합적 성과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워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2008.4월 당초 상호출자제하기업집단 으로 지정된 79개 기업집단중 38개 기업집단이 2008.7.1일부터 지정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되 어 상호출자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의 수는 41개 집단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음

[표3_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현황]

| 순위 | 기업집단명 | 동일인 | 계열사수 |
|----|--------------------|-----------------|------|
| 1 | 삼성 | 이건희 | 60 |
| 2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 12 |
| 3 | 현대자동차 | 정몽구 | 38 |
| 4 | 에스케이 | 최태원 | 89 |
| 5 | 엘지 | 구본무 | 39 |
| 6 | 대한주택공사 | 대한주택공사 | 2 |
| 7 | 롯데 | 신격호 | 49 |
| 8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 4 |
| 9 | 포스코 | (주)포스코 | 35 |
| 10 | 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공사 | 3 |
| 11 | 지에스 | 허창수 | 62 |
| 12 | 현대 중공 업 | 정 몽준 | 11 |
| 13 | 케이티 | (주)케이티 | 31 |
| 14 | 금호아시아나 | 박삼구 | 53 |
| 15 | 한진 | 조양호 | 31 |
| 16 | 한화 | 김승연 | 43 |
| 17 | 두산 | 박용곤 | 24 |
| 18 | 하이닉스 | (주)하이닉스반도체 | 8 |
| 19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 | 15 |
| 20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 3 |
| 21 | 에스티엑스 | 강덕수 | 16 |
| 22 | 신세계 | 이명희 | 15 |
| 23 | 씨제이 | 이재현 | 65 |
| 24 | 엘에스 | 구태회 | 26 |
| 25 | 동부 | 김준기 | 32 |
| 26 | 대림 | 이준용 | 17 |
| 27 | 현대 | 현정은 | 10 |
| 28 | 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해양(주) | 8 |
| 29 | 케이씨씨 | 정상영 | 10 |
| 30 | 지엠대우 | 지엠대우 | 3 |
| 31 | 현대건설 | 현대건설 | 14 |
| 32 | 동국제강 | 장세주 | 12 |
| 33 | 효성 | 조석래 | 29 |
| 34 | 동양 | 현재현 | 22 |

| 순위 | 기업집단명 | 동일인 | 계열사수 |
|----|--------------------|----------|-------|
| 35 | 한진 중공 업 | 조남호 | 6 |
| 36 | 대한전선 | 설윤석 | 30 |
| 37 | 현대백화점 | 정지선 | 26 |
| 38 | 영풍 | 장형진 | 22 |
| 39 | 이랜드 | 박성수 | 19 |
| 40 | 코오롱 | 이웅열 | 35 |
| 41 |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 | 2 |
| | | 41개 기업집단 | 1,031 |

^{*}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38개): 현대산업개발,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케이티앤지, 세아, 동앙화학, 태광산업, 부산항만공사,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대성, 태영, 한솔, 유진, 농심, 태평양, 애경, 하나로텔레콤, 한라, 쌍용양회, 대주건설, 문화방송, 한국타이어, 프라임, 보광, 삼양, 오리온, 교보생명보험, 씨앤, 대우자동차판매, 대한해운, 한국지역난방공사, 선명, 광해방지사업단, 인천항만공사, 농협, 대교

-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금지 및 채무보증제한 등 실체적 규제에서 벗어나고, 비상 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및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와 같은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도 없어지는 등 규제완화 효과가 발생
- 또한, 규제대상 기업집단 수의 감소는 규제를 집행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규모기업집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대규모기업집단을 위주로 행정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였음

5. 향후 발전계획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명확히 확정함으로써 기업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공정위도 선택과 집중에 따라 감시효율을 증진시키는 기능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지정제도 그 자체는 규제라기보다는 규율대상 기업집단을 확정하여 실체적 규제의 원활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또는 인프라로 기능하며, 공시제도와 같은 사후 · 시장감시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도 유용한 역할을 수행
-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규제 내용에 따라 자산총액 합계액의 기준액을 달리하여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회 계류중인 출총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은 폐지하고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만 존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 기업집단의 명칭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보다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용어풀이 〉

-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에 대하여 타회사 출자한도를 당해 회사의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법 제10조)
- □ 그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기업규제로 인식되어 존폐 논란이 지속되었으나, 현재 출총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 제13절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요약

1. 추진배경

• 지난 10년간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은 4개 석유정제업자(통칭 정유사)의 시장점유율이 별다른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처럼 석유제품 유통시장이 고착화된 이유 중 하나는 석유제 품판매 표시광고고시가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 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시의 존치여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추진내용

-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 · 광고행 위의 금지)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 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소에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게시한 경우, 해당 석유정제업자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었음
 - 이처럼, 주유소에서 하나의 석유정제업자 제품만을 판매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의 존재도 그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에 따라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게시한 주유소에서도 상표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폐지

3. 종합적 성과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가 제정된 1992년 4월부터 폐지된 2008. 9. 1. 까지 고시폐지 요구와 관련하여 16년 동안 지속된 정부와 정유업계. 주유업계간의 갈등 해소
- 특히, 석유제품 유통시장은 수직계열화와 수평거래 금지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간 경쟁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간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1. 추진배경

고착화된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

- 국내 석유제품시장은 4개 석유정제업자(통칭 정유사)에 의한 과점시장이고 유통과정에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 수직계열화와 수평거래 금지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실제로, 최근 10년간 각 석유정제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다르게 예전의 시장점유율이 최근까지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석유정제업자별 시장점유율(휘발유) 비교표]

| 구 | 분 | SK에너지 | GS칼텍스 | 현대오일뱅크 | 에스오일 | SK인천정유 | 기타 |
|-----|-------|-------|-------|--------|------|--------|-----|
| 시장 | 1997년 | 37.1 | 31.0 | 8.0 | 13.2 | 10.7 | _ |
| 점유율 | 2007년 | 36.1 | 32,2 | 15.3 | 12.7 | 3.0 | 0.7 |

- 이처럼, 석유제품 유통시장이 고착화된 이유 중 하나는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가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시의 존치여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2호)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여건 변화

- 금년들어 휘발유 값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석 유제품가격의 안정을 위해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행태적 측면에서의 개선점 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실제로, 지식경제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의 개정을 통해 수평거래 금지제도를 폐 지하고 금융위원회는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정부가 고착화된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정책과 더불어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시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고시의 실효성 논란 대두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는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게시한 주유소는 해당 석유정제업자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주유소에 게시된 상표 또는 상호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석유정제업자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하여 각 업체 간에 일정 물량을 서로 교화하여 자신의 상표 또는 상호를 게시한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주유소에 게시된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보고 그 주유소를 이용 한 소비자들은 해당 석유정제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단지 그 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 을 구매하게 됨에 따라 주유소에 게시된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는 해당 제품의 생 산자 표시라고 인식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었음
- 이러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현실에서는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고시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2. 기본방향

목 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는 주유소 등이 그 영업장소에 표시 · 광고된 상표 또는 상호와 동일 한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석유정제 업자간의 가격 및 품질경쟁을 유도하 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이러한 고시를 폐지할 경우. 소비자보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폐지 추진시 관련 업계의 의견뿐만 아니 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관련 업계 및 단체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석 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음

추진계획

각 계의 의견 수렴

●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을 위하여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하여야 한 다는 주장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서는 고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립하 고 있어. 이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폐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음. 특히. 고시폐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파악할 필요가 있었음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설득

-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할 경우. 그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실제로 그러한 사례는 금념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수입쇠고기 파동에서도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무리하게 고시페지를 추진하지 않고 고시페지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사 항을 미리 파악하여 관련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석유제품유통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해 고시를 폐지하는 것임을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간담회 참 석과 각 소비자단체 등을 방문하여 설득하고 협조를 구함으로써 소비자단체 등과의 불필요한 마 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고시폐지에 대한 홍보

●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가 폐지되면 주유소에 부착된 석유정제업자의 폴이 철거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었으나. 이는 고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 이었음. 고시폐지 이후 고시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시의 내용. 폐지 배경 및 효과 등에 대해서 언론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자 적극 홍보하였음

고시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및 시행

● 고시폐지 이후,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가 혼합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판매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 광고 방법을 마련하여 이를 관련 업계에 통지함으로써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고시폐 지 이후에도 주유소에서 복수의 석유정제업자 제품판매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하고. 그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하였음

3. 추진과정 및 내용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의 내용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이라 함)」제3 조(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유 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 시한 것으로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소에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게시 한 경우, 해당 석유정제업자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었음

◇ 고시에 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 1.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2.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 관고 하는 행위
- 3. 하나의 영업장소에서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각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명확히 구분 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
- 4. 기타 실제 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표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

규제개혁 방안

●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의 모든 주유소들은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게시하고 해당 석유정제업자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음. 이처럼, 주유소에서 하나의 석유정제업자 제품만 을 판매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석유 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의 존재도 그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 이 있었음. 이러한 지적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게시한 주유소에서도 상표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임

추진 경과 및 추진 내용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들 을 규정하고 있어 그 동안 양 업계간에 고시우용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들 양 업계로부터 고시폐지와 관련하여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고시 폐지시의 문제점. 제도적 보완점 등을 파악하고. 고시폐지의 효과가 극대활 될 수 있도록 하였음

내부 전문가 토론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는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동 고시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고시폐지에 대한 부정적 인 의견이 많았음. 특히.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실제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처럼. 고시폐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를 폐지할 경우. 소비자 등 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차례 국·과장 회의 및 내부 전문가 토론을 개최하 여 고시폐지시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고시폐지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음

표시광고심사자문회의 개최

●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유용함에 있어 발생되는 애로사항 및 표시·광고 공정화 정책수립에 필 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표시광고심사자문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를 폐지하 는 과정에서도 표시광고심사자문회의를 두차례 개최하였는데

- 첫 번째 회의에서는 고시폐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폐지시의 효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논의 하였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관계 부처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자문위 원들과 직접 고시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였음
- 표시광고심사자문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석유제품유통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를 위 해서 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위원들은 고시 폐지시 주유 소에서의 혼합제품 판매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고. 폐지시의 혜택이 주유소에만 귀속될 염려가 있다며 고시폐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음

주유소 선택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는 그와 같은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정책 수립 및 변경시 고려한 자료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받이들이고 거기에 적극 동참할 것 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먼저 주유소 선택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자료를 근거로 고시가 여전히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하고자 하였음
- 주유소 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조사결과. 조사대상 소비자들의 주유소 선택에 있어 가장 큰 고려 요인이 되는 것은 가격이고. 제품의 품질과 석유정제업자의 상표 이미지는 고려요인으로서 그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었음

[주유소 선택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 구분 | 질의 항목 | 응답 비율(%) |
|--------------|---------------------------|----------|
| | · 가격 | 56,6 |
| | · 위치 | 14.8 |
| | · 사 은품 등 부대서비스 | 8.6 |
| 특정 주유소 선택 이유 | · 카드할인 | 10.0 |
| | · 품질 | 5.0 |
| | · 브랜드 이미지 | 3.4 |
| | · 기타 | 1.6 |

● 이와 같은 주유소의 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근거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 해 고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정유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을 설득하고 이들의 협조를 구하 였음

추진 상 애로 및 문제점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는 제정 당시부터 고시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으나.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명분하에 그대 로 유지되어 왔음
- 이러한 고시를 폐지한다고 하자. 처음에는 정유업계. 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 특히.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의 폐지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유업계와 주유업계의 영업행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사항으로써 양 업계가 고시폐 지 추진에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고시폐지를 추진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석유정제업자나 소비자단체 등을 설득하여 고시폐지를 적 극 추진하였음
 - 첫째, 주유소가 혼합판매한 제품의 품질상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하여 피해구제가 곤란하다는 것임
 - 그러나 고시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도 주유소에서 구입한 석유제품의 품질상 문제로 소비자피 해가 발생시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한 주유소에 있기 때문에 고시가 폐지됨으 로 인하여 갑자기 그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여지는 없음을 설명하였음. 특히. 석유정 제 업자와 주유소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보면 주유소는 제품의 품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품을 인수할 때 석유정제업자에게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 인수시 발견할 수 없는 품질의 하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7~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도록 규 정되어 있음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음
 - 더욱이,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둘 이상의 석유제품을 서로 혼합하더라도 이로 인한 품질상의 문 제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음을 지경부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고시폐지 근거자료 로 적극 활용하였음
 - 둘째, 고시가 폐지될 경우 석유정제업자들이 제휴카드 할인혜택 및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고시폐지 이후에도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에서는 해당 석유정제업 자의 제품을 별도 구분·판매할 것이므로 석유정제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판매증대를 위해 제

휴카드 할인혜택이나 포인트를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실제로,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가 타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혼합판매 하더라도 주유소에 설치된 일부 주유기 로 한정하여 판매할 것이고,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에 표기된 석유정제업자의 것을 구 분·판매할 것이므로 해당 석유정제업자로서는 자사 제품 판매분에 대해서 카드할인 등의 혜 택을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함

- 셋째, 석유정제업자들은 혼합판매 물량이 증가할 경우 품질수준을 높일 유인이 낮아짐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음
- 그러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석유제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서 정한 품질기준 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품질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혼합판매의 증가에 의한 품질저하 로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지경부로 부터 확인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함
- 더욱이, 석유정제업자들은 현재도 실질적인 품질경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고시가 폐지되었다. 고 하여 품질수준이 갑자기 낮아질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실제로 석유정제업자들은 서로 제품 교환(약 30~50%)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경쟁을 해야 할 유인이 낮다고 볼 수 있음

문제 해결과정

- 정부가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기관 등을 접하는 경우는 매 우 많은데,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이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 나. 이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배경에 대한 진솔한 설명과 충분한 토론 및 설득을 통해 이들이 변화된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함
- 이번 고시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의 토론을 거쳐 고시폐지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업계의 협조를 얻어 낼 수 있었음. 특히. 그러한 제도적 보완 사항은 당초 고시폐지를 추진시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써 소비자단체 등과 수차례 가진 토 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 고시폐지에 따른 제도적 보완: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혼합판매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주유기 등에 표시하도록 '부당한 표 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를 개정·보완하였음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개정 내역

사.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하나의 영업장소에서 A, B, C 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B, C 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하지 않고, 마치 A석유정제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A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또한 고시폐지가 확정된 이후에는,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에서 혼합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표시 · 광고함에 있어 정유업계와 주유업계간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양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근거로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서의 표시광고 방법을 마련하여 이를 관련업계 등에 통지하였음

◇ 주유소에서의 혼합판매 표시·광고 방법

1. 표시 내용 : '혼합판매'

2. 표시 장소: 가격표시판, 캐노피 등 외부 장소 및 주유기

3. 글자의 크기 및 주유기 색깔

○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기한 주유기에 기재된 글자의 크기와 동일하고, 당해 주유기의 색깔과 구별될 것

4. 정유사 제휴카드 할인혜택 미제공시 그 사실 표시

4. 종합적 성과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가 제정된 1992년 4월부터 폐지된 2008 9 1 까지 16년 동안 고시 폐지 요구와 관련하여 정부와 정유업계. 주유업계간의 지속적인 갈등이 있어 왔으나. 이번 고시 폐지로 인하여 그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석유제품 유통시장은 수직계열화와 수평거래 금지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간 경쟁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간의 경쟁이 활 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고시폐지로 인하여 특정 석유정제업자들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에서도 그와 다른 석 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이처럼, 하나의 주유소에서 복수의 석유 정제업자 제품을 판매하기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그러 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를 소비자들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현재 석유제품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수평 거래금지제도의 폐 지와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이 이루어질 경우. 고시의 폐지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5 향후 추진계획

- 공정위는 이번 고시폐지로 인하여 주유소들이 복수의 석유정제업자와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 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정제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복수 거래를 하는 주유소가 생겨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를 적극 시정할 계획임
 - 더불어, 주유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복수의 석유정제업자와의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 등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임
 - 실제로, 공정위는 고시폐지 이후에도 복수의 석유정제업자와 거래하는 주유소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간에 체결한 배타조건부거래 계약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 하고. 현재 배타조건부 거래 계약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음



>>> 제14절 국내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요약

1.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세입여건의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류업체 및 납세자들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객중심의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구축하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대두

2. 추진내용

- 종합주류도매면허 신청자에 대해서 추첨대상자 선정전까지 체납세금 완납시에는 면허 거부 대상에서 제외
- 수입주류전문도매업과 특정주류도매업의 두 가지 면허를 병행하고자 하는 업자의 창고면적 기준을 '99m²이상' 에서 '66m²이상' 수준으로 완화
- 주류판매면허 신청서를 검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를 폐지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
 를 이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증빙서류 직접 수집 · 확인
-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장뿐만 아니라 동일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완화
-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이외 주종은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제외
-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주류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별 원료 · 첨가물료 제한 완화
- 특정주류 중 탁주, 약주 뿐 아니라 '청주'에 대하여도 주류 용도별구분표시에서 제외
- 주류제조자가 계열사 또는 타 회사 채무지급보증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3. 종합적 성과

 주류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주류관련 규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FTA체결 등 주류시장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 하고,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내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1. 추진 배경

행정환경의 변화

•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기존 산업사회에서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표준화', '통제와 규제'에서 '다양성',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경직된 관료제 조직도 민간기업과 같이 국민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도 세수확보라는 기본적 역할에서 더 나아가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세입여건의 악화

최근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 7.2%로 UN기준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지급액 증가, 노인의료비용 증가 등 복지재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조세수입 징수여건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청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세입징수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 경제개방화로 인한 세정의 역할 강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경제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국제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세회피를 감시하여 국부를 지키면서도 적극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등 국세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 규제개혁 추진계기

• 주류산업의 특수성

주류에 대한 정부의 산업규제정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허제 또는 전매제 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면허제를 채택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규제적 성격이 강한 산업분야라고 볼 수 있다.

- ※ 대부분 국가 면허제. 독일 전매제(주정). 미국 18개주 전매제(판매분야)
- 행정화경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 요구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세입여건의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온 주류업체 및 납세자들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객중심의 친기업적 세 정화경을 구축하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FTA등 개방화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거래기준과 제조방법에 대한 통일적 기준 등의 요구 가 증대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규제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주류분야에서도 전면적으로 규제개혁 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2. 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목 표

-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로 - 세계에 우뚝 서는 초일류 국세청 실현

2) 방향

고객섬김

납세자를 진정한 고객으로 섬김으로써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 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정착

경쟁과 평가, 자율과 분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열정적이고 창의적 업무수행을 유도함으로써 세 정 전 분야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

가치창출

권위적 관료제 조직을 고객 지향적 경영 관리조직으로 탈바꿈하여 국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충 족시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주요 정책집행 결과를 평가·환류

3) 중점전략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

- 기업현장 순회간담회 개최. 기 업친화적 개혁과제 발굴
- 일자리창출 뒷받침
- 기업불편 해소, 편의 증진
- 어려운 기업 세정지원

고객중심의 창조적 혁신

- VOC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6시그마로 과세불량 축소
- 관료제적 업무관행 청산, 일버 리기를 통한 예산절감
-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성과중심의 문화 정착

- 성과 · 가치중심 업무수행
- 성과지표 개선, 공정한 평가시 스템 구축
- 질 우선의 규제 개혁 추진

비전 및 목표의 설정 - 초일류 국세청 실현을 목표로

● 국세청은 변화된 행정환경에서 고도의 윤리의식과 창조적 혁신. 사회적 공헌 등을 통해 지속가능 한 국민 신뢰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의 가치로 확고히 정립시켜 나가면서, 그간의 세정 운영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분야는 더욱 더 보완하여 세 정 각 분야에서 세계 초일류 수준 달성을 국세청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세행정 방향 및 중점 실천과제

• 국세행정 방향

납세자는 예전처럼 그저 세정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겸허하게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할 고객입니다. 납세 자를 진정한 고객으로 섬김으로써 기업은 마음 놓고 사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한상률 국세청장 신년사 중에서-

국세청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납세자를 진정한 고객으로 섬기고 기업들 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국세행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고객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편의적 입장 이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 가치창출 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경쟁과 평가의 워리를 바탕으로 창의적 · 성과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점 실천과제

"고객섬김, 성과지향, 가치창출"의 세정 운영방향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중점 실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친기업적 세정 환경 조성
-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부담 최소화, 국내외 기업 불편해소로 경제 활성화 뒷받침
- 고객중심의 창조적 혁신
-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 6시그마 운동을 통하여 세정 전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가치창출 · 성과 중심의 과제 추진
- 量보다 質우선의 규제 개혁 추진으로 납세자 부담의 실질적 감소

3. 규제개혁 추진 노력

규제개혁 방안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로-세계에 우뚝 서는 초일류 국세청 실현

납세자를 진정한 고객으로 섬김으로써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이행실태 주기적 모니터링

규제개혁 교육 및 성과 홍보

국세행정의 방향을 세수확보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 '납세편 의 제고' 관점으로 전화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완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실용적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규제개혁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고. 납세자 및 현장 실무자 등을 통하여 납세자 요구사항을 수 시로 수렴하여 실질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선정된 과제는 그 이행실 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직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납세자 입장에서의 규제개혁 추진을 일상화하도록 하였으며,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언론보도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규제개혁의 효과를 증가시켰다.

- 주류분야 규제개혁 T/F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 기업치화적 세정환경 조성과 국내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규정 정비를 위 해 규제개혁 T/F팀 구성
 - 일선 직원 및 주류업계 실무자로부터 현장감있는 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본·지방청 뿐 아니라 일선 실무자 및 주류업계 종사직원으로 T/F 구성



-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혁 과제 상시 발굴
 -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 다양한 내용의 의견을 수집하고 불만 유형별 · 원인별 · 납세자 유형별로 상시 분석하여 법 ·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
 - 시장중심의 개혁과제 발굴을 위하여 주류공업협회 등 9개 협회 및 (주)진로 등 5천여 개 주류 제조·판매 기업 대상으로 주기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 관련 국·실 검토 및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 선정
 - 추진실적 중간점검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과제추진 일정 준수 여부 및 타당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규제개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15회에 걸쳐 외부단체 및 내부직원 4,200명에게 규제개혁 관련 교육 실시
 - '청주에 대한 용도구분표시제 폐지', '판매기록부 작성 의무 폐지'등 규제개혁관련 주요성과를 적극 홍보



- 규제개혁 부작용 관리
 - 규제정비계획 수립시 규제완화에 따른 주질저하·유통질서문란·부정주류 난립 등 예상 부작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
 - 규제정비 추진시 부작용 발생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본 · 지방청. 일선세무서를 통한 수시모니터링 실시

- 유통주류 주질 분석, 주류 제조장 순화점검 등 주질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
- 용도위반 주류단속, 할인매장 주류 과다구입자 점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실태점검
- 주류구매전용카드 전산분석시스템 및 주류면세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Upgrade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분석 고도화
- 수시모니터릿 결과 문제 밤생시 규제개혁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응방안 마련
 - 기업·국민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완화하되. 국민의 보건위생 확보를 위한 사회 적 규제는 합리화 유도



주요 추진 내용

• 주요 규제개혁 내용

주류 면허 분야

- 주류관련 면허 신청 당시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주류 면허를 거부하도록 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23)하고 있었으나.
 - 면허신청당시 신청인이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소액체납을 일시적 착오로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면허신청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과도한 행정규제로 납세자 불편 초래
- ⇒ 종합주류도매면허 신청자에 대해서 추첨대상자 선정전까지 체납세금 완납시에는 면허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 도록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심사요령' 개정, 체납자의 주류면허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요건 완화

-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자가 특정주류도매업을 병행하고자 할 경우 창고면적 99㎡이상을 갖추 도록 제한(주세법시행령§9① 및 주세사무처리규정§12)하였으나
- 영세한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창고면적 99m²를 갖추는 것이 어려워 시장진입 장애요인으 로 작용
- ※ 창고면적: 수입주류전문도매업 66m², 특정주류도매업 33m², 수입전문·특정주류 병행시 99m²
- ⇒ 수입주류전문도매업과 특정주류도매업의 두 가지 면허를 병행하고자 하는 업자의 창고면적 기준을 '99m' 이상'에서 '66㎡이상' 수준으로 완화
- ※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주류수출입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수입주류를 공급받아 도매할 수 있는 면허
- ※ 특정주류도매업면허: 민속주, 탁주 및 약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면허
- 주류판매면허 신청서를 검토할 경우 판매장 설치장소가 건축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지방 자치단체에 의견조회 하도록 하였으나.
- 지방자치단체 회신이 늦어 면허발급기간 장기화(평균 면허발급기간 약 1개월 소요)
- ⇒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를 폐지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를 이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증빙서류 직접 수집 · 확인

주류 판매 분야

-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된 맥주름 그 영업장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
 - 일반 대규모 회사의 제조맥주보다 소비자의 접근이 어렵고. 수입맥주 증가로 인한 시장잠식 으로 소규모맥주 제조업체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음
 - ⇒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장뿐만 아니라 동일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서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맛의 맥주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경영지 원 효과

- 할인매장용 주류의 무자료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기준량 초과구입자의 인적 사항과 구입내역을 작성 ·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 주요 주종(맥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이외에는 '할인매장용' 이라는 별도 표시 폐지되었으므 로 판매기록부 작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구매자의 개인정보 및 신분노출에 따른 민원을 초 래하고, 별도 대장 작성 등으로 사업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 야기
 - ⇒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이외 주종은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제외하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 규제개혁 前 | | |
|---------------------------|--|--|
|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대상 : 소주 등 전 주종 | | |
| 총 11개 | | |

규제개혁 後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대상: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총 11개 총 4개

주류 제조 및 기타 분야

- 주류의 종류별로 첨가할 수 있는 물료.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을 세분화하여 주류제조 규 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 주류 규격제한은 기업의 다양한 주류 개발 및 품질개선을 고란하게 하여 국내 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음
 - ⇒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주류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별 원료 · 첨가물료 제한 완화

◇ 규격제한 사례

- 청주와 약주는 주류 제조방법이 유사한 주종이지만 발효제로 사용되는 누룩 사용량에 따라 약주와 청 주로 주종을 구분
- 탁주와 약주도 제조방법이 유사하지만 여과의 정도에 따라 여과하지 않은 경우는 탁주로, 맑게 여과하 면 약주로 주종을 구분
- 주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주류 거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류 용도구분 표시제를 실시하 고 있음
 - 특정주류도매업면허업자 취급 주종(탁주·약주·청주 등) 중 '청주'에 대해서만 용도별 구분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어 주종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으며 청주 제조자의 물류비용 이 과다하게 소요

- 소주·맥주·위스키·브랜디는 가정용/할인매장용/면세용/유흥용으로 구분
- 탁주·약주·민속주·농민주는 용도구분 표시 제외
- 그 외 주종은 가정용/면세용/유흥용으로 구분
- ⇒ 특정주류 중 탁주, 약주 뿐 아니라 '청주'에 대하여도 주류 용도별구분표시제 제외하도록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였음
- 주세는 출고지에서 과세되는 고(高)세율(주세:5~72% 교육세:주세의 10~30%)의 세목으로 주 류 제조사의 재무 건전성이 특히 요구되므로. 주류제조자가 계열사 또는 타 회사 채무지급보증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였으나.
- 사업자의 자유로운 재무적 판단에 의한 경영 활동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 과도한 경영활동 제한이라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계열사 또는 타 회사 채무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기업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주요 규제개혁 추진 결과

주류 면허

- · 주류 면허신청시 체납거부요건 완화
- ·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자의 창고면적기준 완화
- · 주류판매면허 검토시 자치단체 의견 조회 생략

주류 판매

- · 소규모맥주의 외부반출 허용 등 판매방법 완화
- · 주류판매기록부 작성대상 축소

주류 제조 및

- · 주류제품 규격완화
- · '청주'에 대한 용도별 구분표시제 폐지
- · 주류제조자의 채무지급보증 사전승인제 폐지

추진 경과 및 과정

● 일선 세무서 및 주류업계 규제완화 의견 수렴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주세 관련 주요 규제에 대한 의견을 현장 실무자 및 협회를 통해 수렴

◇ 주요 개선의견

- 소규모 맥주의 판매 방법을 완화하여 제조장 외에서도 판매 가능하도록 할 것
- 주류제조자의 채무지급 보증시 사전 승인 절차 완화
- 다양한 주류 개발을 위하여 주류제품 규격 완화
- 자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본·지방청·세무서 및 주류업 종사직원으로 구성된 T/F회의를 통해서 자체 규제개혁 과제 도출

◇ 주요 개선의견

-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창고면적 기준 완화
- 청주에 대한 용도별 구분표시제 폐지
-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대상 축소
- Town meeting을 통해 업무개선 아이디어 도출 2008년 3월 22일 Town meeting을 개최하여 주세 및 소비세 관련 분야 업무개선 아이디어 도출





◇ 주요 채택 아이디어

- 주류 면허신청시 체납 거부 요건 완화
- 면허 신청서 검토시 장기간 소요되는 지자체 의견조회 절차 폐지

• 현장 방문 및 사업자 의견 청취

연초 업계의 의견수렴 결과 제시되었던 '소규모 맥주제조장 외부반출 허용 개선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 맥주 제조장 현장을 방문(3회, 2월~3월)하여 사업자 의견 청취

- 협의 과정에서 소규모 맥주의 외부반출 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시되었고, 규제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중 검토

◇ 주요 개선의견

- 외부반출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주질관리 방안
- 일반적 회사 제조 맥주와의 형평성 있는 세원관리 방안 필요

• 규제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

T/F 회의를 통해서 수집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관련 규정 및 고시 등 개정 추진. 특히 소규모제조맥주 판매방법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에 집중

◇ 부작용 보완 방안

- 제조장내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과·살균하거나 제조장외 판매장으로 유통·보관시 냉장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
- 소규모 맥주제조장에서 맥주를 외부로 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맥주 제조자와 같이 납세증표 등 납세 증명표지를 첨부하여 출고하도록 함으로써 주세 세원관리 강화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과정

• 추진상 문제점

여과 살균하지 않은 소규모제조맥주의 외부 반출 허용은 소규모맥주 제조사의 경영수지를 개선 하고 수입맥주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국내 맥주 시장의 숨통을 트여 준다는 측면에서 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 그러나 규제 완화시 소규모제조맥주는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주류 음용에 따른 소 비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살균 · 여과시설 및 유통관리를 위한 냉장설비 구축이 필요

⇒ 해당 제조사에게 또 다른 비용 부담을 주게 되어 업계의 반발

• 해결방안

현장방문 및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하여. 소규모 맥주 외부 반출시 주질 관리를 위한 조치들은 추가 적 비용이 들지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규모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소규모 맥주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요건임을 강조하여 주류제조사들의 합의 도출



소규모 맥주는 자연침전에 의하여 여과하므로 유통 중 맥주에 함유된 단백질, 효모 등에 의하여 혼탁현 상이 발생, 부유물의 침전으로 앙금이 생기면 소비 자들이 불량 맥주로 오인할 가능성

효모를 제거하지 않고 살균처리 하지 않은 생맥주 형태로 판매되므로 보존기간이 짧아 유통, 판매과정 에서 냉장 안하면 잡균오염 가능성이 높아 쉽게 변 질되어 소비자 외면

국민보건 뿐 아니라 소규모 맥주 경쟁력강화를 위해 보완조치는 꼭 필요

4. 종합적 성과

추진성과

• 규제개혁 전 · 후의 변화

주류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주류관련 규제 정비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FTA체결 등 주류시장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 정 환경 조성

• 주요 과제별 추진 성과

| 구 | 분 | 과 제 명 | 주요 성과 |
|---------------------|---|---------------------------|------------------------------------|
| | 1 | 주류 면허신청시 체납거부요건 완화 | 세금 완납자에 대한 면허신청 허용으로 기한이익 부여 |
| 주류 면허 | 2 |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창고면적 기준 완화 | 경영수지 개선 및 특정주류 병행 유도로 전통주 판매 확대 |
| | 3 | 주류판매업면허 검토시 '지자체 의견조회' 폐지 | 처리기간 단축으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 주류판 | 1 | 소규모제조맥주 판매방법 완화 | 소규모맥주 제조자 매출증대 등으로 경영지원 |
| 매관리 | 2 | '주류판매기록부'작성 대상 축소 | 할인매장의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대상 축소로 업무량 감소 |
| 주류 | 1 | 주류제품 규격 완화 | 다양한 주류 개발 및 품질개선으로 국내주류 경쟁력 강화 |
| 제조 관리 · 기타 | 2 | '청주'에 대한 용도별 구분표시제 폐지 | 청주 제조자의 물류비용 절감 |
| | 3 | 주류제조자의 채무지급보증 사전승인제 폐지 | 경영활동 제한 완화로 기업 자율성 보장 |

주류 면허 분야

- 주류 면허신청시 체납거부요건 완화
 -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면허 조사시까지 완납할 경우 면허거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한 이익 제공하고 체납미인지자 · 소액체납자 면허신청 허용으로 민원해소
-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창고면적 기준 완화
 - 수입주류전문도매업과 특정주류도매업 병행시 창고면적 기준을 '99m²이상' 에서 수입주류전 문도매업 면적 기준 수준으로 완화하고,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특정주류도매업 병행 가능 하게 함으로써 전통주 판매 확대
 -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경영수지 개선
- 주류판매업면허 검토시 '지자체 의견조회' 폐지
- 면허신청시 처리기간을 약 10일 단축함으로써 면허신청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 ※ '07년 면허신청 971명(종합주류 590, 특정주류 236, 수출입 131, 중개 14)

| 구분 | 의견조회 폐지 前 | 의견조회 폐지 後 |
|--------|-----------|--------------|
| 면허처리기간 | 30일 | 20일 (약 10일↓) |

주류 판매 분야

- 소규모제조맥주 외부반출 허용
 - 소규모제조맥주의 외부반출 허용으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맛과 향의 맥주를 쉽게 마실 수 있게 되었음
 - 소규모맥주 제조자(93명, '08.1.1현재)는 소규모맥주제조·판매를 위한 제조 설비를 추가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설비를 활용하여 판매량을 늘림 수 있게 됨으로써 매출 증대에 기여

[비용절감 효과] '08. 1. 1

| | 소규모 맥주제조자 | 제조설비 비용 | 비용절감 효과 |
|---|-----------|---------|-----------|
| 계 | 93명 | 5억 | 46,500백만원 |

- 할인매장용 용도구분표시제 제외 주종에 대한 판매기록부 작성의무 폐지
 - 주류 구매시 신부확인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불필요한 서류 작성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본연의 판매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 경 조성

주류 제조 및 기타 분야

- 주류 규격 완화(첨가물료 확대)
 - 주류 규격 규정을 완화하여 다양한 주류 개발 및 품질개선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밀맥주·와 인 등 수입 주류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고 국내 주류의 세계 경쟁력 강화
- 청주에 대한 용도구부표시제 폐지
 - 탁주. 약주와 같이 청주도 용도구분표시제를 폐지함으로써 특정주류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주 제조자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경영수지 개선 지원

● 업무개선 효과

-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증빙서류 직접 수취로 업무 부담 감소
 - 주류 면허 검토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등을 이용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 인원 등의 증빙서류를 수집함에 따라 업무 절차 간소화
- 종사직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 기존의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 무 개선 및 과제 발굴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종사직원의 의식 제고

규제개혁 성공요인: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 납세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주류관련협회 및 주류제조·판매시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청취·개선의견 수렴하여 주류 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사항 반영

- 타운미팅 등을 통하여 실무 직원대상 규제완화 업무개선 아이디어 공모하여 추진
- 수집되 의견은 규제완화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
- 기업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선의견 반영여부 검토
- 사업자간 형평성, 납세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제도개선에 따른 예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 병행
-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관련협회와 의견교환 및 협의를 거침으로써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 고. T/F팀 회의를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5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최상의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 순회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기업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계속발굴하고, '08년 7월부터 도입된 고객의 소리(VOC)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더 다양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수집.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특히. 주세분야에서도 이번의 규제개혁 성과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의 규제 개혁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임.

• 주류 규격 다양화 및 완화

주종별 특수성을 유지하고 주류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주류 생산 이 가능하도록 제조 원료 및 첨가물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류 규격의 다양화 도모

• 주류의 구입과 판매경로 규제 완화

전통적으로 주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류의 제조와 판매에 있어 면허제를 채택하고 주류제조 자와 판매업자의 면허유형별로 판매범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매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

이와 동시에 주질 관리 및 국민 보건의 안정성 등을 위한 보완책들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규제완 화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규제완화의 효과를 향유하는 기업과 전체 국민의 편익은 극대화



제15절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인력지원 개선

요약

1. 추진배경

-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 전문연구요원 지원인력 활용에 제약이 많고, 병역지정업체 장의 경미한 행정처리 미숙·착오에 대한 불이익이 크며,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인력지원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제도 개선 추진

2. 추진내용

- 하나의 업체 내에 여러 개의 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병무청장이 연구소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기 전에 업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연구소별로 인원배정 하도록 절차를 개선
- 국내에서 병역 비지정업체와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파견범 위 확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업체장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신분을 박탈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하던 것을 다른 업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완화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09년 인원배정부터 기업부설연구기관에 배정되는 1,500명 중 대기업 배정비율을 20%로 낮춰 300여명을 배정하고,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80%로 높여 1,200명을 배정
- 대기업 등 중소기업 외의 업체에서 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한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제한기간을 폐지

3. 종합적 성과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등에 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도 중소기업으로 전 직을 쉽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업체의 기술력, 생산성 제고에 기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인력지원 개선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란?

제도개요

-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 1973년 부터 시행되었다.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으로 지정업체에서 연구분야에 36개월, 산업기능요원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충역 은 기술자격 없이)으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분야에 34개월(보충역은 26개월) 동안 의무종사 하여야 한다.

복무인원: 7,640개의 업체에 33,617명이 복무

전문연구요원은 기업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등 1,362개 지정업체에 6,842명, 산업기능요원은 기간 산업체 등 6,278개 지정업체에 26,775명이 복무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관리현황]

('08.9.30. 현재)

| 7 8 | ᅰ | 기업 | 부설 | 대학 | 방위 | 특정 | 정부 |
|------|-------|-------|-------|-------|-----|-----|------|
| 구분 | 711 | 대기업 | 중소기업 | 연구 | 산업 | 연구 | 출연 등 |
| 업 체 | 1,362 | 303 | 776 | 149 | 11 | 19 | 104 |
| 복무인원 | 6,842 | 1,655 | 1,774 | 2,121 | 107 | 964 | 221 |

[산업기능요원 관리현황]

('08.9.30. 현재)

| 7 H | 741 | 공 업 | | 기사 | 건설 방위 | | Fold |
|------|--------|-------|--------|-----|-------|----------|------|
| 구 분 | 계 | 정보처리 | 제조 | 건설 | 산업 | 해운 수산 | 농어업 |
| 업 체 | 6,278 | 537 | 5,498 | 43 | 83 | 117 | _ |
| 복무인원 | 26,775 | 1,745 | 21,447 | 112 | 508 | 2,194 | 769 |

경제적 기여도: 연간 10조 6천억(GDP의 1,48%)

• 2004년 9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에서 2조원, 산업기능요원에서 8조 7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금액은 우리나라 연간 GDP의 1.48%에 달하는 액수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2003년)]

(단위 : 백만원, %)

| 구분 | | 총창출효과 | | 직접창출효과 | | | | |
|-------|-----------|-----------|------------|-----------|-----------|-----------|--|--|
| TE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합 계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합 계 | | |
| 제 조 업 | 7,039,739 | 1,881,000 | 8,920,739 | 2,679,633 | 941,618 | 3,621,251 | | |
| | (82,0) | (90.4) | (83.6) | (82,2) | (90.4) | (84.2) | | |
| 정보처리 | 634,973 | 108,809 | 743,782 | 444,522 | 53,455 | 497,977 | | |
| | (7.4) | (5.2) | (7.0) | (13.6) | (5.1) | (11.6) | | |
| 기 타 | 912,980 | 90,955 | 1,003,935 | 135,750 | 46,489 | 182,239 | | |
| | (10.6) | (4.4) | (9.4) | (4,2) | (4.5) | (4.2) | | |
| 합 계 | 8,587,692 | 2,080,765 | 10,668,457 | 3,259,907 | 1,041,561 | 4,301,468 | | |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Ⅱ. 추진배경

전문연구요원 지원인력 활용에 제약이 많다

●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된 인원범위 내에서 업체장과 의무자간의 자유로운 근로 계약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로써 업체장의 책임 하에 자유로운 파견이 가능해야 하나 병역지정업 체로 선정된 업체가 아니면 파견을 보낼 수 없어 효율적 연구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

[전문연구요원의 국내외 파견근무 허용범위 비교]

| 7 8 | 그이어해 | 국 내 파 견 | | |
|------|---------|---------|-------|--|
| 구분 | 국 외 여 행 | 지정업체 | 비지정업체 | |
| 공동연구 | | 0 | X | |
| 기술연수 | 허 용 | X | X | |
| 기술지도 | _ | 0 | 0 | |

● 전문연구요원은 연구소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에 여러 개의 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인원배정 후에 업체의 인력채용계획에 변동이 생 겨도 한 업체내의 연구소별로 배정된 배정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별 배정인원을 자유롭게 전환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일 법인내 기업부설 연구기관 운용 현황]

| 1711 | 2−57∦ | 6−107∦ | 11개 이상 |
|-------|-------|--------|--------|
| 1,050 | 31 | 5 | 2 |

경미한 행정처리 미숙 ·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다.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워 및 산업기능요원이 퇴사, 결근 등으로 해당업체에 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 해야 하고, 복무관리를 위해 복무기록표 등에 복무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

나 지연한 경우 고발, 경고, 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처분내용에 따라 신규 채용 및 일정기간 인원배정을 제한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처리 미숙 또는 착오로 인한 경미한 관리부실임에도 그에 따르는 불이익이 너 무 크다.

[지정업체 행정처분 현황]

() 행정처분별 총계에 대한 비율

| 구 분 | 7 8 | | | 계 | | | 타분야 · 업체 근무 | | | 신 | 상이동통 | 보 위반 등 | <u>=</u> |
|-----------|-----|----|-----|-----|---------------|--------------|---------------|---------------|---------------|--------------|---------------|---------------|----------|
| TE | 소계 | 고발 | 경고 | 주의 | 소계 | 고발 | 경고 | 주의 | 소계 | 고발 | 경고 | 주의 | |
| '08.9.31 | 601 | 21 | 178 | 402 | 141 (23.5) | 19 (90,5) | 68 (38,2) | 54 (13.4) | 460 (76.5) | 2 (9.5) | 110 (61,8) | 348 (86.6) | |
| '07.12.31 | 675 | 53 | 262 | 360 | 288 (42,7) | 47 (88.7) | 116 (44.3) | 125 (34.7) | 387 (57.3) | 6 (11.3) | 146 (55.7) | 235 (65.3) | |
| '06.12.31 | 695 | 28 | 311 | 356 | 257 (36.9) | 17 (60.7) | 133 (42.7) | 107 (30.0) | 438 (63.1) | 11 (39.3) | 178 (57.3) | 249 (70.0) | |

※ 복무관리 부실에 따른 행정처분 중 신상이동통보 위반 등 행정처리 미숙 또는 착오에 의한 경우가 전체 처 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경미한 주의 처분의 경우 전체 주의처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

● 전문연구요워 및 산업기능요워은 업체장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로서 업체장의 지시 에 불복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전 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하 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다.

[업체장의 부당지시에 의한 복무위반자 행정처분 현황]

('08.9.30. 현재)

| 계 | 편입취소 | 연장종사 | 경고 |
|-----|------|------|-----|
| 356 | 36 | 205 | 115 |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인력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근무환경 등이 열악함에 따라 연구인력채용이 어려 운 상황이나, 오히려 전문연구요원 업체당 배정인원은 대기업에 비해 적어 연구인력난이 심화되 고 있다.

['08년 인원배정 현황]

| 구 분 | 계 | 대기업 | 중소기업 | 대 학 | 방위산업 | 국공립등 |
|-------|-----------------|---------------|---------------|---------------|--------------|---------------|
| 업 체 수 | 1,559 | 336 | 911 | 163 | 11 | 138 |
| 배정인원 | 2,500 (1.60) | 623 (1.85) | 880 (0.96) | 618 (3.79) | 51 (4.63) | 328 (2,37) |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지원되는 배정인원을 감축하여 중소기업 배정인원 을 확대하고, 전문연구요워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전직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력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전문연구요원의 1년 6월 경과 사유 전직자 현황]

('08.9.30. 현재)

| 전직후 | 계 | 중소기업 | % | 대기업 | % | 기 타 | % |
|-------|-----|------|------|-----|------|-----|------|
| 계 | 222 | 114 | 51.4 | 76 | 34.2 | 32 | 14.4 |
| 중소기업 | 144 | 93 | 64.6 | 42 | 29.2 | 9 | 6.2 |
| 대 기 업 | 71 | 21 | 29.6 | 33 | 46.5 | 17 | 23.9 |
| 기 타 | 7 | 0 | 0 | 1 | 14.3 | 6 | 85.7 |

※ 대기업의 경우 전직을 통한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적음

3. 추진방향

추진목표

-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인력 지원체계 구축
- 산업지원제도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및 병역의무자의 만족도 제고

추진전략

● 규제개혁을 통해 병역지정업체의 지원인력 활용도 제고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워의 권익을 보호한다.

업체의 인력채용계획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 여하고, 복무관리 및 행정업무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원인력 활용도를 제고, 행정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 피고용인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중단 없는 병역의무이행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강화로 정부의 기술창업활성화 정책을 지원한다.

기술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범 정부 차원에서 추 진하고 있는 기술창업활성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인력지원 을 강화한다.

4. 추진과정 및 내용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과제 발굴

● 병역지정업체 및 병역의무자 1차 의견 수렴: '07년 2~3월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 업지원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배정인원 확대'. '복무관리 관련 규제개혁' 등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 병역지정업체 및 병역의무자 의견 검토: '07년 3~6월

병역지정업체 및 병역의무자 설문조사 결과 제기된 '배정인원 확대'. '복무관리 관련 규제개혁' 의견에 대한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배정인원 확대' 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 단하고 '복무관리 관련 규제개혁' 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산업지원업무 혁신팀 회의: '07.7.31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산업지원업무 혁신팀 회의를 개최하여 '복무관리 관련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4개 과제를 발굴했다.

- 전문연구요원 법인단위 인원배정
-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를 위한 비지정업체 파견 허용
- 행정처리 미숙 등 경미한 복무관리 위반업체 처벌 완화
- 업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 완화
- '복무관리 관련 규제개혁'를 위한 세부과제 검토: '07년 8~11월

산업지원업무 혁신팀 회의를 통해 도출된 규제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법·령 검토 및 구체적인 개 정안을 작성했다.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 협의: '07.11.22

병무청.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방위산업진흥회 등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 관련 18개 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개혁과제 법 · 령 개정안을 협의했다.

● 병역지정업체 및 병역의무자 2차 의견 수렴: '08년 2 ~ 3월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하는복무교육시 규제개혁 세부과제 법 · 령 개정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개혁 추진 내용

•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별 인원배정 절차 개선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는 연구소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가 여러 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각의 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매년 6월 말까지 다음해 전문연구요원 채용 희망인원을 접수받 아 매년 11월에 연구소별로 인원을 배정하였으나.

하나의 업체 내에 여러 개의 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병무청장이 연구소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기 전에 업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연구소별로 인원배정 하도록 절차를 개선 하여

매년 6월, 다음해 전문연구요원 채용 희망인원 신청 후 매년 11월, 연구소별 배정인원이 결정되 기까지 연구소별 인력채용계획이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여 병역지정업체가 연구소 별 전문연구요원 채용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문연구요원의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범위 확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 연구기관이 비지정업 체인 경우도 파견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지정업체가 다른 업체와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상대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할 수 있었으나.

국내에서 비지정업체와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완화하 여 전문연구요원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 업체장의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 완화

병역지정업체에 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연구업무에, 산업기능요원은 생산ㆍ제조 업무를 하여 야 하고 다른 업체로 출장 또는 파견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사전에 승 인을 받아야 함에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업체장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 한 경우 다른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전문연구요워 및 산업기능요워 신분을 박탈하고 현역 또 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하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 하였으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장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채용된 피고용인으로써 업체장의 지시를 어기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신분을 박탈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하던 것을 다른 업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완화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 던 것을 단순 주의 조치로 완화하여.

피고용인 신분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업체장의 위법 ·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과도한 피 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추진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방안 마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방안 검토: '08년 5월

기술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 하고 범정부 차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창업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 문연구요원 인력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확대하고.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 없이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부처 협의 : '08.5.26

기술창업활성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주관으로 해당 부처의 지원 방안을 협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인원배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으로 전직하 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기술창업활성화 정책 지원 방안의 하나로 채택 했다.

● 기술창업활성화 정책 발표 : '08.6.11

정부는 대통령. 정부부처 기관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및 업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제1차 중 소기업 성공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병무 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인력지원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기술창업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확대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을 2.500명 배정하고 있으며, '08년의 경우 기업부설연구기관에 1500여명. 대학연구기관에 600여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400여명 을 배정하였다

기업부설연구기관의 경우 336개 대기업에 623명, 911개 중소기업에 880명을 배정하여 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배정되는 1.500여명을 대기업에 40%. 중소기업에 60%를 배정되고 있다. 이는 대기 업은 업체당 1.85명. 중소기업은 업체당 0.96명이 배정되는 것으로.

전문연구요원 채용 대상자들이 임금. 연구환경 등 근무여건이 좋은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 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 09년 인원배정부터 기업부설연구기관에 배정되는 1.500명 중 대기업 배정비율을 20%로 낮춰 300여명을 배정하고,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80%로 높여 1.200명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으로의 전직제한기간 폐지

전문연구요원은 한 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어. 업체에서는 신규 채용 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 을 전직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전직을 통한 채용이 퇴사보다 많지만 중소기업은 전직을 통한 퇴사가 채용보다 많기 때문에. 배정인원을 신규 채용하고도 1년 6개월이 지나면 대기업 등으로 인력을 빼앗기는 실 정으로.

중소기업이 전직을 통한 채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 등 중소기업 외의 업체에 서 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한 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 무하여야 하는 제한기간을 폐지하고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

추진상 문제점

• 지나친 규제완화는 복무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근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생산ㆍ제조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나

'07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산업기능요원 채용비리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다른 업무 수행. 다른 업체 근무.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업체장이 병역의무자와 결탁하여 고시공부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개인편의를 제공하는 부실근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복무관리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법행위를 한 병역지정업체장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할 경우 제 도를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복무관리 책임이 없는 비지정업체까지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복무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인력지원 확대는 대기업 등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연맹 등 경제계 일부에서는 기업에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무연구요원 총 배정인원의 확대 없이 대기업에 배정되던 인원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배정을 확대하는 것은 급격한 정책변동으로 기업의 인력수급에 혼선을 야기하고.

대기업은 해외 우수인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인재를 확보 하지 못해 해외 우수인재의 탈 한국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대기업의 연구활동을 위축시 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강제적인 배정인원 조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게 된 전문연구요원이 복무만 료 후 대기업으로 이동을 원할 가능성이 매우 커. 중소기업은 수년 동안 기업 내에서 키워온 인재 의 이동으로 인해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추진상 문제점 해결

• 규제는 완화하지만 고의적인 위반행위자 처벌은 강화했다.

전문연구요원을 비지정업체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파견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비지정업체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복무관리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에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만 병무청에서 실 태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전문연구요원 파격시 비지정업체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복무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파겨승인을 취소하여 원소속 병역지정업체로 복귀시키는 등 실태조 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대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축소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기술창업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신정부의 정책을 적극 설명하였다.

현 추진 상황

• 지난 10월 8일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절차 개선을 통해 지원인력을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였고. 공동연 구를 위한 전문연구요원의 파견범위를 비지정업체까지 확대하였고. 전문연구요원이 대기업 등에 서 중소기업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전직제한기간 1년 6개월을 폐지하였고. 업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위반행위를 한 전문연구요워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

5. 추진성과

성공요인

• 민원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규제개혁과제 발굴에 앞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인력을 활용하는 업체와 근무 중인 전 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고객의 목소리를 들었다.

● 지방병무청 실태조사관이 현장을 확인했다.

민원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면서 사무실에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병무청 실태조 사관이 복무실태를 조사하면서 민원의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불편인지, 어떻게 해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혁신팀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

• 규제개혁 과정에 유관기관과 고객이 함께 했다.

혁신팀 회의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관련규정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교육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산업지원제도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고

최종 관련규정 개정에 앞서 다시 한번 업체와 병역의무자에게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 확 인했다.

• 규제개혁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했다.

최종 결정된 규제개혁과제 관련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 법제처 등 관련기관을 찾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개정과정에서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지 연을 최소화 했다.

• 신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같이 했다.

신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창업활 성화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다.

규제개혁 효과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중소기업은 임금. 연구화경 등 근로조건이 대기업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 원에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데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등에 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도 중소기업 으로 전직을 쉽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 기업의 기술력, 생산성이 제고되었다.

공동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파견 범위가 비지정업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연구활동을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연구소별 인력채용계획 변 동시에도 탄력적인 인력채용이 가능해 지고. 각종 신상이동 통보 및 서류 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 이 줄어들어 업체의 기술력, 생산성이 제고되었다.

6. 향후 추진계획

• 민원창구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내용을 교육한다.

본청 및 지방청 산업지원업무 담당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개혁 목적, 내용 등을 교육하여 민 원창구에서부터 실질적인 규제개혁 취지에 맞는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 상시 규제개혁시스템을 구축한다.

병무첫 및 지방병무첫 산업지원 담당 직원으로 구섯된 산업지원업무 혁신팀 회의를 분기마다 개 최하여 민원창구에서 요구된 사항. 지정업체 실태조사관이 복무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확인된 사항 을 취합·검토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취업포탈시스템 내에 운영위원회 컨텐츠 를 통해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을 통해 제기되는 규제개혁요구사항을 실시간 협의한다.

• 산업지원업무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

산업지원제도 이용 고객인 병역지정업체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산업지원 업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우영중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취업포탈시스템 내에 모니터링 컨텐츠를 구축하여 실시간 규제개혁 관련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규제개혁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다.

제 4 장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제16절 온라인 금융민원시스템 개통 및 금융민원센터 개소 제17절 맞춤형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3-Track 심사) 제18절 의약품 허가 심사 체계 개선



PRIME MINISTER'S OFFICE



제16절 온라인 금융민원시스템 개통 및 금융민원센터 개소

요 약

1. 추진배경

• 각종 인허가 및 유권해석 접수·처리 등 금융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불필요한 방문 및 담당부서 탐색 (Search Cost)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

2. 추진내용

•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

- 금융당국의 인허가·등록·유권해석·금융민원 등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인터넷 민원시스템인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개통
- 주요 서비스 내용
- · 금융회사 설립허가 등 인허가, 등록 · 신고, 유권해석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를 온라인에서 접수 · 처리
- · 인허가 및 등록 · 신고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진행상황 서비스 제공
- · 금융민원, 정보공개, 국민제안도 민원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인 편 의를 제고

● 오프라인상 통합 금융민원센터 개소

- 오프라인상 금융당국(금융위 · 금감원)의 인허가 · 등록 · 유권해석 · 금융분쟁 및 일반 민원 등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금융민원센터 개소
- ※ 민원인 접근성 · 편의성을 고려하여 금감원 청사(1층)에서 운용
- 일반민원 및 인허가, 등록 신고, 유권해석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를 오프라인에서 접수 처리
- · 통합민원창구에 인·허가, 등록업무 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는 서비스 제공

3. 종합적 성과

• '08.7월 시스템 개통 후 4개월간 1,222건의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일반민원 처리실적은 제외)

온라인 금융민원시스템 개통 및 금융민원센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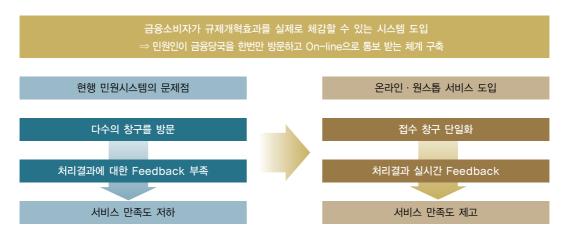
1. 추진배경

- 온라인을 통한 금융회사 인허가 및 유권해석 민원 접수 · 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과 담당부서 탐색(Search Cost)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 편익을 증진할 필요성이 제기
 - ◇ 국민신문고 창구를 통해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나 인허가 및 유권해석 민원의 경우 온라인 처리사례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민원인 및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각각의 기관을 접촉해야 하고, 다수 부서 관련 민원의 경우 여러 부서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
 - 특히, 금융당국의 담당부서 · 담당자 및 구비서류 · 심사기준 등 각종 절차와 진행상황 파악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규제체계의 네거티브화 추세에 따른 금융회사 인허가 및 등록 · 신고 등의 수요 증가에 미리 대처할 필요
- 법규 관련 해석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발급 활성화 필요성도 높아짐
 - ※ 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회답해주는 제도

- ◇ 금융회사 등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감독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을 시장 친화적이고 수요자 편의위주로 전 환할 필요성이 제기
 - ⇒ 금융회사 인허가 및 등록·신고, 유권해석 등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의 민원창구를 일원화

2. 기본방향

목 표



추진 전략(계획)

- (Quick Win 과제) 새로운 온라인/오프라인 시스템의 효과가 신속히 발휘될 수 있도록 3개월 이 내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
 - 단기간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도록 금융위, 금감원 및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설계

- (민원인 편의 위주의 시스템 구축)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인허가 신청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인 입장에서 쉽고 편리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
 - 이메일을 사용할 줄 아는 민원인은 누구나 쉽게 시스템에 접근하여 인허가, 유권해석 및 일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사용자 편의(User friendly)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
 - ※ 금융회사 설명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인의 눈높이와 필요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
 -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인허가 업무단위를 중심으로 신청인에게 금융회사 인허가 핸드북을 제공 하여 상세한 서식 작성요령 및 인허가 절차를 소개하고 신청인의 인허가 민원처리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금융행정의 온라인화 기반 마련) 각종 금융회사 인허가 및 등록신고 업무에 대해 신청인이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처리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별로 모듈화 ※ (모듈사례)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자회사 소유승인, 신규 인허가 등
 - 금융위 및 금감원 통합 민원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통합민원시스템인 e─금융민원센터를 구현하되. 금융위(e~FSC) 등과 연계 추진
 - 신청서류 접수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투명하게 인허가 민원처리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접수·처리
 - ◇ 주요 구성사항
 - ①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등록, 신고 등 포함), ② 법규해석, ③ 일반민원, ④ 정보공개청구,
 - ⑤ 국민제안 등
- (통합민원실 설치) 온라인과 동일하게 오프라인상으로도 금융당국(금융위/원)의 모든 유형의 민원에 대해 통합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상에서도 ① 일반민원, ② 인허가, ③ 법규해석, ④ 정책제안, ⑤ 정보공개 창구를 일원 화 (Single Window 구현)

- 통합민원실에 인·허가, 등록업무 등을 지원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민원인 에게 처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는 서비스 제공
- 민원 관련 FAQ. 인·허가 유형별 표준사례. 과거 유권해석 DB구축 등을 통하여 민원수요 사전 해소

3. 추진 과정 및 내용

추진경과

- ◇ 새로운 온라인/오프라인 시스템의 효과가 신속히 발휘될 수 있도록 3개월 이내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
 - ①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시스템 구축
 - ② 오프라인상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민원창구를 일원화

| ◇ 그간의 경과 | |
|---------------------------|---|
| ♦ 2008,03.17. | 감독기구 설치법 시행으로 금융위·금감원 청사 분리 (여의도, 서초동) |
| ♦ 2008.04.28. | 금융위,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방안 확정 |
| ♦ 2008.04.30. | 금융위·금감원 합동TF 구성 -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구축관련 용역계약 체결('08.4.30.~6.30. 2개월간) |
| ♦ 2008.05.23. |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게시용 금융회사 인허가 핸드북 작성 착수 |
| ♦ 2008.06.20. | 금융회사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홍보 실시(2회) |
| \$ 2008.07.01. | 금융민원센터 개소(금감원 1층) 및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오픈 (www.fcsc.kr) |
| ◇ 2008.07.01 시스템 개통 이후 | 유권해석 및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을 포함한 인허가 신청을 접수 |

추진내용

가. 금융민원센터 개소

- '08.7.1(화) 금융위와 금감원은 모든 금융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민원센터를 개소 (금감원 청사 1층)
 - 금융위 민원팀과 금감원 등록신고서비스팀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금융위 민원실(서초동 청사 별관)은 업무를 금융민원 센터로 이관
 - ※ 다만, 서초동 청사에 찾아오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서초동 금융위 청사에서도 민원을 접수/상담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소비자단체장,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시스템 개통 및 금융민원센터 개소식을 개최
 - ※ 주요 참석자 : 소비자교육연구원장, 주부클럽연합회장 등 소비자단체장,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 해보험협회장, 증권업협회장, 자산운용협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협회장 등
 - ◇ 통합민원실 명칭(금융민원센터) 공모 선정
 - 2008.5.23.~6.4. 기간중 금융위·금감원 명칭 공모결과 금융위 8건. 금감원 23건이 응모
 - 통합민원실 명칭은 금융민원센터(Financial Consumer Service Center)로 하며, 온라인 명칭은 e-금융 민원센터(www.fcsc.kr)로 함

[금융민원센터 개소식]



나. 온라인 금융민원시스템 개통

- 금융당국의 인허가·등록·유권해석·금융민원 등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인터넷 민 원시스템 개통
 - 민원인은 e-금융민원센터(www fcsc kr)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
 - ※ 금융민원센터(financial consumer service center)
 -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금융민원 메뉴 (또는 배너)를 선택하거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금융민원을 선택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화면]



- 인허가 · 등록 · 신고 · 유권해석 온라인 서비스 주요 특징
 - ① (금융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
 - 금융회사 설립허가, 대주주 변경 등 인허가 민원 및 등록·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
 - ※ 은행업 영업양수도, 보험사 대주주 변경 등 160개 세부 인허가 업무단위별로 신청모듈(구비서류 → 담당부서 →처리절차 → 심사기준 등) 지원
 - *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공인인증 단계를 거쳐 접수
 - 일반민원, 정보공개, 국민제안 등 금융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각각 처리되던 민원을 하나 의 시스템에서 신청
 - 금융법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해석사례를 공개하고 민원인이 찾아보기 쉽도록 체계 적으로 관리
 - ② (Tracking 서비스) 인허가 및 등록·신고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신청인에 게 통지

[처리절차 및 진행상황]



- 신청인은 인허가 처리단계별로 인터넷, 전자메일, 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음
- ※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인허가, 등록·신고 민원에 대해서도 진행상황 정보를 제공

- ③ (전담 서비스) 인허가 도우미(RM: Relationship Manager) 도입으로 신청인에게 처리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
 - 유권해석 · 비조치의견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전담서비스를 제공
 - ※ RM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후견인에 해당(민원처리 종결시까지 민원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제공)

[RM 업무처리 흐름도]



인터넷(홈페이지, 메일), 모바일(문자메세지)

♦ 인허가 RM의 역할

- 신청인 문의사항에 대해 인허가 요건심사·확인 및 최종 결과 통지 등 업무처리절차 안내 인허가 담당부서·담당자 확인 서비스 및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해결 관련부서 합동설명회(신속상담제: Fast Consultation) 주선 등을 통해 인허가 심사기준 등 상세정보 제공
 -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접수이전 단계에서 구비서류 작성 등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설명이 필요
-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회신
- ④ (쌍방향 컨설팅 서비스) 인허가 및 등록 · 신고 신청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 이전 단 계부터 상담 서비스 제공
 - 인허가 및 등록·신고의 전반적 업무처리절차, 필요서류, 심사부서 담당자 등 인허가에 필 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서 공개

-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회신하는 특화된 컨설팅 서 비스를 제공
- ⑤ (안내 서비스) 인허가 및 등록 · 신고를 포함한 모든 민원에 대해 신청인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
 - ※ 금융회사 설립허가, 대주주 변경, 자회사 소유 등 빈번히 신청하는 사항에 대한 인허가 핸드북을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금융민원, 정보공개, 국민제안 온라인 서비스 주요 특징
 - ① (금융민원) 전화상담*,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 상속인 조회서비스, 분쟁조정사례 등을 민원인 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
 - ※ 국번없이 1332 (휴대폰 사용시 02-1332)
 - ※ 소비자·금융회사간 분쟁 등 금융민원창구와 금융위에 제출하는 민원창구를 한 화면에 포함하여 민원 인 선택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
 - ② (국민제안)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운영되어온 국민제안 서비스도 새로운 홈페이지에 이관하여 금융정책 및 감독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
 - ※ 제도취지. 접수절차. 처리기간을 상세히 안내받고 진행상황을 조회
 - ③ (정보공개) 금융위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각각 운영되어온 정보공개 서비스도 새로운 홈페이지에 이관하여 신청인의 편익을 증진

'08. 7. 1 개통후 운영현황 및 성과

• '08.7월 시스템 개통후 4개월간 1,222건의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중 (일반민원 처리실적은 제외)

['08.7.1 시스템 개통후 접수 · 처리 실적('08.10.31 현재)]

| 구분 | 인허가 | | 등록신고 | | 유권해석 | 합 계 |
|-----|-----|------|------|------|------|-------|
| | | 상담신청 | | 상담신청 | ㅠ션에씩 | 급계 |
| 건 수 | 436 | 47 | 442 | 51 | 246 | 1,222 |

◇ 민원유형 및 자통법 관련 재인가 신청 현황

- · 인허가 · 등록 · 신고
 - 금융투자업 신규인가 및 기존 업무 재인가 신청
 -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신청
- 유권해석
 - 금융위 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시 인가 여부
 - 주식 상속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 소유권 취득 가능여부 등
- 민원인이 금융당국을 구별할 필요 없이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금융민원 및 정보공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확립
- 인허가, 등록 · 신고 등의 온라인 신청,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온라인 상담 등 금융회사와 금융당 국간의 쌍방향 서비스를 통해 신뢰도를 제고
- 민원인이 정확한 접촉창구를 찾지 못해 여러 부서를 접촉하는 불필요한 탐색비용이 감축 ※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위/원 담당자를 찾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업무
- 유권해석 해석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3~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민원인들의 법규해석 수요 충족에 크게 기여

그간 금융민원시스템 운영상 개선 필요 사항

- 수요자 의견수렴 결과, 다수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메일링 및 SMS 서비스 필요성 및 홈페이지. (e-금융민원센터) 기능 보완 필요성 제기
 - ※ 현행 시스템은 신청인에게만 진행상황 서비스를 제공
 - 유권해석에 대한 민원인의 자진취하 기능, 감독당국의 일부답변 기능 보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를 보다 제고할 필요

개선 방안

-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기능 개선
 - 다수 당사자에게 진행상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권해석 코너에 자진 취하 기능, 일부답변 기능 등을 추가함으로써 민원신청 및 답변에 대한 편익을 제고
- 금융민원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 금융민원센터(e-금융민원센터 포함)의 특징 · 업무 · 이용시 편리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금융민원센터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

4 종합적 성과

평가

- 민원인이 금융위, 금감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금융민원 및 정보공 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새로운 체계(New Framework)를 확립함으로써
 -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온라인 신청.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온라인 상담 등 금융회사와 금융 당국간의 쌍방향 ·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
- 새로운 금융민워서비스 시스템 개통으로 민원인 편익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의 애로 및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금융당국으로 변모하는 계기 마련
 - 특히, 금번 온라인 워스톱 민원시스템이 금융정책 및 감독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을 수요자 편의 위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

- · 설문조사 개요
 - 조사내용: 금융민원센터 이용에 따른 편의성 및 개선사항
 - 조사대상: 자산운용회사 설립 인허가, 투자자문업 등록 등을 신청한 민원인(30명)
 - 조사방법 : 전화를 통한 설문항목 질의 및 응답
 - 조사기간: '08.7.17.~7.25.(7일간)
- · 설문조사 결과 인허가 관련 민원인들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
 - 금감원·금융위 민원창구의 단일화에 의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소관부서 또는 담당자를 찾는 불편함이 개선
 - 특히 RM제도 운영 및 SMS 등을 통한 진행상황 통보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에 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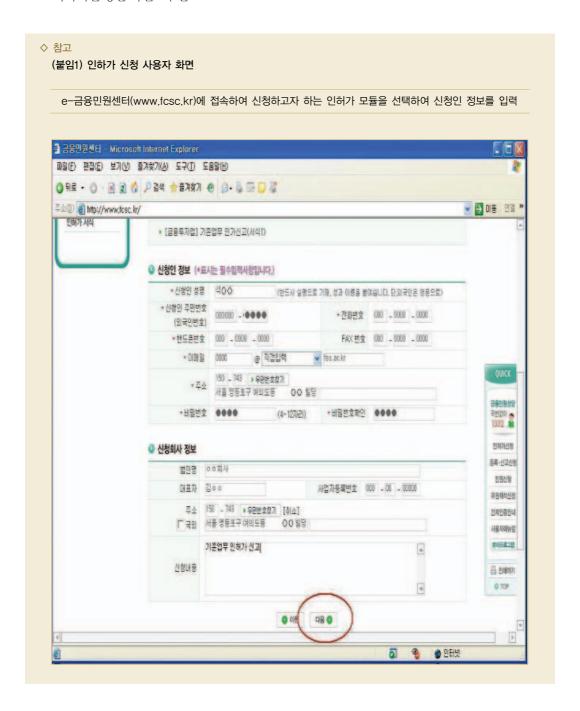
사회적 ·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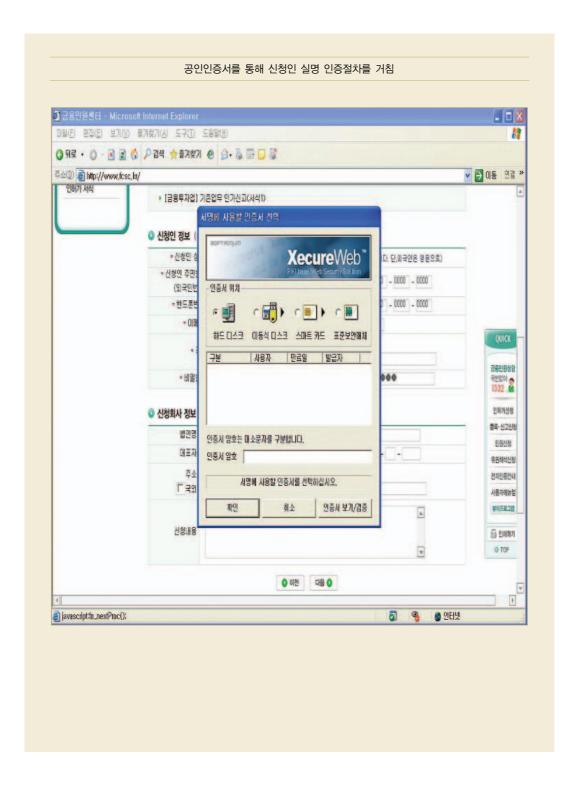
- (워스톱 서비스) 창구 일원화를 통해 민원인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 에서 신청하고 해결
 - ※ 인허가·유권해석·정보공개·금융민원·국민제안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를 하나의 민원 홈페 이지 · 창구에 통합
- (투명성 제고) 접수부터 처리결과통보 등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 ※ Tracking Service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한 인허가 신청에 모두 적용
- (탐색비용 감축) 민원인이 정확한 접촉창구를 찾지 못해 여러 부서를 접촉하는 불필요한 탐색비용 (Search Cost)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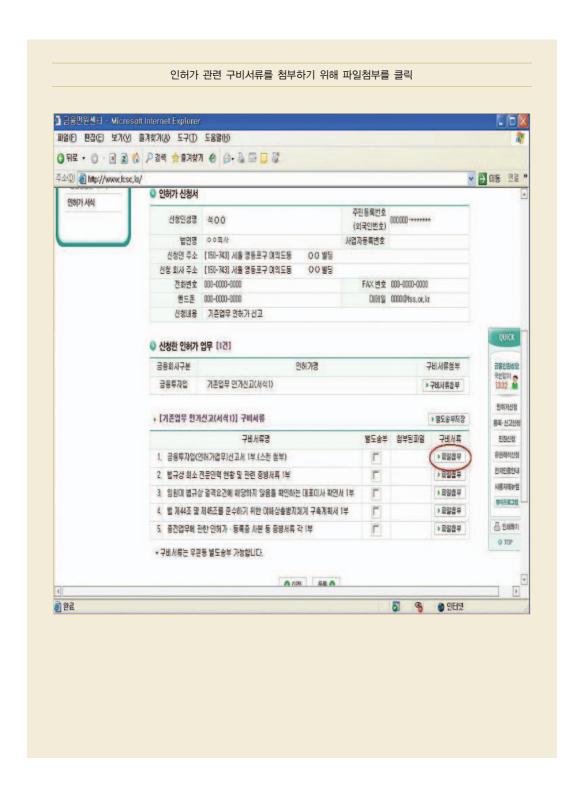
5. 향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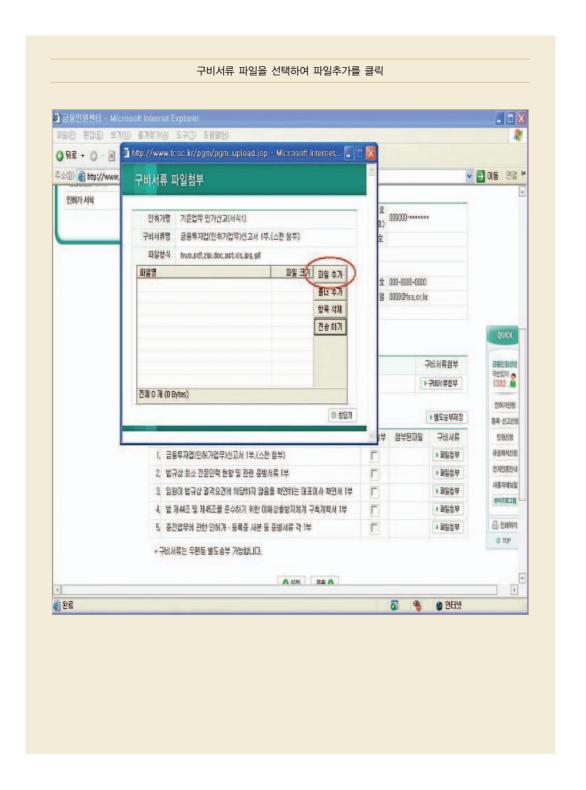
- 민원인 및 금융회사 등 수요자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시스템 보완 및 e-금융민워센터 홈페이 지 등의 지속적 개선 추진
 - ※ 인허가 결정서 사본 제공 서비스. 다수의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SMS 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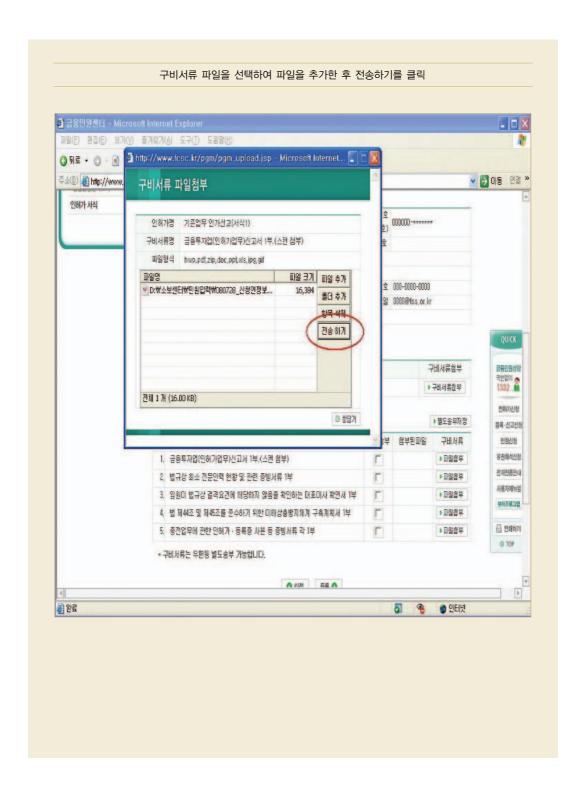
• 유권해석 회신 사례를 공개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관리하는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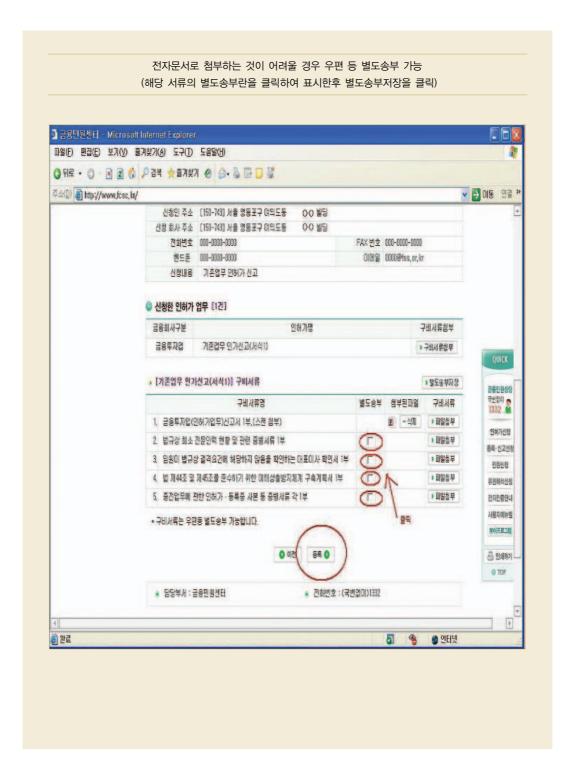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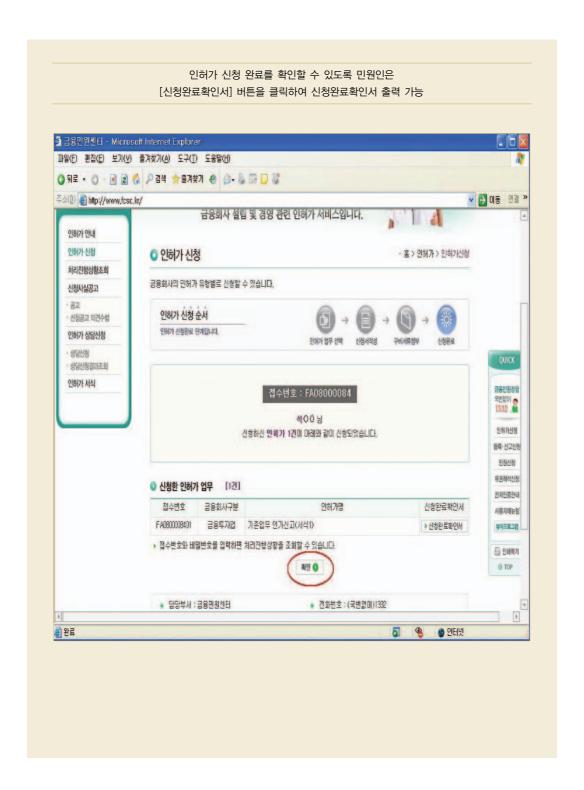












◇ 참고 (붙임2) 유권해석 신청 사용자 화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접속하여 유권해석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 ■ http://www.tcsc,kr/ = Microsoft Internet Explo * Q X 파일(E) 현점(E) 보기(Y)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 🔁 이동 | 연결 » 유원해서 유권해석 금융관련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 서비스입니다. 법규유관해설 신청하기 - 書 > 유명해석 > 법규유명해석 > 선원하기 DESIGNATE **MBB7** 유권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현황조희** 비조치의견사 신청인 정보 (+표시는 필수입력시항입니다.) 제도안내 (번드사 살망으로 가져, 생과 마중을 받여습니다. 단 외국민은 영문으로) 운영규칙 + 주민등록변호 설명인증 합비가신성 (외국인변호) SIZLINIA. 처리현황조화 FAX 변호 - -등록·신고선형 법규FAQ - * 우민반호함기 등이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우민반호를 선택해 주세요. 등이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원자연중합니 * 주소 우편변호를 선택해 주세요. AMERICAN STREET 學科學學工程 소속회사 등 인배하기 (4~12XH3) O TOP +비밀변호 +비밀변호 확인 반인을 위해서 학압학 하주세요. ※ 선청인이 법률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소속된 경우 소속 회사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 수 없는 영역 (혼합)





제17절 맞춤형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3-Track 심사)

요약

1. 추진배경

•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에 주력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하고 튼튼한 특허"를 창출해 내기 위한 전략적 변화와 특허심사 시스템 구축 필요

2. 추진내용

- ◇ 특허심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심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한 만큼 개개의 고객이 원하는 심사처리속도에 맞추어 심사해주는 개인별 맞춤형 특허심사처리 시스템 마련
- 일률적인 심사처리기간 대신 고객이 심사처리 시점을 선택하는 「3트랙 특허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처리기간에 대한 다양한 개개인 고객 요구 충족

【참고】 맞춤형 특허심사처리서비스 개념도



*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시스템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임

3. 종합적 성과

• 맞춤심사서비스와 고품질 특허 심사로 경쟁력을 차별화하는 한편, 출원시 심사시점을 예약함으로써 심사 청구 시점에 대한 별도 관리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조기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허 유지료 비용 증가 및 발명의 조기 공개를 방지

맞춤형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 (3-Track 심사)

1. 추진배경

『강한 특허』 창출 필요

- '강한 특허' 가 21세기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 (window)처럼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원천기술을 의미하는 '강한 특허'의 존재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
- 지식기반경제로의 급속한 이행이 진전되면서 무한경쟁하의 글로벌 우수 기업들은 독자 기술 확보를 통한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특허전략을 '양에서 질' 중심으로 변경. 특허 출원건수를 기준으로 경쟁력이 평가되던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의미

이젠 양(quantity)보다 질(quality)로

- '강한 특허' 창출은 발명주체들의 노력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고품질의 특허 심사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
 - 특허 심사가 충실하지 않아 부실권리가 탄생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기술혁신을 방해 하며, 권리의 무효로 종결될 개연성
 - 이에 따라, '강한 특허' 를 완성시키기 위한 '고품질 심사' 가 이제는 특허행정의 중요 키워드로 부각
- '고품질 심사'는 국제 특허무대의 공통 이슈이면서 특허출원 순위가 세계 4위인 우리나라와 세계 3위인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종래 미·일·유럽의 G3(선진 3개국) 체제에서 한국 중국이 포함되는 G5 체제로 국제 특허질서가 재편되는 양상

- G5 특허청은 급증하는 심사부담을 덜기 위해 타 특허청에서 검색결과가 나온 출원에 대해서는 추가 검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전제 조건은 심사품질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
- 그런 점에서 특허 G5 체제로의 개편은 우리 심사품질 기준이 G3 특허청 이상의 수준으로 도 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청은 조직이나 예산 규모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펼치 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
- 그러나. 대부분 박사급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세계가 인정하는 심사품질을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G5 체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제대로 된 심사여건이란 한마디로 심사관이 유사기술 존재 여부를 빠른 시간내에 철저히 검색해 그 발명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만큼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의미
 - 특허청은 이를 위해 선진적인 심사환경을 마련하고, 심사품질 관리체계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 할 계획

2 기본방향

고품질 · 맞춤 심사로 혁신 촉진

- 특허청에서는 2008. 5.1일부터 시작된 제2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라 앞으로 주안점을 둘 새로 우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제시
 -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에 주력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하고 튼튼한 특허"를 창출해 내기 위한 전략적 변화
 -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시점에 심사결과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빠른·보통·늦은 심사'로 구분한 '맞춤형 3 Track 특허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더 빠르게. 늦은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그에 맞추어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담고 있음

●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사활을 걸고 기술 개발에 애쓰고 있는 특허고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허청의 존재 이유라는 의식에서 품질 중심의 특허심사 패러다임을 정립함으로써 특허 선진 G5 체제를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강한 특허'의 창출로 지식재산 부국을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비젼을 나타낸 것임

3. 규제개혁 추진 노력

출원 급증에 따라 일률적인 빠른 심사 처리에만 집중

- 기업의 흥망과 국가의 기술경쟁력이 첨단 기술의 개발과 권리화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식기반 경제 시대로 진입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기술개발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는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심사대기 및 심판처리 기간의 장기화는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저해되고 발명자가 특허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 심사관을 대폭 증원하여 특허심사 대기 기간을 1990년대 중반 36개월을 2007년말에는 9.8개월까지 대폭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 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달섯
- 이와 같이 특허춤원인의 권익을 위하여 진행된 특허심사 처리 기간의 단축이 특허춤원인을 위한 절차상의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특허심사 처리 기간의 단축이 가지는 장 단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외부의 지적도 있어 왔음
- 급증하는 출원물량을 빠르게 소화하여 출원인에게 빠른 등록 여부 결정을 제공하여 권리화 한다 는 고객위주의 특허심사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한다는 일면적 효과에 대하여만 바라보았고
 - 출원인 개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와 깊이 있는 권리보호 측면의 고객 개개인별 차별화된 편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에는 사실상 부족함도 있었음

추진경과

- 제2기 책임운영기관 발족 : 2008. 5. 1
- 맞춤형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준비 : '08. 5월~6월초
 -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등
- 제2기 책임운영기관 특허행정 정책방향 제시: 2008. 6. 17
- 특허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2008, 10, 1

고객의 수요조사 - 고객들은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 특허심사를 원했다!

- 특허청에 바라는 고객들의 요구가 '일률적으로 빠른 속도'에서 '고품질의 심사를 각자가 원하는 시기에'로 변화된 것이 확인
 - 이는 지난 6월 특허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허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남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의견수렴

- 조사대상: 특허제도와 관련된 일반 및 전문가 집단
- 표본수 : 총 1.000명
 - 일반: 대기업 100명, 중소기업 300명, 개인발명가 300명
 - 전문가: 변리사 100명, 학계 200명
- 조사기관 및 조사방법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전화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2.73%p

주요 결과

- 특허심사처리기간을 현행 10개월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느리다' 는 의견이 53.8%. '빠르다' 는 의견이 7.2%이며, '적절하다' 는 의견이 37.8%임 (잘모름/무응답 1.2%)
-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특허행정역량 집중 여부에 대한 견해
 - '특허행정역량을 심사품질에 집중해야 한다' 는 의견이 91.4%로 나타났으며
 - 91.4%가 지적하는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서는 '선행기술 검색의 정확성'이 47.4%로 가장 높고, '심사의 일관성' 과 '통지서의 이해 용이성' 이 각각 38.7%와 8.8% 순임
-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에 대한 견해
 - '찬성한다' 는 의견이 68.3%. 반대 10.0%로 나타남
 -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를 반대하지 않은 조사대상자(872명) 중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첨부 를 요건으로 할 경우 이용의사에 대해서는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84.2%로 나타남
- 심사유예 신청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 '찬성한다' 는 의견이 48.8%로 나타남
 - 심사유예 신청제도 도입에 반대하지 않은 조사대상자(777명) 중 '심사유예 신청제도를 이 용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71.9%로 나타남

설문조사에 의한 의견 수렴

· 설문조사 방법: PCRM으로 설문지 발송

· 발송건수 : 약 38.151건

· 조사기간: '08. 5. 23 ~ 5. 30 (8일간)

-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여부를 떠나 우선심사 확대에 대해 찬성의견이 압도적이며(전체 78.4% 찬성) 반대는 6.7%에 불과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첨부를 전제로 한 우선심사 확대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도 76.9%에 달함

현재 국제 특허질서는 미·일·유럽 중심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G5 체제'로 확대·재편되면 서 특허심사 품질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시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심사품질제고 정책을 수립 · 추진

추진 내용

♦ 특허심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심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한 만큼 개개의 고객이 원하는 심사처리속도에 맞추어 심사해주는 개인별 맞춤형 특허심사처리 시스템 마련

고객 맞춤형 심사처리시스템 이란?

• 일륨적인 심사 처리 기간 대신 고객이 심사처리 시점을 선택하는 「3트랙 특허심사 시스템」을 도 입(심사 처리 기간에 대한 다양한 개개인 고객 요구 충족)

빠른심사 우선심사 우선심사확대 신청 후 약 3개월 111 일반심사 일반심사 08년 평균 약 16개월 111 늦은심사 심사유예 심사유예 제도 유예시점에서 약 3개월

【참고】 맞춤형 특허심사처리서비스 개념도

-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시스템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임
 - 빠른 심사, 일반심사, 늦은 심사 세 가지로 구분하여 특허심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나라는 없으며

- 빠른 심사 서비스는 미국, 일본, EPO 등에서도 시행 중이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과 는 차이

|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EPO | 중국 | 독일* |
|-------|----|----|----|-----|----|-----|
| 빠른 심사 | 0 | 0 | 0 | 0 | Χ | X |
| 일반 심사 | 0 | 0 | 0 | 0 | 0 | 0 |
| 늦은 심사 | 0 | X | X | X | X | X |

- ※ 독일의 경우 8개월 내 처리 및 15개월 내 처리 등 2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구분일 뿐 원하는 유예시점에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또한, 편의성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의 우선심사가 미 · 일 보다 더 편리함
 - 우리나라와 유사한 우선심사(빠른 심사)가 미국* · 일본 등에서도 있으나 미국은 우선심사 신 청요건이 까다롭고. 일본은 특정인 · 특정출원만 이용토록 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
- ※ 명칭이 유사한 멀티 트랙 특허심사절차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특허심사 처리기간과 무관한 수 수료 체계에 관한 것임

[한·미·일 우선심사 요건 및 처리기간 비교표]

|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
| 이용 대상 | 확대시 누구든지 이용가능 | 누구든지 이용가능 | 특정인(개인 · 중소기업) 또는 특정출원(자기실시 등)만 이용기능 |
| 최 <u>소</u> 요건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대비설명 포함) | 1. 선행기술조사보고서(대비설명 포함) 2. 청구항수 제한(독립항 3개 이하 등) 3. 단일성 요건 충족 4. 전자출원일 것 등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대비설명 포함) |
| 심사 결과 | 평균 2.2개월(07년) | 약 3개월(추정치) | 평균 2.3개월(06년) |

- 한편. 우리의 심사유예신청제도(늦은 심사)는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최초 제도
 - 독일의 경우 8개월 출원과 15개월 출원으로 구분하여 심사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는 처리기간만을 단순 분리한 것일 뿐
 - 출원인의 원하는 시점에 맞춰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심사유예신청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임

[독일의 특허심사 시스템]

| 종류 | 구분 기준 | 심사처리 목표기간 |
|-----------|---|------------------------------|
| 8개월 내 처리 | ①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된 출원 | 출원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심사처리를 목표 |
| 15개월 내 처리 | ①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후 심사청구된 출원 ② 외국으로부터 조약우선권 주장된 출원 | 심사청구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심사처리를 목표 |

- 더욱이 일반 심사도 특허 선진 G5(한 · 미 · 일 · 유럽 · 중국)에서 가장 빠름
 - 특허출원 순위가 세계 4위인 우리나라와 세계 3위인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종래 미 일 · 유럽의 G3(선진 3개국) 체계에서 한국 중국이 포함되는 G5 체계로 재편되고 있음
 - 일반 심사도 평균 16개월('08년 목표) 이내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심사처리 기간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계획

[각 국별 심사처리기간]

| 구분 | | | 일본 | | रुद |
|----------|---------|-------------|-------------|--------------|---------------------|
| 처리 기간 | 16개월 목표 | 25.3개월(*07) | 26.0개월(*06) | 23.8개월(' 06) | 31개월 (' 06, 추정치) |

* 출처: 미·일·EPO의 Annual Report, 중국의 특허통계간보

● 동 제도가 시행되면 우선심사 이용율은 최대 8.3% 증가(15.2%⇒23.5%)될 것으로 예상되고. 심사 유예신청도 약 2.6%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

[맞춤형 특허심사시스템 이용률 분포 예측]

| 구 분 | 우선심사 (빠른심사) | 일반심사 | 심사유예신청 (늦은심사) |
|---------------|-------------|-------------|---------------|
| 현 점유율*(%) | 15.2 | 84.8 | - |
| 향후 점유율(%) 전망치 | 23.5(8.3) | 73.9(△10.9) | 2.6(2.6) |

※ 현 점유율은 '08.6월 1차 심사처리건 기준

우선심사 확대: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우선심사제도로 전환

【목표】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누구든지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우선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신속심사를 바라는 고객 니즈 충족

(출원인) 누구든지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효과 발생 (특허청) 추가 심사부담 경감, 조사보고서 품질관리 가능 및 他 출원의 선행기술조사 의뢰 가능 건 증 대 등의 효과 발생

● 필요성

- 현재 우선심사 대상은 벤처기업출원 또는 자기실시출원 등 특정인 · 특정출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 조기권리화가 필요한 특허출원이라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우선심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동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한정 없이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 무제한적인 대상 확대는 우선심사 신청 건이 급증 · 심사부담 증가 · 일반심사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 '묻지마' 式 신청 방지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토록 함으로써 우선심사의 일반심사化 및 처리기간 지연등의 문제점 차단 필요
- 따라서 우선심사대상 확대시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우선심사 이용자유도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마련

【참고】우리나라 우선심사 신청 현황

| 구 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
| 우선심사신청(A) | 1,026 | 1,442 | 2,447 | 4,212 | 7,241 | 10,247 | 12,781 |
| 심사청구(B) | 81,156 | 82,890 | 89,960 | 105,619 | 118,304 | 127,563 | 136,920 |
| 심사처리(C) | 55,766 | 79,414 | 93,433 | 98,404 | 131,115 | 195,395 | 143,563 |
| 비율(A/B) | 1.3% | 1.7% | 2.7% | 4.0% | 6.1% | 8.0% | 9.3% |
| 비율(A/C) | 1.8% | 1.8% | 2.6% | 4.5% | 5.5% | 5.2% | 8.9% |

주) 최근 우선심사 신청건의 증가는 우선심사제도에 대한 출원인의 인식 확대 및 벤처기업, 실용신안 등 신청요건이 간단한 우선심사대상 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 종전 우선심사 대상

•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벤처기업의 출원」 등 특허 · 실용신안에 15개 분야 존재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공통: 11개 분야〉

-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 벤처기업의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 자기발명에 대하여 제3자가 실시중인 출원
- 방위산업에 관한 출원
- 공해방지에 관한 출원
- 수출촉진에 관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관련 출원
-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및 품질인증사업에 관한 출원
- 조약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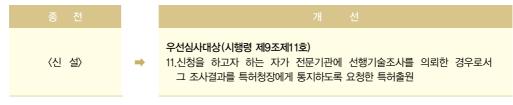
〈특허출원: 3개 분야〉

-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춤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입주의료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1개 분야〉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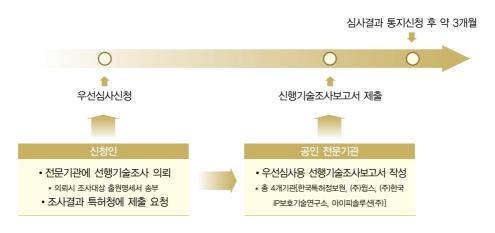
• 개선 내용



- *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
- 공인된 전문기관*에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면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대상을 확대함
 - 유용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출원특허 기술이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성, 유사성 여부 등 신 규성을 조사) 확보를 위해서는 旣 공인된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약 50만 원 비용 부담)로 한정 필요
 - ※ 품질 담보 없이 동 제도를 운영할 경우 오히려 심사에 불필요한 정보 양산, 추가 심사부담 발생, 우선심 사의 급증, 일반심사의 장기화 등 여러 혼란만 초래할 우려
 - 보고서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발행 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 ※ 출원인이 직접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자신의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자료는 고의적으로 배 제할 우려가 있어 조사의 신뢰성 및 품질을 담보하기 곤란
- ※ 인정된 선행기술조사기관에서도 선행기술조사 문헌·장비 보유 여부. 전담체계와 조사인력 구비 여부. 보안체계 구축 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현재 총 4개 기관 지정 · 운영중

【참고】 우선심사 처리 절차 흐름도



• 개선 효과

- 특허심사에 유용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누구든지 신속 · 정확한 우선심사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여
 - 조속한 권리보호에 대한 특허출원인의 요구는 충실히 수용하되 '묻지마' 式 신청. 심사부담 급증 및 일반출원의 심사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심사유예신청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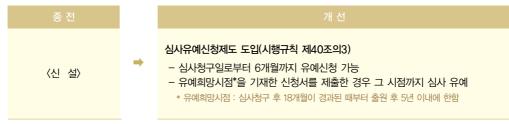
【목표】고객이 원하는 시점(단. 일반심사 처리시점보다 늦게)에 맞추어 심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늦춤 심 사를 바라는 고객 니즈 충족

* 정확한 심사처리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증대

● 필요성

- 특허권 획득시기를 늦춤 경우 특허등록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만큼 늦춤 심사를 바라 는 고객의 요구가 존재
 - ※ 청구항 10항 기준으로 2년간 특허권 등록을 늦출 경우 건당 34만 4천원 절감
- 그러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은 특허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시점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 심사청구 후 심사착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어려워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또한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는 만큼 일단 심사청구된 경우에는 청구순위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처리됨으로써 심사청구 후에는 심사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따라서, 늦춤 심사를 바라는 고객 니즈를 완벽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워하는 유예시점(일 반심사 처리시점보다 늦게)*에 맞추어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 일반심사 처리시점보다 앞선 경우까지 심사유예제를 도입하면 우선심사化, 되어 일반출원의 심사처리지 연, 처리기간 관리 부담 증가 등의 역효과 발생

• 개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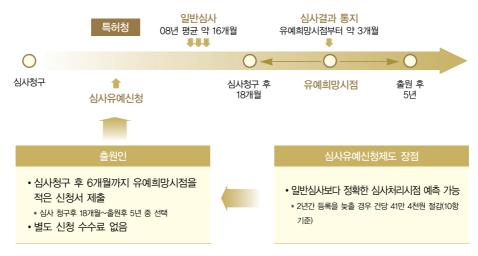
*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우선심사 化와 심사청구 가능기간(출원후 5년)보다 더 늦게 유예되는 것을 모두 방지하기 위 해 최단 · 최장 유예시점 설정함
 - · 최단 유예시점을 심사청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로 하여 일반심사보다 빨리 심사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 · 최장 유예시점을 심사청구가능시점(출원 후 5년까지) 이내로 하여 유예신청제도를 통한 심 사청구제도의 악용 소지를 차단함
- 또한, 심사유예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심사유예신청 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 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심사 유예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심사유예신청제도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예신청가능시점을 출원심사의 청 구일부터 6개월까지로 하고
 - 유예신청의 취하 또는 유예희망시점의 보정도 신청일로부터 2개월까지만 가능토록 하는 한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유예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심사유예신청 제외 대상

- 분할출원·변경출원·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원출원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원일 도 원출원일로 소급되는 만큼 유예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
-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 : 신속한 심사라는 우선심사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 허용할 경우 제도 운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참고】 심사유예신청 흐름도(늦은 심사)



• 개선 효과

- 고객이 원하는 유예 시점에 맞추어 심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늦춤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출원에 비해 정확한 심 사처리시점 예측이 가능하고, 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이내 심사처리 예정
 - 출원시 심사시점을 예약함으로써 심사청구시점에 대한 별도 관리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 조기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허 유지료 비용 증가 및 발명의 조기 공개를 방지할 수 있음
 - ※ 특허출원 심사는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종전에는 심사청구시점을 별도로 관리해 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4 향후 발전계획

지식재산의 중심은 고품질 특허

- 특허 패러다임이 "양" 중심에서 "질"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 똑똑하고 가치있는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
 - 1개 특허를 쪼개서 2개로 출원건수만 늘리는 식으로는 더 이상 특허 4대 강국을 유지 할 수 없 다는 인식 팽배
 - 고품질 특허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인 접근 필요
- 동일 특허가 여러 국가에 출워되면서 각국의 특허 심사업무가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 상태
 - 국가간 협력을 통한 심사정보 공유로 심사품질 유지 공동대응 필요
 - 국내 특허심사 수준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높여야만 하는 인식 공감

맞춤심사서비스와 고품질 특허심사로 경쟁력 차별화

-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한국은 양적으로는 세계 5위권안에 드는 특허강국으로 위상 제고
 - 심사기간 단축으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 달성(10개월) ※ 선진국보다 적은 심사인력으로 빠른 처리를 위해서 모든 역량 집중
-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에 주력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하고 튼튼한 특허"를 창출 해 내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선진국형 심사품질지표 설정 및 관리
 - 새로운 기술부류 체계를 구축 하여 선행(先行)기술검색을 고도화 등
- 현재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품질면에서도 어느 국가 못지않 은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적인 시스템 구축이 또 다른 정책 지향 목표



제18절 의약품 허가 심사 체계 개선

요약

1. 추진배경

• 의약품 허가·심사 처리 병목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 처리가 만성적으로 지연되고, 민원서류의 절대 건수가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허가·심사 전담인력 대비 처리건수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허가·심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

2. 추진내용

• 고객 중심의 원스톱 처리제 도입

- 다양한 직렬의 숙련된 허가ㆍ심사자 15명을 선발하여「의약품 허가ㆍ심사 TF팀」구성, 신속ㆍ집중 처리 대상 민원(약 6,000건, 본청 처리 민원의 30% 해당)은 TF에서 접수부터 허가까지 직접 처리 하는 등 One-stop 서비스 구현
- 접수된 의약품 허가·심사 민원에 대해 5일 이내 필요한 첨부 서류 제출여부를 확인(Pre-View) 하여 자료 미비로 처리 불가능한 민원은 보완 또는 반려조치

• 허가 · 심사의 절차 간소화

- '개량신약' 의 정의를 신설하고, 개량신약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절차 간소화 추진

• 안전성과 무관한 자료 면제

- 항암제 시판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자료 요건 완화, 상세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첨가제 규격 인정범 위 확대 등 안전성과 무관한 자료 면제 범위 확대 시행

● 허가 · 심사 관련 소통노력 확대

- 의약품 허가·심사 중간알림제 시행, 현장 방문, 설명회·간담회 개최,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수요자 와 소통 노력

3. 종합적 성과

- 적체민원 완전 해소 및 병목현상 재발 가능성 사전차단 체계 구축
- 허가 · 심사 처리 속도 증가 등 업무 효율성 대폭 향상
 - 1인/일 처리 건수 증가: 0.9건('07)→1.77건(처리속도 200% 상승)
- 시험검사, 서류 작성 비용, 인건비 등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절감

의약품 허가 심사 체계 개선

1. 추진 배경

차세대 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의 중요성 증대

- 고령화 및 소득증가 등으로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약품 산업이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음
 - 세계 의약품 시장은 년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경에는 8,800억 불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 특히, 글로벌 신약 개발은 의약품 산업의 핵심이며 최고의 부가가치를 갖는 미래지향적 산업임
 - 글로벌 신약 개발에는 평균 12~15년의 시간과 6~7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나, 개발 성공 시에는 지속적인 고수익 보장이 가능함
 - ※ 세계 매출액 1위 제품인 고지혈증 치료제 Lipitor(Pfizer사)의 2007년 매출액은 127억불로 평균 신약개발 비용의 20배
 - ※ 혁신신약 수익률은 평균 30%(자동차의 약 30배)로 혁신신약 1품목의 년간 순이익은 자동차 300만대 수 출효과(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제약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인적자원의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기업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는 인허가 인프라 구축 필요

-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되는 상품으로서 식약청의 전문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판 여 부가 결정됨
 - 국가가 직접 의약품 시판허가를 하는 것은 전세계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
 - 전세계 의약품 규제당국은 '안전하고' '효과있고' '품질 좋은' 의약품을 '빠르게'. '필요한 국 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허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조직을 그에 맞게 리모델링 하고 있음
- 그동안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 · 심사 체계가 규제 위주로 운영되어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 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허가·심사 처리 병목현상으로 제품화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처리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으로 기업의 사업계획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다 는 것이 주요 불만 요인
 - 허가 지연은 제품 출시 지연으로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화자의 치료 기회를 축소하여 국 민 보건에 부정적 영향
 - '07. 6월에 실시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허가심사 체계 개선으로 나타남

무엇이 문제인가

- 의약품 허가·심사 처리 병목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 처리가 만성적으 로 지연되었음
 - '08, 4월 현재 의약품 등의 법정기한내 처리비율이 60%에 불과
 - '06년 일부 시험기관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자료 조작 사건 및 '07년 연말까지 이어진 후속 조치로 다른 허가 · 심사서류 검토 지연이 누적됨
 - ※ '08.4월 현재 생동성 처리지면 건수 233건, 허가·심사 지연건수 약 300건

- 민원서류의 절대 건수가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허가·심사 전담인력 대비 처리건수의 불균형이 심화됨
 - 낮은 수수료(5백원~6만원)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허가신청 건수 증가
- 허가 · 심사 과정 및 결과의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고객 불만 상존
 - 처리기한에 임박한 보완요청 등 처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족으로 기업의 사업계획 수행 에 차질을 초래하고.
 - 허가·심사자의 경험·전문성 차이로 부서별, 심사자간 처리기준이 상이하여 민원 처리의 일 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2.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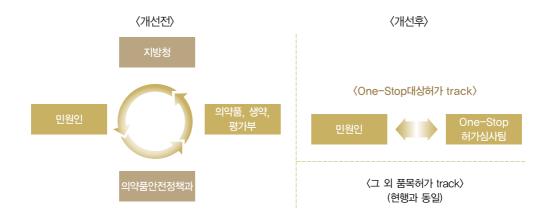
목표 A7 국가 수준의 의약품 허가 · 심사 인프라 구축 추진 분야 고객 중심의 허가 · 심사의 안전성과 무관한 허가 · 심사 원스톱 처리제 도입 절차 간소화 자료 면제 관련 소통 노력 확대 소비자 안전기준은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폐지안전 규제자에서 '안전 컨설턴트'로 기본원칙 역할 변화

3. 추진 과정 및 내용

고객 중심의 원스톱 처리제 도입

허가 ·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 마련

- 다양한 직렬의 숙련된 허가 · 심사자 15명을 선발하여 「의약품 허가 · 심사 TF팀 구성(08.4.28)
- 신속 · 집중 처리 대상 민원(약 6.000건, 본청 처리 민원의 30% 해당)은 TF에서 접수부터 허가까 지 직접 처리(One-stop 서비스 구현)
 - ※ 신속·집중 처리대상 이외의 민원은 현행과 같이 각 평가부 처리담당과로 심사의뢰 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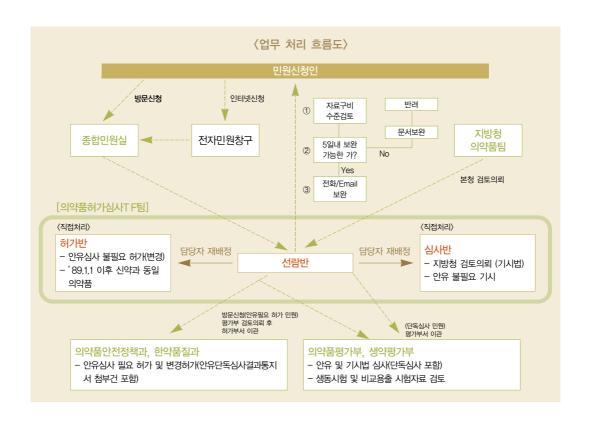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적체서류 해소를 위한 조직역량 총가동

- '08.4월 현재 처리 지연된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233건)에 대해 서류 검토 및 시험기관(37개), 의료기관(74개)에 대한 신뢰성조사
- 본청. 지방청의 인력 31명을 차출하여 '08.5.31까지 처리 완료
 - ※ 그 외 지연된 모든 민원은 TF팀과 각 과에서 분담. 집중 검토하여 '08.5.31까지 처리 완료

사전 검토(pre-review)를 위한 민원 선람카드 시스템 도입('08.5)

- 접수된 의약품 허가ㆍ심사 민원에 대해 5일 이내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pre−review) 하여 자료 미비로 처리 불가능한 민원은 보완 또는 반려 조치
- 선람카드 양식을 인터넷(KiFDA, 식의약종합정보서비스)에 올려서 민원인이 자가 점검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계
 - ※ 민원선람 카드: 품목허가(변경), 안유심사, 기시법 심사 의뢰 등 각종 민원서류의 자료 요건을 알기 쉽게 확 인하고 DB화 할 수 있는 표준 양식



'사전검토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대상 : 국내 · 외 제약회사 허가담당자(30명) 및 내부 심사자(17명)
- 조사기간: '08.5.26 ~ 6.5
- 사전 검토제 필요성
 - 제약업체 관련자 및 심사자의 약 90%가 사전검토제의 필요성에 공감
- 사전 검토제 평가 결과에 대한 만족도





〈외부고객〉

〈내부고객〉

- 제약회사 담당자의 94%는 초기 단계에서의 보완조치에 만족. 자진취하한 경우에도 취하 사유가 타당(25%)하거나 식약청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75%)
- 심사자의 71%는 사전 요건 확인에 따른 보완조치에 만족하였으며, 보완불가능 서류의 검토 전 자진취하처리에 대해서도 만족(100%)
- 업무에 미치는 영향평가
 - 〈외부〉 제약업체 담당자는 종전에 비해 '자료 요건 평가 시기'가 신속해졌다고 평가 (83%)
 - 〈내부〉심사자의 경우 사전검토제가 업무량 감소(64%) 및 전문적 검토 업무에 도움 (100%)이 된다고 평가

고객 중심의 원스톱 처리제 도입

개량신약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도입

-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 상품화에 이르기까지가 매우 어려운 만큼. 기존 의 약품을 개량한 제품(소위 개량신약)의 개발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
- 그러나. '개량신약' 이라는 용어의 규정이 명확치 않아 개발자와 심사자간 혼란의 여지가 있으며. 경쟁력있는 개량신약의 신속한 상품화를 지원할 필요가 대두됨
 - 개량신약 상품화시 고가의 오리지날의약품에 대한 시장 대체효과 기대
- ⇒ '개량신약' 의 정의를 신설하고 개량신약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우 선 심사 규정 명문화('08.8.14, 고시 개정)
 - ※ 개량신약: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비해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에 있어 나아진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표준제조기준 대상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생략

- ◇ 기시법 심사 생략 대상(현행)
- · 공정서 수재. 고시품목
- · 희귀의약품



◇ 표준제조기준 대상품목도 기시법 심사 생략

- 표준제조기준 대상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사전 심사를 생략하는 대신 정기 감시 또는 사 전 품목별 GMP 조사시 기준 설정의 적정성 검토
 - ※ 표준제조기준 해당 품목 허가기간이 건당 3~4개월 → 10일로 단축
- 내부결재를 거쳐 '08.4.25부터 먼저 시행하고 관련 고시(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품목허 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반영('08.8.14)하였음

생동성시험 실시 진입 신속화

- 복제의약품은 신약의 특허 기간 만료후 신약과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시판허가를 받게 됨
- 생동성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생동성시험계획서와 함께 생동성시험용 의약품 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조건부 허가를 받아야 하나.
 - 복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생동성시험 승인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계획서 승인만 받으면 됨
- ⇒생동성시험 계획서 검토후 생동성시험용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을 조건부 허가(변경)해 주는 방 식 폐지
 - ◇ 생동성시험계획서 검토
 - → 생동성시험 조건부 허가
 - → 생동성시험 실시



- ◇ 생동성시험계획서 검토
- → 생동성시험 조건부 허가(폐지)
- → 생동성시험 실시
- 관련 고시(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를 개정 ('08.8.14)하여 시행하고 있음

의약품 제조업 허가(변경)시 실태조사 폐지

- ◇ 의약품 제조업소 실태조사 중복 실시
- · 제조업 허가 신청시
- · 허가후 GMP 평가시



- ◇ 의약품 제조시설의 적합 여부는 허가후 GMP 평가시 일괄 평가
- ※ 체외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은 GMP 의무화 대상이 아니므로 제조업 허가시 실태조사
- 제조업 허가신청시는 시설내역서(목록)을 제출받아 처리하고 시설의 적합 여부는 사후 평가
- 내부결재를 거쳐 '08.4.25부터 시행하고 있음

원료의약품 신고(DMF)에 대한 현장조사 · 평가의 탄력적 운영

- 부정 · 불량 원료 사용 차단으로 완제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MF. Drug Master File) 도입('02.7)
 - 서류검토, 현장실사(실사비용 신청인 부담) 등 적정성 평가를 거쳐 성분명, 제조소명, 제조소 위 치 등을 공고
 - ※ DMF: 원료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설비내역. 생산공정 기록 등을 제출하고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인정된 고품질 원료만을 완제품 제조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
 - ※ DMF 대상 성분 확대 '07년 202개 성분 → '08년 232개 성분
- 원료의약품 신고서의 법정 처리기간은 120일이나, 실제 서류 검토(약65일), 업체보완, 현장조사 등 으로 평균 250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 신고서 처리 지연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었음
- 워료의약품 신고서의 적부 판정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있으며, 원료의약 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실정(DMF 공고품목중 수입품목 차지비율 66%)을 감안할 때 모든 해외 제조소 실태조사는 현 행정인력 상황에서는 불가능
 - 이에 실사면제 기준을 정하여 선별적 현장조사를 실시중이나 제한적인 면제범위, 외국 제조사 의 자료제출 기피 등으로 현장조사 비율이 높음
- ⇒ 시설 등의 신뢰성 인정대상을 OECD 국가까지 확대하여 현지 실사 및 제출자료의 평가를 유예 ('08.5.1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
 - ◇ 현지 실사 및 평가 유예 대상 - 국제공인기관(EDQM, WHO, EMEA 등) 및 ICH ♦ OECD 회원국 회원국(29개국) 인증 원료의약품 (30개국) 제조원 - ICH 회원국 제조원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 추가 - 원료의약품신고 공고된 제조원 원료의약품 - 국내 BGMP 업소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
 - 시설 등의 신뢰성 인정대상의 경우 자료요건만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40일내에 신 고수리
- ⇒기타의 워료의약품인 경우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서류검토 부서를 일워화하여 서류검토의 일관 성 및 형평성 유지

안전성과 무관한 자료 면제

항암제 시판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자료 요건 완화

- 국내에서 개발중인 대부분의 항암제는 기허가 제품의 투여경로 처방 변경을 통해 독성의 경감 등 을 고려한 개량 항암제이나.
 - 시판 허가를 위해서는 생존율 평가 임상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많은 부담이 되고 있었음
- ⇒종양반응율 등 대리결과 변수를 이용한 임상시험결과를 인정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음 ('08.8.14)
 - 대리결과 변수가 임상적 결과변수(장기 생존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입증된 기존 항암제 와 성분. 적응증이 동일한 경우

상세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첨가제 규격 인정범위 확대

- '일본 의약품 첨가물 규격' . '식품첨가물 규격' 을 외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첨가제 규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 동 첨가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규격에 대한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 외용제의 첨가제 규격으로는 화장품원료기준, 국제화장품원료집, EU화장품원료집 등을 인정하고 있음
- ⇒ '일본 의약품 첨가물 규격'을 외용 의약품의 첨가제 규격으로 인정하고 '식품첨가물규격'을 의약 외품 첨가물 규격으로 인정토록 관련 고시 개정('08.8.14)

의약품 안정성시험 자료 요건 완화

- 신약 자료제출의약품중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경시변화)가 인정되는 품목 등은 장기보존시험 기 간에 준하여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즉, 12개월 장기보존시험 자료 및 6개월 가속시험 자료를 근거로 24개월 이내로 사용기간을 설 정합(신약의 경우는 가혹시험 추가)
- 한편, 안정성시험을 실시한 후 허가신청이 가능하므로 시험수행기간에 따른 허가 및 출시가 지연 되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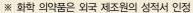
- ⇒ 허가 신청 이후 심사결과 통보전까지 추가로 안정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인정('08.8.14 고시 개정)
- ⇒ 서방성제제. 이식정 등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 및 주성분의 결정수가 상이한 품목은 가속 시험자료와 시판후 안정성시험계획서를 제출받아 기존 품목의 사용기간 인정('08.8.14 고시 개정)

의약외품의 제조방법증 주성분 제조원 및 주소 기재 생략

- 의약품에 비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의약품에 준하여 제조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및 불만 발생
 - 특히, 주성분의 수가 많은 염모제는 주성분 제조원 및 주소 변경을 위해 수시로 변경허가(신고) 신청 불가피
 - 변경허가시 소요되는 시간만큼 기업의 영업 손실 발생
- ⇒ 의약외품(염모제) 제조(수입) 품목허가 신청시 제조방법에 주성분의 제조워 및 주소기재를 생략토 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08.5.1)
 - 이미 허가된 품목(염모제)의 경우에도 다른 허가사항의 변경 신청시 제조방법중 주성분의 제조 워 및 주소를 삭제하고 있음

수입 생물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 간소화

◇ 기준 및 시험방법 전항목에 대해 국내에서 실시 한 3회 이상 성적서 제출





◇ 외국 제조원에서 시험한 성적서로 갈음

•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08.7.31)하고 있으며, 관련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 진행중임

허가 · 심사 관련 소통 노력 확대

의약품 허가 · 심사 중간알림제 시행

- '06.10.1부터 인터넷(KiFDA, 식의약종합정보서비스)을 통해 의약품 허가ㆍ심사 서류 접수 및 처리 상황 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 인터넷을 통해 조회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 회사의 대표자, 실무담당자, 식약청 담당자 간에 민원서류처리 현황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고객 불만족의 한 원인이 되고 있었음
- ⇒ 허가 · 심사 처리 중간과정 알림제를 실시하고 회사 대표자에게 민원 처리상황을 실시간 통보하고 있음('08.7.14)
 - 즉. 심사부서에서 허가부서로 서류가 이송될 때 자동으로 사전 등록된 핸드폰(주로 회사 실무자) 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 회사 대표자에게는 원하는 경우 민원서류 접수, 보완, 처리 결과를 직접 문자메시지로 송신하고 있음
 - 또한. 사전 검토결과와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보다 상세한 처리 내용 설명

현장방문, 설명회 · 간담회 개최,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수요자와 소통 노력

● 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 BT Community 등 민·관 협의체, 간담회 개최 17회, 제도개선 내용에 대 한 설명회 개최 9회 등

4. 종합적 성과

주요 성과

◇ 식약청 입장 허가 · 심사 처리속도 증가 업무 효율성 향상 업무 부담 경감



◇ 고객 입장 신속한 시장진입으로 수익 창출 규제준수비용 절감 만족도 향상

- 적체민원 완전 해소 및 병목현상 재발 가능성 사전차단 체계 구축
 - 허가·심사 TF 구성 이전 적체된 허가 신청서류 848건(허가 313건,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302건, 생동 결과보고서 233건)을 1개월 만에 처리 완결('08.5.30)
 - TF팀 구성 이후 신규 접수된 허가 신청서류도 원스톱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적체 요 인 사전 차단
 - ※ TF 구성 이후 '08.10.15 현재 1,935건 처리 완료
- 허가·심사 처리 속도 증가 등 업무 효율성 대폭 향상('08.5.1~10.15 현재 기준)
 - 그가 업무 적체로 처리기가 임박 시점에서 보완 요청하였던 것을 초기 단계(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미흡한 자료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반려 또는 보완 조치
 - ※ TF 구성후 총 677건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08.5.1~'08.10.27). 서류 미비로 인한 즉시 보완 처리가 126건(18.6%), 자료보완 불가능으로 인한 자진취하 53건(7.8%)
 - 1인/일 처리 건수 증가 : 0.9건('07) → 1.77건(처리속도 200% 상승)
- 허가 기간 단축 등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으로 기대수익 창출
 - 원스톱 처리제 도입을 통한 의약품등 허가서류 검토기간 감소

| 민 원 사 무 명 | 업무처 | 감소율 | |
|-----------------------------|-----|-----|------|
| 한 현 사 구 형 | 개선전 | 개선후 | |
| 의약품등 허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필요) | 53일 | 35일 | -34% |
| 의약품등 허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불필요) | 26일 | 15일 | -42% |



- 개량신약 우선 심사, 생동성시험계획서 검토후 바로 시험 실시, 원료의약품 신고시 현장조사 유예. 허가 신청후 안정성시험자료 제출 허용 등으로 시장진입기간 단축
- 시험검사, 서류 작성 비용, 인건비 등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절감
 - 의약외품 변경허가(신고) 대상 축소로 민원수수료,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작성 비용, 인건비 등 절감
 - 개량신약의 정의 마련으로 개발 비용 절감
 - 원료의약품 신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생략에 따른 출장비, 인건비 등 절감
 - 항암제 시판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자료 요건 완화로 비용 절감
 - 첨가제 규격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첨가제 규격자료 작성비용 절감
 - 수입 생물의약품에 대해 3회의 자가품질검사를 위한 위탁시험비용 절감 등
- 신뢰에 기반한 허가·심사 체계 운영 및 적극적 소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및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신청인의 궁금증 해소 및 제품 출시 계획 수립 용이
 - 허가·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 확보
 - ◇ 식약청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대한 설문조사('08.6월) 결과
 - 의약품 허가·심사 절차개선이 업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3.3%
 - 식약청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
 - 최근 식약청이 이전보다 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97.5%
 - ※ 조사 대상: 의약품 산업 CEO, 임원 등 120명

5. 향후 추진계획

의약품 원스톱 민원 처리 고도화

- 조직 재설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
 - TF팀의 담당 업무를 본청 전체 민원의 30%에서 장기적으로 40%까지 확대
 - 청 조직 재설계 전까지는 현 T/F팀을 유지하여 허가심사 원스톱 처리를 실시하고, 향후 정규 직 제화하여 확대 발전
- 허가 · 심사 원스톱 서비스의 충실한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강
 - 행정 업무 최소화를 통한 허가 · 심사 업무 집중 화경 조성
 - 수평적 검토 시스템, 결재 단계 축소 등 내부 절차 간소화
 - 동일한 팀내에서 다양한 직렬간 상호보완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민원 처리 사례를 팀원간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 배양 및 다른 업무 영역에 대한 이해 확대

제약업계와 식약청의 원-윈을 위한 규제개혁 지속 추진

- 상위 규정 개정 필요 과제의 경우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등 신속한 개정
- 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 생물의약품 BT 커뮤니티 등 다양한 산·학·관 의견수렴 채널을 통한 규 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의견 수렴

고품질의 허가 · 심사 서비스로 고객 만족 · 편리 제공

- 의약품 허가 · 심사 수수료 현실화로 무분별한 허가신첫 방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촉진
 - 수수료 현실화('08.11.4): 500원~35만원 → 2,000원~414만원(신약)
 - 인상된 수수료를 수입대체경비로 확보하여 임상의사. 통계 전문가 등 채용
- 우수심사관리기준(GRP) 도입을 통해 22종의 심사지침 개선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행일 • 2008년 12월

발행처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전 화 • (02) 2100-2283

전 송 • (02) 2100-2289

인 쇄 • 삼일기획 (02) 503-4800

본 책자의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